

JFSA 백서



일본대금융협회

Japan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번역 | 한국대부금융협회

JFSA 백서 한국어판을

발행하면서



현재 일본의 대금업계는 대금업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출총액을 연소득의 1/3로 제한하는 총량규제와 상한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정 대금업법이 2010년 6월 완전 시행되면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간 대금업체 수는 무려 72%나 감소하였으며, 대출 잔액 또한 47%나 감소하였습니다. 규제 강화로 문을 닫는 대금업체가 속출하자 그 틈을 비집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정계에서는 대금업법 개정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면밀한 검증 없이 단행된 규제 개선이 얼마나 큰 상흔을 남기는지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정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준법 영업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융업계를 바라보는 여론은 늘 싸늘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업계는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대금업계는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하여 한국 대부금융업계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발행되는 금번 JFSA백서에는 대금업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대부금융업계의 해결책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3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이승우

CONTENTS

머리말 일본대금업협회 2010년도 활동내용

1. 상담·민원·분쟁 / 1

1) 현황	1
2) 상담	1
3) 민원	3
4) 분쟁	4
5) 대출 자숙	5
6) 불법사금융 피해 등과 관련된 상담 현황	5

2. 광고심사 / 6

1) 업무개요	6
2) 광고 출고 심사와 광고 모니터링 조사 실시에 따른 효과	7

3. 감사의 실시 / 8

1) 업무개요	8
2) 2010년도 현장 감사	8
3) 2010년도 서류 감사	12

4.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등록·강습 / 17

1) 업무개요	17
2) 자격시험 실시	17
3) 주임자 등록 사무 처리	17
4) 등록 강습기관의 등록 및 강습 실시	17

5. 행정협력사무 / 18

6. 홍보·계몽 활동 / 18

1) 업무개요	18
2) 활동실적	19

7. 조사연구 활동 / 19

1) 업무개요	19
---------	----

2) 활동실적(2011년 4월말 현재)	19
-----------------------	----

제1장 대금업계의 현황

1.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 / 20

1) 대금업체 수 추이	20
2) 대출 잔액 추이	22
3) 업체별 대출금리	26
4) 업체별 대출건수 및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26
5) 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 잔액	27
6) 민원, 상담·조회 건수	29

2.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 30

1) 회원사 수 추이	30
2) 회원의 구성	31
3) 대출 잔액 추이	32
4) 승인을 추이	35
5) 대출종류별 월간 계약 건수	36
6) 점포 수 추이	38
7) 보증잔액의 추이	40
8) 개정 대금업법에 관한 이용자의 문의·상담·민원건수 추이	40
9) 이자 반환 관련 대응 현황	41

제2장 대금업계를 둘러싼 환경

1. 대금업계를 둘러싼 환경 / 42

1) 대금업법	42
2)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43
3) 이자 반환 청구의 계속되는 증가와 대금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44
4)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설치와 개정대금업법 폴로업팀 설치	44

제3장 대금업체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결과

1. 앙케트 조사 개요 / 49

1) 대금업체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49
----------------------------	----

2. 자금공급체계 현황 / 52

1) 완전 시행에 대한 대응이 대금업체의 자금 공급에 미친 영향	52
2) 향후 대금업체의 자금 공급 전망	53
3) 여신 태도의 변화·여신 재검토가 자금 공급에 미치는 영향	57
4)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 현황	60
5) 총량규제 적용 제외 대출·예외 대출의 실시 현황	62
6)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에 대한 대응 현황	65

3. 대금업체의 경영 현황과 편의성 / 66

1) 완전 시행에 대한 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비용 구조	66
2) 이자 반환 청구에 대한 대응 현황	70
3) 대금업체의 점포 현황	72
4) 향후 사업 계속 현황	74

4. 자금수요자 등에 대한 상담·조언 대응 현황 / 76

1) 자금수요자에 대한 상담·조언 대응 현황	76
--------------------------	----

5. 본장 요약 / 78

1) 자금공급체계 현황	78
2) 대금업체의 경영 현황	79
3) 자금수요자 등에 대한 상담·조언 대응	80

제4장

대금업법 완전 시행 후의 영향 및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결과

1. 대금업법 완전 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 81

1) 앙케트 조사 개요	81
2) 대금업법 완전 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결과	83

2.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 91

1) 앙케트 조사 개요	91
2)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97

3. 본장 요약 / 128

1) '대금업법 완전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128
2)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129

머리말

일본대금업협회 2010년도 활동내용

<협회의 활동내용>

협회는 대금업체의 업무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대금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금 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등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상담·민원·분쟁

1) 현황

① 총 접수건수

2010년도에 접수된 상담 및 대금업무 등과 관련된 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 건수는 '상담'이 46,263건, '민원'이 352건으로 상담·민원 소계는 46,615건이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대금업무 관련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처리 건수는 5건으로 세 부문의 총 접수된 건수는 46,620건이었다.

② 신청자의 속성(상담·민원)

'상담'과 '민원'을 신청한 자의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24,345명(52.2%), 여성이 22,215명(47.7%), 무응답이 55명(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청자를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 본인 이외(친척·배우자)'로 분류하면 '채무자 본인'이 37,206명(79.8%), '친척'이 4,220명(9.1%), '배우자'가 2,416명(5.2%), 회사 상사 등과 같은 제3자가 994명(2.1%) 순으로 나타났다.

2) 상담

① 접수건수

상담으로 접수된 건수는 46,263건으로 월간 평균 건수는 약 3,855건이었다. 2009년도와 비교하면 1,875건(3.9%)이 감소하였다.

② 상담내용

상담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금업체에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업체 연락처' 관련 상담이 8,899건(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정 대금업법 관련 '대출 관련' 상담이 5,380건(11.6%), '대출자속제도'에 관한 '대출자속 의뢰·철회'가 5,030건(10.9%),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는 같은 '계약 내용'에 관한 상담이 4,873건(1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 대출을 계속해서 받는 가족이 있거나 본인의 남비벽 등을 이유로 대금업체에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요청하는 제도이다. 의뢰를 받은 일본대금업협회는 자속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 의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기관의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도표1 상담 내용별 추이

(단위 : 건, %)

상담내용별 추이	2009년도	2010년도												연도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합계	구성비
업체 연락처	5,773	696	540	571	534	521	462	568	662	608	687	1,424	1,626	8,899	19.3%
대출 관련	5,560	501	570	1,180	572	399	421	344	351	200	241	275	326	5,380	11.6%
대출자속의뢰·철회	7,070	543	460	485	409	493	426	394	399	300	355	380	386	5,030	10.9%
계약내용	1,635	430	397	347	312	379	472	530	452	341	352	418	443	4,873	10.5%
등록업체 확인	4,168	399	427	386	344	353	382	386	421	330	378	418	345	4,569	9.9%
과불금	1,579	94	97	135	91	107	231	302	470	393	551	643	314	3,428	7.4%
변제금반	3,751	237	276	352	274	225	262	228	269	170	212	254	249	3,008	6.5%
신용정보	3,116	217	167	178	156	196	148	155	188	145	154	176	159	2,039	4.4%
불법사금융·위법업자 피해 없음	2,050	114	90	123	109	102	113	114	124	96	120	126	109	1,340	2.9%
신문증 등의 분실	1,471	114	84	80	93	84	55	97	112	83	91	85	83	1,061	2.3%
불법사금융·위법업자 피해 있음	1,123	72	66	90	69	78	70	69	76	78	62	51	71	852	1.8%
변제외무	873	64	65	69	71	48	67	60	82	52	62	61	52	753	1.6%
금리·계산방법	662	33	29	40	29	20	50	42	66	37	49	40	38	473	1.0%
장부 공개	199	17	15	20	8	17	12	24	25	23	17	29	19	226	0.5%
자기파산·조정·개인회생 절차	240	14	10	16	17	8	14	20	12	10	10	14	11	156	0.3%
스팸메일	129	5	8	6	5	8	14	13	8	2	4	3	4	80	0.2%
보증인 관계	150	4	7	3	6	9	8	10	3	3	4	5	8	70	0.2%
수수료	53	3	3	2	3	2	4	5	1	4	5	3	4	39	0.1%
기타	8,536	361	419	448	465	446	427	179	253	245	222	250	272	3,987	8.6%
합계	48,138	3,918	3,730	4,531	3,567	3,465	3,638	3,540	3,974	3,120	3,576	4,655	4,519	46,263	100.0%

● 개정대금업법에 관한 상담 내용

‘대출 관련’ 상담 중 ‘개정 대금업법’에 관한 상담이 2,501건이었으며, 내용별로 분류하면 ‘개별적인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 738건(29.5%), 규제 대상이 되는 대출에 관한 상담 등 ‘총량규제’가 702건(28.1%), ‘법 개정 목적’이 445건(17.8%) 등으로 나타났다.

도표2 개정대금업법에 관한 상담내용별 추이

(단위 : 건)

항목	2010년도												연도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개별적인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	53	89	183	109	71	77	42	39	17	13	31	14	738
총량규제	99	86	221	106	64	38	24	27	7	8	9	13	702
법 개정 목적	65	74	115	51	50	28	20	15	8	6	6	7	445
상한금리	17	26	127	79	26	18	8	20	11	8	6	2	348
서류 제출	13	17	32	11	8	13	8	4	0	0	0	3	109
배우자 대출	13	14	30	16	3	9	4	2	1	3	4	4	103
사업자 대상 대출	3	2	12	5	10	5	1	1	0	0	1	0	40
지정신용정보기관	1	1	10	3	1	0	0	0	0	0	0	0	16
합계	264	309	730	380	233	188	107	108	44	38	57	43	2,501

③ 상담 결과

상담을 접수 받은 후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협회의 지도에 따른 처리·시정·조언 등’이 32,441건(70.1%)이었으며, ‘타 기관에 안내’가 8,767건(19.0%), ‘정보 제공’이 4,932건(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안내(8,767건)’한 상담에서 안내한 상담기관으로는 ‘신용정보기관’이 2,967건(33.8%), ‘도도부원’이 1,195건(13.6%), ‘변호사회·사법서사회’가 1,048건(12.0%), ‘법테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가 899건(10.3%) 등으로 나타났다.

④ ‘과불금’에 관한 상담 건수 추이

2010년도에 접수된 과불금 관련 상담 및 문의 건수는 3,428건으로 2009년도 대비 1,849건(117.1%)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2010년 9월 28 일에 주식회사 다케후지가 도쿄 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다케후지의 고객과 이를 계기로 타사 이용자가 상담과 문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담건수가 2,807건에 이른 점을 들 수 있다.

⑤ 생활 재건 지원(카운슬링)

카운슬링을 받은 인원과 카운슬링횟수를 살펴보면 198명(신규 상담자 135명,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상담자 63명)에게 1,046회(협회방문 209회, 전화 837회) 실시했다. 상담자와 채무자 본인과의 관계는 채무자 본인이 50명(37.0%), 배우자가 53명(39.3%), 부모 등 친척이 31명(23.0%) 등이었다. 배우자나 친척이 상담을 받은 경우가 62.3%를 차지했는데 이는 ‘채무자 본인이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상담자의 요청에 의해 생활재건지원(카운슬링)을 실시했다. 신규 상담자 135명 중 채무를 보유한 본인(50명)을 대상으로 과거에 채무를 정리한 경험에 있는지 유무를 분류하자 “정리한 적이 있다”가 33건(66.0%), “정리한 적이 없다”가 17건(34.0%)으로 나타났다. “정리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조정 후 재차 다중채무 문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였다. 채무 원인별로는 ‘도박’이 26건(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비·음식비·교제비’가 7건(14.0%), ‘생활비’가 5건(10.0%), ‘소득 감소’가 3건(6.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3) 민원

① 접수건수

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352건으로 월간 평균건수는 약 29건이었다. 2009년도 대비 433건(55.2%)이 감소했다. 등록한 기관별로는 채무국에 등록한 업체가 216건(61.4%), 도도부원에 등록한 업체가 136건(38.6%)이었다. 민원 처리의 경우 2010년 10월 1일부터 금융 ADR기관³⁾으로써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여 새로 제정된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정하면서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다.

2) 대금업체가 대출을 실시할 때 이자제한법상의 금리(15~20%)가 아닌 출자법 상의 금리(29.2%)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시해왔는데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금업체가 이자제한법상의 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를 과불금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어졌다.

3) 금융 분야의 분쟁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금융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라고 하며, 이용자와 금융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금융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금융 ADR기관이라 한다.

② 상담내용

상담 내용별로 살펴보면 ‘장부 공개’가 85건(24.0%), ‘추심행위’가 77건(21.8%), ‘계약 내용’이 59건(16.8%), ‘대출 관련’이 32건(9.1%), ‘개인정보’가 28건(8.0%)이었다.

도표3 민원 내용별 추이

민원내용별 추이	2009년도	2010년도													연도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합계	구성비	
장부 공개	193	17	14	5	15	2	8	0	7	3	4	7	3	85	24.0%	
추심행위	198	12	6	10	16	8	6	6	1	2	4	3	3	77	21.8%	
계약내용	146	8	1	2	9	6	6	3	7	3	6	3	5	59	16.8%	
대출 관련	24	4	2	2	7	4	2	2	3	0	3	2	1	32	9.1%	
개인정보	21	5	0	2	6	2	2	2	2	0	5	0	2	28	8.0%	
과불금	64	1	2	1	1	5	3	0	3	0	2	3	0	21	6.0%	
사무처리	21	4	2	2	0	3	0	2	3	2	0	1	1	20	5.7%	
보증계약	21	2	0	1	3	0	0	0	0	0	0	1	1	8	2.3%	
금리	8	1	0	1	0	1	0	0	0	0	1	0	0	4	1.1%	
광고·권유 (사칭 이외)	20	1	0	1	0	0	0	0	0	0	0	0	0	2	0.6%	
연금담보	1	0	0	1	0	0	0	0	0	0	0	0	0	1	0.3%	
과잉대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행정당국 사칭 등록업체 사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기타	67	1	1	2	2	2	2	0	1	0	0	3	1	15	4.3%	
합계	785	56	28	30	59	33	29	15	27	10	25	23	17	352	100.0%	

③ 처리 결과

협회에 접수된 352건의 민원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공정하면서 중립적으로 대응한 결과 협회가 처리·시정·조언 등을 실시한 건수는 322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그밖에 ‘중단’이 15건(4.3%), ‘타 기관에 안내’가 5건(1.4%), ‘철회’가 5건(1.4%), ‘분쟁접수과에 이관’이 1건(0.3%), ‘기타’가 2건, 2011년 3월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352건 중 2건(1.4%)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처리·시정·조언 등을 실시한 322건 중 3건(0.9%)은 회원사가 법령 및 협회 자율규제 기본규칙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규율심사실에 개별적으로 보고했다.

4) 분쟁

① 지정분쟁해결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

대금업법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모든 등록대금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기존의 ‘민원처리위원회’를 개편하여 전 대법원 판사와 전 대검찰청 총무부장 검사, 전 고등법원 민사부 총괄 판사, 변호사, 소비자단체의 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분쟁해결위원회’가 분쟁해결업무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변경 신청한 결과, 2010년 9월 15일 금융청장관으로부터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에는 기존의 ‘상담센터’를 개편하여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2011

년 3월 31일 현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2,528개사로 현재 등록대금업체 수인 2,589개사의 97.6%에 해당한다. 더불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회원사는 1,552개사(61.4%)이다.

② 수리 건수

신청을 받은 분쟁해결의 수리는 분쟁해결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면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2010년 10월 1일 업무개시 이후 수리 건수는 5건이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출 관련’이 1건(20.0%), ‘과불금’이 4건(80.0%)이었다.

③ 처리 결과

수리된 사안 중 2010년도 중에 화해가 성립된 건은 3건이었다.

사안1	신청내용	신청인(자금수요자의 상속인)이 과불금 반환 청구를 했지만, 신청인이 자금수요자 본인이 아닌 상속인인관계로 대금업체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도록 요청한 사안
	결과	분쟁해결위원이 제시한 화해안을 쌍방이 수락하여 화해 성립
사안2	신청내용	신청인(자금수요자)이 과불금 반환 청구를 했지만 대금업체가 자사채권과 양도채권이 섞여 있어 과불금 산정기준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사안
	결과	분쟁해결위원이 제시한 화해안을 쌍방이 수락하여 화해 성립
사안3	신청내용	신청인(자금수요자)이 과불금 반환 청구를 했지만 대금업체가 다른 과불금 채권자와의 반환율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의견 차가 벌어져 당사자간의 대화가 교착된 사안
	결과	분쟁해결위원이 제시한 화해안을 쌍방이 수락하여 화해 성립

5) 대출 지속

협회의 각 도도부현지부 창구는 등록·철회·정정 접수를 받고 있는데 2010년도의 경우 등록이 1,485건(70.8%), 철회가 608건(29.0%), 정정이 4건(0.2%)이었으며 총 2,097건이 접수되었다. 2009년도와 비교하면 619건(22.8%)이 감소했으며, 법정 대리인 및 친권자가 신청한 건수는 16건(0.8%)이었다.

6) 불법사금융 피해 등과 관련된 상담 현황

2010년도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문의는 2,192건으로 상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담인 ‘불법사금융·위법업자(피해 있음)’이 852건(38.9%)이었으며, 피해를 입기 전단계인 ‘불법사금융·위법업자(피해 없음)’이 1,340건(61.1%)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바로 전에 피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2009년도와 비교하면 981건(30.9%)이 감소했으며, ‘피해 있음’과 ‘피해 없음’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있음’이 271건(24.1%) 감소했으며, ‘피해 없음’도 710건(34.6%) 감소했다. 상담 대응 면에서는 상담

자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이스피싱구제법에 따른 대처 가능성에 대해 조언함과 아울러 채무의 근본 원인을 청취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처는 물론 생활 재건 지원까지 연계시키고 있다. 그리고 입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금융청 및 경찰당국에 제공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2. 광고심사

1) 업무개요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사가 적정한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광고 출고 심사 및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광고 출고 심사

회원사가 실시하고 있는 개인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관련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전화번호부 광고’에 대해서는 ‘대금업 업무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규칙’ 제43조에 따라 광고출고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대상 외의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다.

자금수요자가 업체나 상품을 선택할 경우 회원사의 광고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광고 내용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사에 힘쓰고 있다.

도표4 광고 출고 심사 현황

심사대상 매 체	심사개시 시 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신규신청 건 수	첫 회 승인율	신규신청 건 수	첫 회 승인율	신규신청 건 수	첫 회 승인율
신문·잡지광고	2008년 8월	662	63.5%	570	70.1%	866	63.3%
텔레비전광고	2008년 9월	31	63.0%	92	75.8%	113	76.1%
전화번호부광고	2009년 8월			179	28.8%	264	45.6%

(주1) 첫 회 승인율 : 신규로 신청한 광고가 개선 요청과 같은 지적 없이 첫 회에 승인 받은 비율
 첫 회 승인율(%)=첫 회 승인건수÷(신규신청건수-신청취하건수)

② 광고 모니터링 조사

회원사가 출고하는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전화번호부 광고’가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 규칙’ 제43조에 규정된 출고 심사를 거쳐 승인된 광고인지 여부와 ‘텔레비전 광고’가 해당 자율규제 기본 규칙 제48조에 규정된 ‘방송 시간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표5 신문·잡지·전화번호부 모니터링 결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실시 개월 수	6개월	11개월	12개월	8개월
조사매체	신문	신문·잡지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조사대상 광고건수	3,872	14,322	23,595	948
미승인 광고건수	666	192(신문)	211(신문)	132
미승인 비율	17.2%	1.3%	0.9%	13.9%

■ 텔레비전광고 모니터링 결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방송 금지 시간대에 출고 5건, 도박 프로그램에 출고 1건, 방송 총량 초과 1건(조사 결과, 방송국 측의 편성 조정 착오가 원인)
 2010년도 전체 출고량에서 차지하는 자율규제 기본 규칙 위반 비율은 0.03%

2) 광고 출고 심사와 광고 모니터링 조사 실시에 따른 효과

도표6 광고 출고 심사와 광고 모니터링 조사 실시에 따른 효과

- 협회의 광고 출고 심사에 따라 회원사의 부적절한 광고 출고를 사전에 방지
- 지속적인 광고 모니터링 실시로 자율규제 위반 광고를 지도·시정

광고 출고 심사

첫 회 승인율(1회 신청으로 승인 받은 비율)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텔레비전광고
2008년도	63.5%	-	63.0%
2009년도	70.1%	28.8%	75.8%
2010년도	63.3%	45.6%	76.1%

광고 모니터링

미승인 광고 비율·자율규제위반건수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텔레비전광고
2008년도	17.2%	-	2건
2009년도	1.3%	-	4건
2010년도	0.9%	13.9%	1건

➢ 신문·잡지의 광고 출고 신청 중 약 40%는 광고 출고 심사 시점에서 지적·수정사항이 있다(전화번호부는 약 55%, 텔레비전 광고는 약 25%)

→ 광고출고심사에서 지적·개선함으로써 부적절한 광고 출고를 사전 방지

➢ 신문·잡지의 미승인 광고는 1% 이하이며 전화번호부는 13.9%이지만 개선하는 중이다.

➢ 텔레비전광고의 자율규제위반비율은 0.03%

→ 지속적인 광고모니터링 실시로 자율규제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와 재발 방지

회원사의 적절한 광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감사의 실시

1) 업무개요

회원사가 법령 및 법령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 업무규정, 기타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회원사의 영업 및 재정 상태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장 감사 및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 2010년도 현장 감사

① 현장 감사

2010년도 현장 감사는 '2010년도 회원사에 대한 감사 계획'에 따라 일반감사로써 현장 감사는 50개사 정도를 예상했었다.

2010년도에는 회원사에 법령 등의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연도 내에 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원사 자체적으로 자기 개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면서 감사 결과가 회원사 내부 관리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 확실하게 이어지도록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사를 기동적으로 실시했다.

② 중점 감사 항목

- (1) 컴플라이언스(compliance)⁴⁾의 정비·운용 현황 및 내부 관리 체제 현황
- (2) 완전 시행에 대응한 사내 규칙과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운용 현황
- (3) 총량규제⁵⁾에 대응한 사내 규칙 등의 정비·운용 현황
- (4) 추심행위에 관한 사내 규칙 등의 정비·운용 현황
- (5) 외부 위탁 업무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제의 정비·운용 현황
- (6) ADR제도 창설에 따른 민원 처리·분쟁해결 등과 관련된 준비 현황

③ 감사 대상자의 선정

현장 감사를 실시할 후보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1)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2) 소비자 대상 대금업체와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가능한 다양한 업체 구분에 선정
- (3) 대출 잔액 10억 엔 미만의 중소 규모 회원사를 중심으로 선정
- (4) 서류 감사의 평가가 낮은 회원사와 민원 상담을 접수 받은 회원사, 법령 위반 등과 같은 신고를 받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선정

④ 현장 감사의 실시 시기

현장 감사 중 일반감사는 2010년 5월 25일부터 시작하여 2011년 3월 18일까지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약 1개월 연기되어 2011년 4월 15일까지 5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별감사는 2010년 7월과 11월, 12월에 실시되었으며, follow-up 감사⁶⁾·기동적 감사⁷⁾를 합하여 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⑤ 감사 결과 개요

2010년도 현장 감사 가운데 일반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건수는 71건으로 2009년도 지적 건수인 169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9년도에는 회원사가 개정대금업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적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0년도에는 총회 후에 배포한 감사 결과에 관한 각종 자료 등(현장 감사 지적 사례집, 서류 감사의 개선 매뉴얼 등)을 회원사가 교육 연수 교재로 사용하는 등 개정 대금업법에 입각한 업무의 자율적인 점검·개선을 도모하게 되어 회원사의 내부 관리 및 법령 등 준수 체제가 정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 지적사항

도표7 현장 감사 시의 지적 사항

지적사항		2010년도			2009년도		
		지적건수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	지적건수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
일반감사	대금업법	53건	27건	26건	101건	13건	88건
	자율규제 관련	14건	10건	4건	47건	3건	44건
	기타 법령 ^(*)	4건	3건	1건	21건	1건	20건
일반감사 합계		71건	40건	31건	169건	17건	152건
특별감사	대금업법	16건	5건	11건	12건	1건	11건
	자율규제 관련	4건	3건	1건	11건	2건	9건
	기타 법령 ^(*)	2건	0건	2건	0건	0건	0건
특별감사 합계		22건	8건	14건	23건	3건	20건
총계		93건	48건	45건	192건	20건	172건

(*) '법령 등 위반 우려'란 '법령 등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법령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기재항목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양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등 중대하지 않은 가벼운 미비사항을 말한다.

(*)2) '기타 법령'이란 대금업법·자율규제 기본 규칙 이외의 대금업 업무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출자법 등을 말한다.

6) 협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지도사항의 개선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7) 감독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항목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는 감사

4)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익을 해치는 불상사가 잇따르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5) 소비자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 총액이 연 소득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금하는 규제

(2) 감사 결과

(가) 법령 등 위반과 관련된 신고서 징구

법령 등의 위반을 지적한 회원사에게는 '법령 등 위반과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 일반 감사 40개 사안 13개 회원사
- 특별 감사 8개 사안 3개 회원사

(나) 개선 증거 자료의 징구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이 실시한 개선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 등(개선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3) 처분 내용

도표8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

처분 종류		2010년도	2009년도
처분	제명 처분 ^(*)	2개사	0개사
	회원권 정지 ^(*) (권고 병과)	1개사	0개사

(주1) 연도 구분은 처분 결정 기준

(*) 제명 처분

- ① 특별 감사의 기피 및 몇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회원
- ② 다음 페이지의 법령 위반 및 기타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회원
 - 순자산액이 정령에 규정된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증권구입 료으로 주식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이른바 탄식행위(bucketing))
 - 계약서면의 중요사항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계약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 회원권 정지

- 다음 페이지의 법령 위반 및 기타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회원
- 계약 체결 시 교부 서면 및 영수증 등의 법정 기재 항목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법정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4) 지적사항 내용(일반 감사, 특별 감사)

도표9 현장 감사 시의 지적 사항(상세)

법령 등		지적 개요	2010년도		2009년도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	
대금업법	대금6조	등록 거부	1				
	대금8조	변경신청서 미제출		1		2	
	대금12조 2	대금업 업무 체제 부적절				7	
	대금12조 3	주입자 연수 수강신청서 미제출				1	
	대금12조 2의 2	지정분쟁해결기관 명칭 미공표		1			
	대금12조 4	종업원 증명서의 기재 미비				4	
	대금12조 6	금지행위	1				
	대금13조	변제능력 조사의 미실시	2				
	대금13조 2	과잉대부 등의 금지	2				
	대금14조	대부조건의 미게시, 기재 미비			1		
	대금15조	대부조건의 광고 기재 미비	2			1	
	대금16조	광고문구의 표현이 부적절		1		1	
	대금16조 2	계약체결 전 서면 미교부, 기재 미비	11	3	3	6	
	대금17조	계약체결 시 교부 서면 미비	4	20	2	36	
	대금18조	영수증 양식 미비, 기입 누락	3		7		
	대금19조	장부의 기재 미비	5	10	1	29	
	대금21조	부당한 추심, 독촉장 기재 미비				6	
대금22조	채권증서의 반환 누락	1			1		
대금23조	표식(간판 등) 미게시, 게시가 부적절				3		
대금24조 6의 2	재산적 기초에 관한 신청서 미제출				1		
대금24조 6의 9	사업보고서 미제출				1		
시행12조	대부조건의 광고		1				
대금업법 합계			32	37	14	99	
자율규제기본규칙	정관12조	'검사착수신청서' 및 '검사종료신청서' 미제출	4		3		
	정관14조	감사 기피			1		
	자율11조	사내규칙의 정비 부족	4			32	
	자율19조	사내체제의 미정비	2				
	자율21조	심사기준의 주지 부족				1	
	자율22조	대출의사 확인 부족	1	3		14	
	자율27조	보증계약체결 전 서면 교부 지연			1	2	
	자율31조	법인 실태 확인 미비				1	
	자율32조	변제능력 확인 미실시	1			1	
	자율58조	홈페이지 명시사항이 부적절				2	
	자율66조	대부계약 관련 권유에 대한 승낙 기록 누락	1				
	자율69조	추심행위 시 독촉장 내용 기록 및 보관 미비		1			
	세칙5조	외부 위탁 관련 사내체제 정비 불충분		1			
	자율규제기본규칙 합계			13	5	5	53
	기타법령	개인16조	개인정보이용 목적 등의 동의 누락				1
		개인18조	개인정보 취득 시 이용 목적 통지 누락	1			1
		범수4조	본인확인 미실시	1			
범수6조		본인확인 기록 누락		3		17	
금상29조		무등록 영업 금지	1				
출자5조		고금리				1	
인지3조 4		수입인지 미첨부			1		
기타법령 합계			3	3	1	20	
총계			48	45	20	172	

(주 1) 대금: 대금업법 시행: 대금업법 시행규칙 정관: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자율: 자율규제 기본 규칙
 세칙: 업무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사내 규칙 개인: 개인정보보호법 금상: 금융상품거래법 출자: 출자법
 범수: 범칙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인지: 인지세법

(*) '법령 등 위반 우려'란 '법령 등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법령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기재항목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양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등 중대하지 않은 가벼운 미비사항을 말한다.

3) 2010년도 서류 감사

① 서류 감사

2010년도 서류 감사에서는 ‘완전 시행 후의 대금업법에 대한 대응 현황 확인’을 주목적으로 사내 규칙을 제출하도록 하여 내부 관리 체제 실시 현황 등을 감사하고 완전 시행에서 요구되는 ‘순자산액 및 지정 분쟁해결기관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금업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 등’부터 ‘과불금 지불’까지 20개 항목에 대해 총 75개 문항의 ‘서류 감사 보고서’를 회원사에 송부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점검·평가하여 총 설문 수 대비 실시가 확인된 설문 수의 비율(실시율)에 따라 A부터 E까지 5 단계로 평가했다.

도표10 서류 감사 평가 기준

평가	실시현황	실시율
A	모두 실시하고 있다	100%
B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90%~100% 미만
C	실시되고 있지 않은 항목이 눈에 띈다	40%~ 90% 미만
D	실시되고 있지 않은 항목이 다수 눈에 띈다	50%~ 70% 미만
E	실시가 불충분하며 다방면에 걸쳐 미비한 점이 눈에 띈다	50% 미만

그리고 ‘해당사항 없음’이란 응답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미응답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② 감사 대상 회원사

1,630개 회원사(2010년 12월말 현재 회원사)

③ 감사 실시일

통지 발송일 2011년 1월 17일

제출 기한 2011년 2월 17일

(감사 대상 기간 2010년 4월 1일~2011년 2월 17일)

④ 감사 결과 개요

서류 감사보고서의 제출 현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제출율은 향상되었다. 감사 결과의 경우도 실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사(A 또는 B)가 전 회원사의 81%(1,226개사)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C 이하의 회원사가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2년 또는 3년 연속 C 이하를 받은 회원사의 경우는 중점적으로 개선 지도할 필요가 있다.

(1) 서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도표11 서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2010년도(2011년 4월 26일 현재)		2009년도	
제출현황	회원사수	구성비	회원사수	구성비
감사 대상 수	1,630개 회원	-	2,346개 회원	-
서류감사보고서 제출	1,515개 회원	99.7%	2,005개 회원	98.2%
서류감사보고서 미제출	5개 회원	0.3%	37개 회원	1.8%
합 계	1,520개 회원	100.0%	2,042개 회원	100.0%
(폐업 등)	110개 회원	-	304개 회원	-

(2) 평가 결과

실시가 대체적으로 양호(A 또는 B)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사는 80%로 나타났다(A·B 평가 추이: 2009년도 74.9% → 2010년도 81.0%)

개선 노력이 필요한 회원사(C·D·E)가 20% 정도 있어 시급한 개선 지도가 필요하다.

도표12 서류 감사 평가

	2010년도(2011년 4월 26일 현재)			2009년도		
평가	회원사수	구성비		회원사수	구성비	
A	395개 회원	26.1%	81.0%	483개 회원	24.1%	74.9%
B	831개 회원	54.9%		1,018개 회원	50.8%	
C	197개 회원	13.0%	19.0%	362개 회원	18.0%	25.1%
D	78개 회원	5.1%		114개 회원	5.7%	
E	14개 회원	0.9%		28개 회원	1.4%	
합 계	1,515개 회원	100.0%		2,005개 회원	100.0%	

(3) 평균 실시율(총 설문 수 대비 ‘실시가 확인된 설문 수’의 비율)

도표13 평균 실시율

	2010년도(2011년 4월 26일 현재)	2009년도
설문 수	75개 문항	65개 문항
평균 실시율	93.5%	91.6%

⑤ 상세 감사 결과

(1) 개별분석

(가) 설문별 실시율

이번 감사에서 실시율이 낮았던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는 구체적 체제 정비 가운데 이해부족이 눈에 띄었다. ‘본인 확인’의 경우에는 확인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관기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도표14 설문별 실시율

항목	설문	실시율	항목	설문	실시율	항목	설문	실시율
①경영관리등	3	94.6%	⑦민원등 대응	4	95.5%	⑬서면교부	8	95.4%
②법령등 준수	6	93.5%	⑧대금업주임자	1	89.6%	⑭추심행위	4	90.8%
②-(2)반사회적	2	82.8%	⑨금지행위	1	91.6%	⑮거래내역공개	3	92.6%
③개인정보	6	95.9%	⑨-(2)이자보증	4	92.7%	⑯채권양도등	2	97.5%
④외부위탁	2	98.3%	⑩계약 설명	4	92.8%	⑰영업점등록	1	89.9%
⑤본인확인	2	82.2%	⑪과잉대부	12	95.9%	⑱과불금반환	3	94.9%
⑥상담조언	4	95.2%	⑫광고취급	3	94.1%	합 계	75	-
평균 실시율							92.8%	

(나) 자본금별 평가 구성

A평가를 받은 비율은 규모가 큰 회원사일수록 높았으며, 개인사업자(자본금 0)는 낮은 편이었다.

도표15 자본금별 평가 구성

자본금	회원사수	평균 실시율
10억 엔 이상	98개 회원	98.4%
1억~10억 미만	125개 회원	97.3%
1억 미만	892개 회원	92.8%
0(개인)	400개 회원	91.4%



(다) 대출 잔액별 평가 구성

자본금별 평가 구성과 동일하게 규모가 큰 회원사일수록 A평가를 받은 구성비가 높았다.

도표16 대출 잔액별 평가 구성

대출 잔액	회원사수	평균 실시율
100억 엔 이상	89개 회원	98.7%
10억~100억 미만	285개 회원	95.8%
1억~10억 미만	506개 회원	93.2%
1억 미만	635개 회원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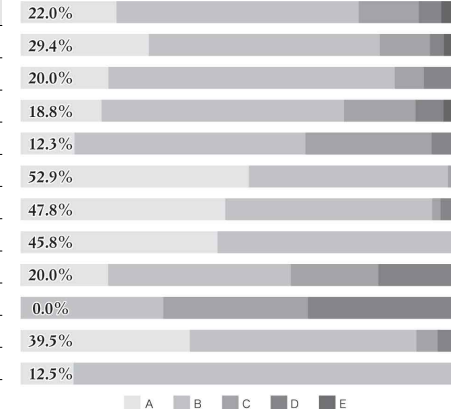


(라) 업태 구분별 평가 구성

A평가를 받은 비율은 규모가 큰 법인(크레딧·신용판매회사 등)이 높았으며, 실시율도 높았는데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및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는 낮은 편이었다.

도표17 업태 구분별 평가 구성

업태	회원수	평균 실시율
소비자대상무담보대금업체	613개 회원	92.6%
소비자대상유담보대금업체	136개 회원	93.7%
소비자대상주택담보대금업체	30개 회원	94.2%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362개 회원	91.2%
어음할인업자	65개 회원	90.3%
신용카드회사	155개 회원	98.7%
신용판매회사	46개 회원	97.1%
유통·제조업체계열 회사	24개 회원	98.7%
건설·부동산업자	35개 회원	88.8%
전당포	3개 회원	75.3%
리스회사	38개 회원	95.9%
일수업자	8개 회원	93.5%



(마) 등록기관별 평가 구성

재무국에 등록을 한 경우 대부분이 실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A·B 평가를 받았다(96.8%)

도표18 등록기관별 평가 구성

등록기관	회원수	평균 실시율
재무국	309개 회원	98.0%
도도부현	1206개 회원	91.9%



(2) 작년도 서류 감사 결과와의 관계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A 또는 B를 평가를 받은 회원사는 총 회원사인 1,515개사 중 66.0%에 해당하는 1,000개 회원사였다.

2009년도에 C, D 또는 E 평가를 받은 288개 회원사 중 166개 회원사는 A 또는 B를 받았지만 122개 회원사는 2년 연속 C 이하였다. 또한 122개 회원사 중 89개 회원사는 3년 연속 C 이하였다.

도표19 작년도 서류 감사와의 관계

		2009년도 서류 감사 평가					2010년도 첫회 (신규가입)	합계
		A	B	C	D	E		
서류 감사 평가 년도	A	2년 연속 A 또는 B		(2010년도에 A 또는 B를 받은 회원)			15개 회원	395개 회원
	B	1,000개 회원		166개 회원			45개 회원	831개 회원
	C	(2009년도 A, B에서		2년 연속 C, D 또는 E를 받은 회원			21개 회원	197개 회원
	D	2010년도에 C, D, E		122개 회원			8개 회원	78개 회원
	E	받은 회원		136개 회원			2개 회원	14개 회원
소계		1,136개 회원		288개 회원			91개 회원	1,515개 회원

(2011년 4월 26일 현재 제출 회원)

⑥ 향후 과제

- (1) 서류 감사 및 현장 감사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적 사례집’ 및 ‘개선 매뉴얼’ 등으로 제작하여 전 회원사에게 주지함과 아울러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2) 시급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사, 서류 감사보고서 미제출 회원사 및 2년 연속 C 이하를 받은 회원사는 특별 감사를 검토한다.

4.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등록·강습

1) 업무개요

협회는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정시험기관으로 2009년 6월에 대금업법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지정을 받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의 실시와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9월 30일에 대금업법에 의거하여 등록 강습 기관으로 금융청에 등록을 하고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등록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실시

전국 17개 지역(25개 시험장)에서 2010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을 1회 실시했다. 시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시험일	2010년 11월 21일(일)
시험신청자수	13,547명
응시자수	12,081명
응시율	89.2%
합격자수	3,979명
합격율	32.9%
합격발표일	2011년 1월 12일(수)

3) 주임자 등록 사무 처리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를 처리했다.

2010년도 중 등록신청서 접수 건수	8,186건
2010년도 중 등록완료 통지 발송 건수	20,750건
2011년 3월 31일 현재 등록 주임자 수	37,708건

4) 등록 강습기관의 등록 및 강습 실시

2010년 9월 30일 등록 강습 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강습 사무규정의 제정, 강사의 선정 및 강습교재의 제작 등 강습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여 2010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강습을 3회 실시했다. 강습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강습회장	강습일	수강자수	수료자수
도쿄	2011년 1월 27일(목)	124명	124명
오사카	2011년 2월 3일(목)	62명	62명
후쿠오카	2011년 2월 24일(목)	23명	23명

5. 행정협력사무

대금업 등록 신청·갱신·변경 등 신청서류 접수 사무를 재무국이나 각 시도부현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응 중인 주요 행정 협력 사무	접수건수 ^(*)
대금업 등록 신청, 등록 갱신 신청 접수 사무	920건
변경, 폐업 등의 신고 접수 사무	8,723건
대금업 개시 또는 휴업 시 필요한 신고서류 등 각종신고의 접수 사무	1,730건
사업보고서, 업무보고서의 접수 사무	4,803건

(*) 접수건수는 2010년도(2010년 4월~2011년 3월) 실적

6. 홍보·계몽 활동

1) 업무개요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홍보 활동 및 금융 지식의 보급·계몽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① 홍보활동

대금업계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뢰 향상을 위해 협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이면서 폭 넓게 실시하고 있다. 매월 1일에 발행하고 있는 'JFSA news' 등을 통하여 회원사에게 협회의 활동 내용 및 대금업법, 업계 관련 정보, 업무정보 등을 발신하여 회원사와의 일체감을 조성하면서 업무의 적정화와 업계의 건전화에 일조하고 있다.

② 계몽활동

다중채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금전이나 이자, 대금업, 금융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의 보급과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으로 대표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주의환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를 위한 민원상담창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등에도 힘쓰고 있다.

2) 활동실적

	활동명칭	실시시기	개요
예비대금업자교육	홍보지를 이용한 활동	매월 및 분기별	월간지 'JFSA news' 와 계간지 '계간 JFSA' 를 발행하여 회원사의 업무 적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업계 관련 정보를 발신한다.
	신문광고 등을 이용한 활동	수시	업계지와 관련 단체의 계간지 등에 협회 광고를 게재하여 인지도 향상 등을 도모한다.
	섭외활동을 통한 활동	수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행정기관이나 각 관계단체 및 매스컴 등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견해활동	법 개정 홍보활동	2010년 6월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자금수요자의 혼란을 막고 이익 보호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완전시행일(2010년 6월 18일)과 총량규제로 큰 영향이 있는 사항(연소득의 1/3, 소득증명, 배우자동의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텔레비전광고나 신문, 웹을 이용한 홍보활동 실시
	소비자 계몽용 책자 배포	2011년 1월	대출이나 현금서비스에 관한 기초지식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성인식용 131,403부, 소비자생활센터 19,142부)
	출장강좌 등을 통한 활동	수시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 소비자생활센터 등 각종 단체 주최의 세미나 등에 당 협회 담당자가 실제로 방문하여 금융 관련 기초지식·트러블·다단계와 같은 악질 상행위를 테마로 한 강연 실시(2010년도(2010년 4월~2011년 3월) 실시 : 개최 54회, 참가자 2,389명)

7. 조사연구 활동

1) 업무개요

대금업이 국민경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하여 그 현황과 동향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기획입안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활동실적(2011년 4월말 현재)

실시항목	시기	개요
월차실태조사	2008년 7월 1일~(이후 매월 공표)	대금업 시장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사 각사의 협력 하에 잔액규모의 동향 등을 월단위로 조사 결과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2장
대금업계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	2010년 11월	대금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3장
대금업법 완전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조사	2010년 11월	자금수요자의 동향 및 개정대금업법의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4장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2011년 4월	개정대금업법 완전시행의 영향 및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4장
기타 조사	-	기타 협회 운영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조사를 실시.

제1장

대금업계의 현황

1.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

1) 대금업체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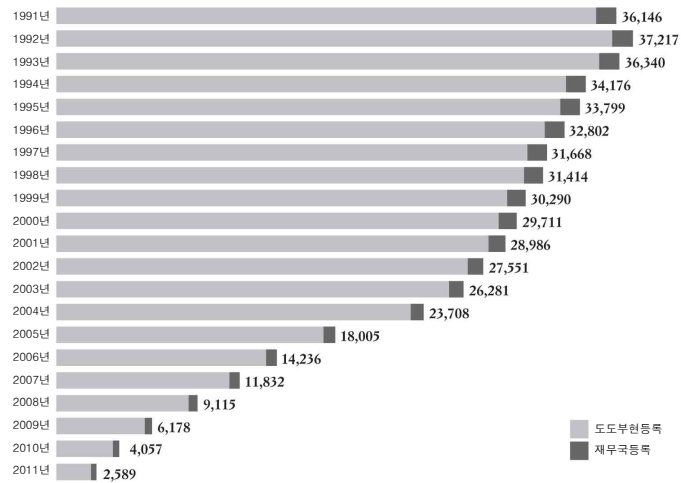
① 매년도 말 추이

대금업체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대금업체 수는 2,589개사로 법 개정 직후인 2007년과 비교하면 1/4 이하까지 감소하였다.

도표1-1 대금업체의 장기적 추이(1991년~2011년)

(단위 : 개사)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도도부현등록	34,841	35,879	35,034	32,900	32,526	31,521	30,400	30,186	29,095	28,543	27,896
재무국등록	1,305	1,338	1,306	1,276	1,273	1,281	1,268	1,228	1,195	1,168	1,090
합계	36,146	37,217	36,340	34,176	33,799	32,802	31,668	31,414	30,290	29,711	28,986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도부현등록	26,551	25,352	22,869	17,243	13,534	11,168	8,535	5,705	3,648	2,240	
재무국등록	1,000	929	839	762	702	664	580	473	409	349	
합계	27,551	26,281	23,708	18,005	14,236	11,832	9,115	6,178	4,057	2,589	



(주1) 매년 3월말 수치

(출처: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자료집)

② 재무국, 도도부현별

도표1-2 재무국, 도도부현별 대금업체수 추이(2010년 3월말, 2011년 3월말)

(단위 : 개사)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간토재무국	188	166	도후쿠재무국	29	28	시코쿠재무국	18	16
도쿄도	1,037	733	미야기현	64	41	가가와현	26	11
가나가와현	108	61	이와테현	25	12	도쿠시마현	28	13
사이타마현	73	42	후쿠시마현	14	4	에히메현	55	31
지바현	58	36	아키타현	18	15	고치현	34	19
아마나시현	18	12	아오모리현	28	19	소계	143	74
도치기현	13	12	아마가타현	14	5	시코쿠관내합계	161	90
이바라기현	32	15	소계	163	96	규슈재무국	17	13
군마현	24	18	도후쿠관내합계	192	124	구마모토현	45	25
니가타현	18	13	도카이재무국	28	26	오이타현	29	10
나గా노현	19	9	아이치현	146	94	미야자키현	32	16
소계	1,400	951	시즈오카현	79	44	가고시마현	36	18
간토관내합계	1,588	1,117	미에현	41	23	소계	142	69
긴키재무국	63	46	기후현	25	13	규슈관내합계	159	82
오사카부	350	230	소계	291	174	후쿠오카재무국	27	18
교토부	108	62	도카이관내합계	319	200	후쿠오카현	241	120
효고현	162	97	호쿠리쿠재무국	7	7	사가현	13	11
나라현	29	10	도야마현	29	15	나가사키현	60	28
와카야마현	25	14	이시카와현	26	15	소계	314	159
시가현	28	12	후쿠이현	21	11	후쿠오카관내합계	341	177
소계	702	425	소계	76	41	오카와종합사무국	4	4
긴키관내합계	765	471	오쿠리쿠관내합계	83	48	오키나와현	114	67
홋카이도재무국	8	7	주오쿠재무국	20	18	소계	114	67
홋카이도	117	71	히로시마현	65	44	오키나와관내합계	118	71
소계	117	71	아마구치현	43	27	재무국 합계	409	349
홋카이도관내합계	125	78	오카야마현	68	37	도도부현 합계	3,648	2,240
			돗토리현	6	3	총합계	4,057	2,589
			시마네현	4	2			
			소계	186	113			
			주오쿠관내합계	206	131			

(주1) 수치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자료집)

2) 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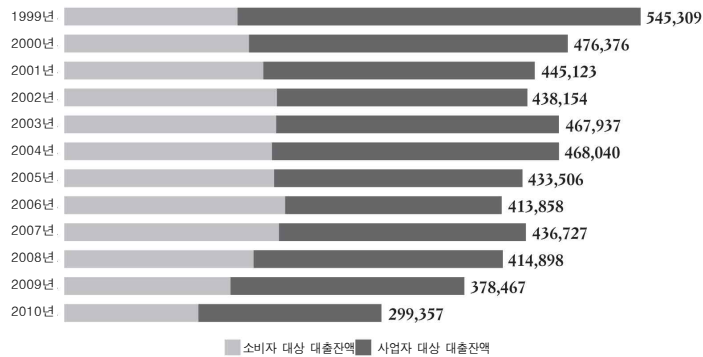
① 소비자 대상과 사업자 대상별 대출 잔액(매년도 말)

2009년 3월말부터 2010년 3월말까지 1년간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은 약 3조 800억엔,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은 약 4조 8,300억엔 감소했다.

도표1-3 대출 잔액 추이(1999년~2010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163,954	174,778	188,292	201,196	200,470	196,550	198,574	209,005	203,053	179,191	157,281	126,477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381,354	301,598	256,831	236,958	267,466	271,489	234,932	204,853	233,674	235,707	221,186	172,880
합계	545,309	476,376	445,123	438,154	467,937	468,040	433,506	413,858	436,727	414,898	378,467	299,357

(단위 : 억엔)



(주1) 매년 3월말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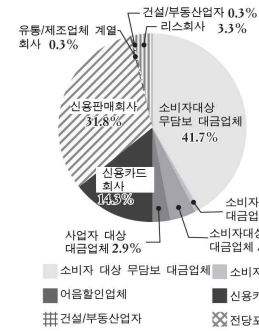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② 업태별 대출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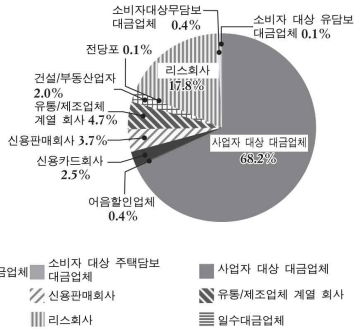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소비자 대상 대출의 41.7%를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금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31.8%를 '신용판매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 대상 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가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17.8%를 '리스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도표1-4 업태별 대출 잔액 비율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비율(2010년 3월말)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비율(2010년 3월말)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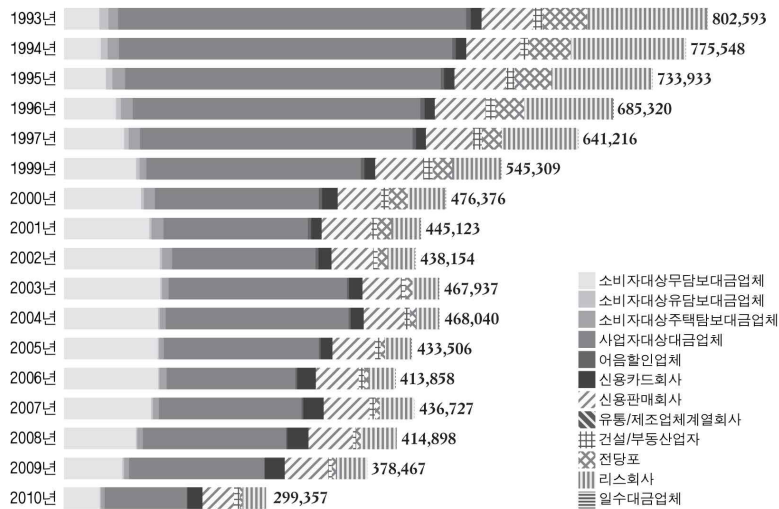
업태별 대출 잔액 구성비 추이의 경우 유동·제조업체 계열 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업태가 감소하고 있다.

도표1-5 업태별 대출 잔액 추이(1993년~2010년)

(단위: 억엔)

	대출 잔액																
	1993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43,900	45,731	52,177	64,771	74,833	89,845	95,948	106,263	119,341	120,074	117,169	116,720	117,403	108,601	89,659	72,853	53,497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11,424	8,481	8,172	6,065	5,768	4,185	3,514	2,755	2,877	2,187	2,288	1,824	1,285	2,408	1,653	1,933	1,351
소비자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11,964	14,326	15,643	14,843	14,137	8,589	13,751	15,054	12,427	8,067	7,226	5,751	9,183	7,154	6,992	6,158	5,719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434,092	415,441	393,910	358,489	339,906	267,382	204,360	179,977	178,909	222,336	228,062	193,333	160,580	177,810	178,547	168,546	121,551
어음할인업체	5,743	4,483	4,241	5,527	4,190	4,709	4,272	4,274	3,897	2,702	2,679	2,385	2,206	2,348	1,597	961	770
신용카드회사	13,482	13,012	12,657	12,586	13,228	13,228	19,268	12,888	16,233	16,828	16,202	14,706	23,345	25,413	26,334	24,635	22,381
신용판매회사	64,453	67,595	64,427	63,222	58,979	59,979	54,170	62,052	51,917	47,702	50,870	53,083	53,504	57,293	55,509	54,434	46,746
유동·제조업체 계열 회사	11,504	9,403	10,316	12,024	11,764	11,764	9,547	6,882	5,632	5,412	6,765	6,903	6,552	6,631	4,044	4,317	8,463
건설·부동산업자	56,002	53,279	46,149	36,236	24,262	24,262	23,774	17,841	12,085	9,248	7,313	5,507	5,432	6,010	5,731	4,962	3,800
전당포	1,299	1,742	1,733	1,212	1,359	1,591	1,279	1,341	988	425	437	240	198	251	141	132	113
리스회사	148,349	141,559	124,120	109,539	93,381	59,117	45,797	35,035	33,350	32,375	28,416	32,379	33,495	42,496	44,543	39,435	34,891
일수대금업체	381	486	388	801	603	652	691	754	694	576	607	660	672	307	142	95	69
합계	802,593	775,548	733,933	685,320	641,216	545,309	476,376	445,123	438,154	467,937	468,040	433,506	413,858	436,727	414,898	378,467	299,357

	대출 잔액 구성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5.5%	5.9%	7.1%	9.5%	11.7%	16.5%	20.1%	23.9%	27.2%	25.7%	25.0%	26.9%	28.4%	24.9%	21.6%	19.2%	17.9%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1.4%	1.1%	1.1%	0.9%	0.9%	0.8%	0.7%	0.6%	0.7%	0.5%	0.5%	0.4%	0.3%	0.6%	0.4%	0.5%	0.5%	
소비자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1.5%	1.8%	2.1%	2.2%	2.2%	1.6%	2.9%	3.4%	2.8%	1.7%	1.5%	1.3%	2.2%	1.6%	1.7%	1.6%	1.9%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54.1%	53.6%	53.7%	52.3%	53.0%	49.0%	42.9%	40.4%	40.8%	47.5%	48.7%	44.6%	38.8%	40.7%	43.0%	44.5%	40.6%	
어음할인업체	0.7%	0.6%	0.6%	0.8%	0.7%	0.9%	0.9%	1.0%	0.8%	0.6%	0.6%	0.6%	0.5%	0.5%	0.4%	0.3%	0.3%	
신용카드회사	1.7%	1.7%	1.7%	1.8%	1.9%	2.4%	4.0%	2.9%	3.7%	3.6%	3.5%	3.4%	5.6%	5.8%	6.3%	6.5%	7.5%	
신용판매회사	8.0%	8.7%	8.8%	9.2%	9.1%	11.0%	11.4%	13.9%	11.8%	10.2%	10.9%	12.2%	12.9%	13.1%	13.4%	14.4%	15.6%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1.4%	1.2%	1.4%	1.8%	1.8%	2.2%	2.0%	1.5%	1.3%	1.2%	1.4%	1.6%	1.6%	1.5%	1.0%	1.1%	2.8%	
건설 부동산업자	7.0%	6.9%	6.3%	5.3%	3.9%	4.4%	5.0%	4.0%	2.8%	2.0%	1.6%	1.3%	1.3%	1.4%	1.4%	1.3%	1.3%	
전당포	0.2%	0.2%	0.2%	0.2%	0.2%	0.3%	0.3%	0.3%	0.2%	0.1%	0.1%	0.0%	0.0%	0.1%	0.0%	0.0%	0.0%	
리스회사	18.5%	18.3%	16.9%	16.0%	14.6%	10.8%	9.6%	7.9%	7.6%	6.9%	6.1%	8.1%	8.1%	9.7%	10.7%	10.4%	11.7%	
일수대금업체	0.0%	0.1%	0.1%	0.1%	0.1%	0.1%	0.1%	0.2%	0.2%	0.1%	0.1%	0.2%	0.2%	0.1%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1998년은 미집계
(주2) 매년 3월 말 수치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도표1-6 (참고) 대금업체의 업태 분류

업태	정의
①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무담보(주택담보 제외)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유담보(주택담보 제외)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비자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⑤~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⑤ 어음할인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어음할인잔액이 50%이상(일본사업자금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5%이상)이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신용카드회사	일본신용카드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⑦~⑫와 중복될 경우 ⑥을 우선한다)
⑦ 신용판매회사	할부구입 알선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⑫와 중복될 경우에는 ⑦을 우선한다)
⑧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전기기계기구 관련 비영리법인과 자동차 관계의 비영리법인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열사가 동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또는 일본백화점협회, 일본체인점협회, 일본상점연맹, 일본전문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열사가 동 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⑨, ⑪과 중복될 경우는 ⑧을 우선한다)
⑨ 건설 부동산업자	건설·부동산 관계의 비영리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⑪과 중복될 경우에는 ⑨를 우선한다)
⑩ 전당포	전당포 허가를 받은 업체 (⑧, ⑨, ⑪과 중복될 경우 ⑩을 우선한다)
⑪ 리스회사	사단법인 리스사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⑫ 일수대금업체	일수대금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⑪과 중복될 경우 ⑫를 우선한다)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3) 업태별 대출금리

도표1-7 업태별 대출금리(2010년 3월말)

업태	업체수 (*2)	소비자 대상 대출				사업자 대상 대출				합계		
		잔액 (억엔) (*3)	구성비	금리 (%) (*4)	무담보대출 잔액 (억엔) (*3)	잔액 (억엔) (*3)	구성비	금리 (%) (*4)	잔액 (억엔) (*3)	구성비	금리 (%) (*4)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업체	1,039	52,794	41.7%	19.59	48,899	19.96	703	0.4%	10.78	53,497	17.9%	19.47
대형(*1)	11	48,534	38.4%	19.47	44,760	19.85	462	0.3%	10.45	48,997	16.4%	19.39
대형 이외	1,028	4,259	3.4%	20.93	4,139	21.14	241	0.1%	11.41	4,500	1.5%	20.42
소비자대상 유담보 대출업체	208	1,205	1.0%	9.13	188	23.49	146	0.1%	8.31	1,351	0.5%	9.04
소비자대상 주택담보 대출업체	67	5,646	4.5%	3.33	31	3.81	73	0.0%	2.78	5,719	1.9%	3.33
사업자대상 대출업체	907	3,629	2.9%	7.07	1,030	14.63	117,921	68.2%	1.96	121,551	40.6%	2.11
어음할인업체	151	10	0.0%	10.48	6	12.08	759	0.4%	9.61	770	0.3%	9.62
신용카드회사	143	18,054	14.3%	16.25	17,385	16.78	4,327	2.5%	1.59	22,381	7.5%	13.41
신용판매회사	106	40,277	31.8%	16.02	39,360	16.31	6,468	3.7%	2.09	46,746	15.6%	14.10
유통·제조업체계열 회사	41	382	0.3%	4.49	92	12.61	8,081	4.7%	1.24	8,463	2.8%	1.38
건설·부동산업자	157	342	0.3%	9.10	25	13.00	3,457	2.0%	4.92	3,800	1.3%	5.29
전당포	51	21	0.0%	20.56	10	23.02	92	0.1%	9.96	113	0.0%	11.92
리스회사	86	4,113	3.3%	2.53	175	2.98	30,778	17.8%	3.26	34,891	11.7%	3.18
일수대출업체	98	-	-	-	-	-	69	0.0%	51.87	69	0.0%	51.87
합계	3,054	126,477	100.0%	16.16	107,207	18.02	172,880	100.0%	2.31	299,357	100.0%	8.16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업체'에서 '대형'이란 대출 잔액이 500억 엔이 넘는 업체를 말한다.

(*2)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 제출업체(3,472)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418)를 제외한 수이다.

(*3) 대출 잔액은 억 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4) '금리'는 '평균약정금리'를 말한다.

(출처: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4) 업태별 대출건수 및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도표1-8 업태별 대출 건수, 1건당 평균 대출 잔액(2010년 3월말)

업태	업체 수(*2)	소비자 대상 대출					사업자 대상 대출					합계	
		건수(건)(*3)	잔액(억엔)(*4)	1건당 평균대출 잔액(억엔)(*5)	무담보 건수(건)(*3)	무담보 잔액(억엔)(*4)	1건당 평균대출 잔액(억엔)(*5)	건수(건)(*3)	잔액(억엔)(*4)	1건당 평균대출 잔액(억엔)(*5)	건수(건)(*3)	잔액(억엔)(*4)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업체	1,039	9,881,606	52,794	534	9,767,892	48,899	501	22,603	703	3,110	9,904,209	53,497	
대형(*1)	11	8,358,943	48,534	581	8,251,608	44,760	542	10,259	462	4,505	8,369,199	48,997	
대형 이외	1,028	1,522,663	4,259	280	1,516,284	4,139	273	12,347	241	1,952	1,535,010	4,500	
소비자대상 유담보 대출업체	208	87,735	1,205	1,373	66,376	188	283	2,636	146	5,539	90,371	1,351	
소비자대상 주택담보 대출업체	67	62,471	5,646	9,038	4,766	31	650	162	73	45,062	62,633	5,719	
사업자대상 대출업체	907	425,064	3,629	854	399,643	1,030	258	189,774	117,921	62,138	614,838	121,551	
어음할인업체	151	1,442	10	693	1,250	6	480	40,054	759	1,895	41,496	770	
신용카드회사	143	14,552,464	18,054	124	14,544,491	17,385	120	11,597	4,327	37,311	14,564,061	22,381	
신용판매회사	106	30,166,583	40,277	134	30,155,306	39,360	131	12,161	6,468	53,186	30,180,744	46,746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41	43,731	382	874	41,131	92	224	3,624	8,081	222,986	47,355	8,463	
건설·부동산업자	157	10,009	342	3,417	4,912	25	509	11,752	3,457	29,416	21,761	3,800	
전당포	51	4,955	21	424	4,007	10	250	1,598	92	5,757	6,553	113	
리스회사	86	91,479	4,113	4,496	63,022	175	278	14,518	30,778	211,999	105,997	34,891	
일수대출업체	98	-	-	-	-	-	-	18,225	69	379	18,225	69	
합계	3,054	55,339,539	126,477	229	55,052,796	107,207	195	328,704	172,880	52,594	55,658,243	299,357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업체'에서 '대형'이란 대출 잔액이 500억 엔이 넘는 업체를 말한다.

(*2)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 제출업체(3,472)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418)를 제외한 수이다.

(*3) '건수'는 각 업체의 건수를 단순 합계한 수치. 각 업체의 계약 형태 및 채권관리방법에 따라 건수를 계산하는 법에 차이가 있어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등 업태간 단순 비교는 불가능

(*4) 대출 잔액은 억 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출처: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5) 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 잔액

①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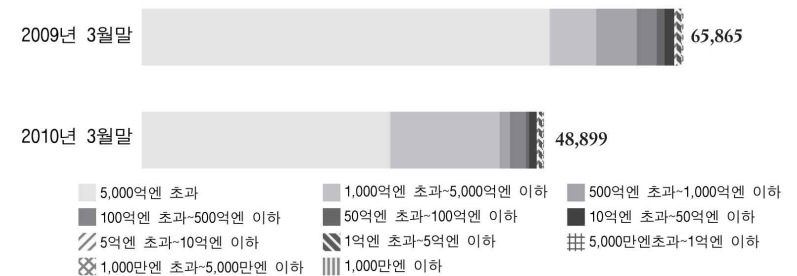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은 2009년 3월말부터 2010년 3월말까지 1년간 약 1조 7,000억엔, 건수의 경우 약 360만 건이 감소하였다. 특히 대출 잔액 규모가 5,000억 엔을 넘는 대금업체의 경우 약 1조 9,300억엔, 건수의 경우 약 310만 건이 감소함으로 그 감소 폭이 컸다.

도표1-9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 잔액 규모	2009년 3월말							2010년 3월말						
	해당업체 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					해당업체 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1)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억엔)	구성비 (%)	잔액 (억엔)(*1)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억엔)		
5,000억엔 초과	6	0.4	49,579	75.3	8,849,447	66.3	560	4	0.4	30,217	61.8	5,741,956	58.8	526
1,0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3	0.2	5,660	8.6	974,452	7.3	581	5	0.5	13,278	27.2	2,351,645	24.1	565
500억엔 초과~1,000억엔 이하	6	0.4	4,922	7.5	755,722	5.7	651	2	0.2	1,264	2.6	158,007	1.6	800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11	0.7	2,437	3.7	1,442,836	10.8	169	10	1.0	1,957	4.0	639,654	6.5	306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13	0.8	948	1.4	378,829	2.8	250	5	0.5	396	0.8	119,301	1.2	332
10억엔 초과~50억엔 이하	53	3.2	1,166	1.8	425,743	3.2	274	42	4.0	889	1.8	358,020	3.7	248
5억엔 초과~10억엔 이하	40	2.4	284	0.4	122,087	0.9	233	35	3.4	249	0.5	99,486	1.0	250
1억엔 초과~5억엔 이하	242	14.5	550	0.8	245,397	1.8	224	188	18.1	422	0.9	183,801	1.9	230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174	10.5	123	0.2	53,318	0.4	231	146	14.1	104	0.2	50,463	0.5	206
1,000만엔 초과~5,000만엔 이하	655	39.3	169	0.3	88,260	0.7	191	400	38.5	110	0.2	59,108	0.6	186
1,000만엔 이하	462	27.7	22	0.0	16,317	0.1	135	202	19.4	10	0.0	6,451	0.1	155
합계	1,665	100.0	65,865	100.0	13,352,408	100.0	493	1,039	100.0	48,899	100.0	9,767,892	100.0	501

■ 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 잔액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단위: 억엔)



(주 1) 상기 표는 각 업체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을 규모별로 분류한 표이다.

(주 2)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대출 잔액은 억 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출처: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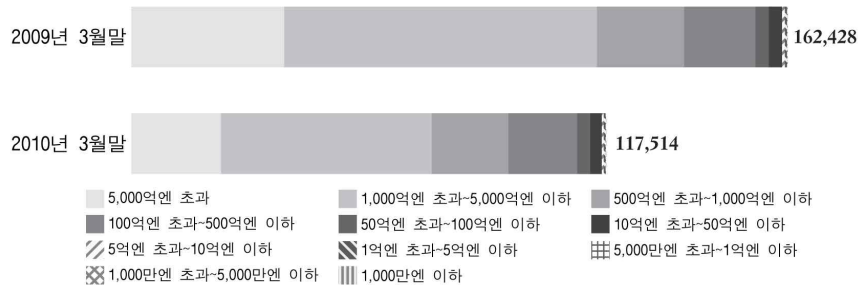
②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의 경우 2009년 3월말부터 2010년 3월말까지 1년간 약 4조 5,000억원 감소했으며, 규모별로는 대출 잔액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대금업체의 경우 약 1조 5,600억원, 대출 잔액 규모가 1,000억 초과~5,000억원 이하의 대금업체의 경우 약 2조 5,200억원 감소했다.

도표1-10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 잔액 규모	2009년 3월말						2010년 3월말							
	해당업체 수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해당업체 수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원)	구성비 (%)	잔액 (천)	구성비 (%)	1인당 평균대출 잔액(백만원)	구성비 (%)	잔액 (억원)	구성비 (%)	잔액 (천)	구성비 (%)	1인당 평균대출 잔액(백만원)		
5,000억원 초과	5	0.4	37,854	23.3	31,110	13.5	121.7	3	0.3	22,214	18.9	20,279	11.4	109.5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	37	3.1	77,361	47.6	7,423	3.2	1042.2	26	2.9	52,119	44.4	2,911	1.6	1790.4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32	2.7	21,552	13.3	48,305	21.0	44.6	27	3.0	18,963	16.1	70,382	39.4	26.9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76	6.4	17,665	10.9	100,112	43.6	17.6	66	7.3	17,031	14.5	44,354	24.8	38.4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46	3.9	3,298	2.0	4,382	1.9	75.3	44	4.9	3,184	2.7	10,355	5.8	30.7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38	11.7	3,281	2.0	11,896	5.2	27.6	121	13.3	2,905	2.5	12,608	7.1	23.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3	7.9	679	0.4	7,920	3.4	8.6	63	6.9	456	0.4	3,479	1.9	13.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35	19.8	550	0.3	9,059	3.9	6.1	193	21.3	496	0.4	6,453	3.6	7.7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52	12.8	110	0.1	4,962	2.2	2.2	117	12.9	88	0.1	3,754	2.1	2.3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51	21.2	67	0.0	3,733	1.6	1.8	184	20.3	50	0.0	3,606	2.0	1.4
1,000만원 이하	119	10.1	6	0.0	873	0.4	0.7	63	6.9	3	0.0	391	0.2	0.8
합계	1,184	100.0	162,428	100.0	229,775	100.0	70.7	907	100.0	117,514	100.0	178,571	100.0	65.8

■ 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 잔액 (사업자 대상 대출)



(단위: 억엔)

- (주 1) 상기 표 외의 대출로 어음할인이 약 406억 엔 있다.
 (주 2) 상기 표는 각 업체의 사업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을 규모별로 분류한 것이다.
 (주 3)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대출 잔액은 억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6) 민원, 상담·조회 건수

2008년도와 비교하여 2009년도에는 민원건수가 41.9%(3,652건) 감소했으며, 상담·조회 건수는 16.1%(5,81건) 감소했다.

도표1-11 2008년 4월 이후 상담 등 건수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민원 등 접수 건수	11,615	11,083	11,486	10,744	44,928	10,156	8,220	8,656	8,429	35,461
무등록업자와 관련된 사항	4,107	3,690	3,449	2,997	14,243	2,571	2,073	1,889	1,734	8,267
추심행위	378	431	691	350	1,850	243	162	154	157	716
계약내용	154	163	185	120	622	106	59	50	54	269
금리	203	155	154	124	636	128	96	73	95	392
연금담보	5	8	6	22	41	10	5	6	8	29
장부 공개	774	552	481	586	2,393	645	412	350	277	1,684
과잉대부	8	8	6	2	24	10	8	4	9	31
행정당국사청, 등록업체사청	151	129	147	74	501	96	55	23	14	188
보증계약	38	47	18	17	120	14	14	16	33	77
광고·권유(사청 이외)	69	93	58	34	254	40	19	33	23	115
기타	656	540	520	554	2,270	508	395	334	321	1,558
민원 계	2,436	2,126	2,266	1,883	8,711	1,800	1,225	1,043	991	5,059
채무조정 등	1,540	1,551	1,625	1,423	6,139	1,039	525	595	622	2,781
금리	187	165	209	153	714	166	91	92	90	439
상담기관	205	193	263	289	950	203	104	320	163	790
등록확인(무등록 의심)	2,922	2,983	3,088	2,979	11,972	2,672	2,257	2,392	2,146	9,467
제도개정요망	28	19	14	26	87	40	31	35	40	146
법령해석 등	307	325	365	390	1,387	1,047	961	1,159	1,282	4,449
기타	3,990	3,721	3,656	3,601	14,968	3,189	3,026	3,020	3,095	12,330
상담·조회 계	9,179	8,957	9,220	8,861	36,217	8,356	6,995	7,613	7,438	3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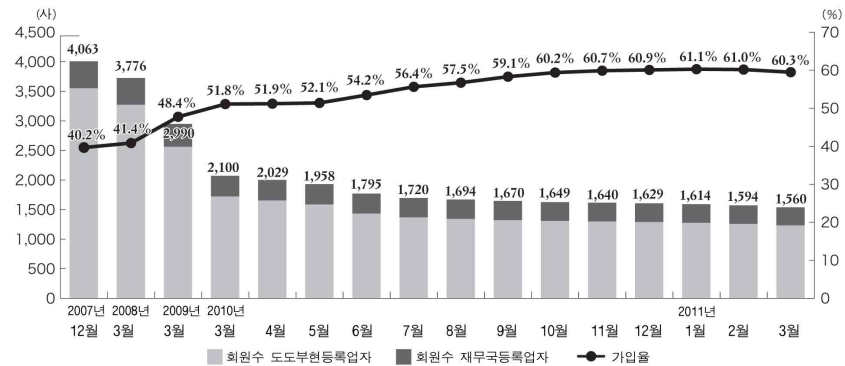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집)

2.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1) 회원사 수 추이

2007년 12월 협회 설립 이후부터 2011년 3월말까지의 회원사 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 회원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가입률(등록업체 가운데 회원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0년 10월 이후부터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도표1-12 회원사 수와 가입률 추이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통계자료)

2) 회원의 구성

회원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업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크고 작은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업태별 회원사의 구성

가입된 회원사를 12개 업태로 분류할 경우 대금업체 수 및 대출 잔액은 다음과 같다.

도표1-13 업태별 대금업체수 · 대출 잔액

업태	대금업체수(*1)		대출 잔액(*2)	
	(사)	(%)	(백만원)	(%)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634	40.6%	6,228,944	34.5%
소비자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139	8.9%	70,633	0.4%
소비자대상 주택담보 대금업체	30	1.9%	273,001	1.5%
사업자대상 대금업체	374	24.0%	1,498,506	8.3%
어음할인업체	66	4.2%	50,108	0.3%
신용카드회사	157	10.1%	3,165,076	17.5%
신용판매회사	46	2.9%	3,705,364	20.5%
유통 · 제조업체 계열 회사	25	1.6%	1,926,980	10.7%
건설 · 부동산업자	39	2.5%	101,687	0.6%
전당포	3	0.2%	1,382	0.0%
리스회사	39	2.5%	1,042,833	5.8%
일수대금업체	8	0.5%	162	0.0%
합계	1,560	100.0%	18,064,676	100.0%

(*1) 대금업체 수는 2011년 3월말 기준 수치

(*2) 대출 잔액은 2010년 2월까지 수령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직전결산연도 수치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② 규모별 회원사의 구성

가입된 회원사를 규모별(자본금 및 대출 잔액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1-14 자본금별 회원사 현황

	대금업체수(*1)		대출 잔액(*2)	
	(사)	(%)	(백만원)	(%)
개인	412	26.4%	30,143	0.2%
법인	1,148	73.6%	18,034,533	99.8%
2,000만원 미만	339	21.7%	373,546	2.1%
5,000만원 미만	325	20.8%	328,366	1.8%
5,000만원 이상	484	31.1%	17,332,621	95.9%
합계	1,560	100.0%	18,064,676	100.0%

(*1) 대금업체 수는 2011년 3월말 기준 수치.

(*2) 대출 잔액은 2010년 2월까지 수령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직전결산연도 수치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도표1-15 대출 잔액별 회원사 현황

	대금업체수(*1)		대출 잔액(*2)	
	(사)	(%)	(백만엔)	(%)
1,000만엔 미만	219	14.0%	322	0.0%
1억엔 미만	446	28.6%	20,449	0.1%
500억엔 미만	850	54.5%	2,200,348	12.2%
5,000억엔 미만	33	2.1%	5,376,285	29.8%
5,000억엔 이상	12	0.8%	10,467,272	57.9%
합계	1,560	100.0%	18,064,676	100.0%

(*1) 대금업체 수는 2011년 3월말 기준 수치.

(*2) 대출 잔액은 2010년 2월까지 수령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직전결산연도 수치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3) 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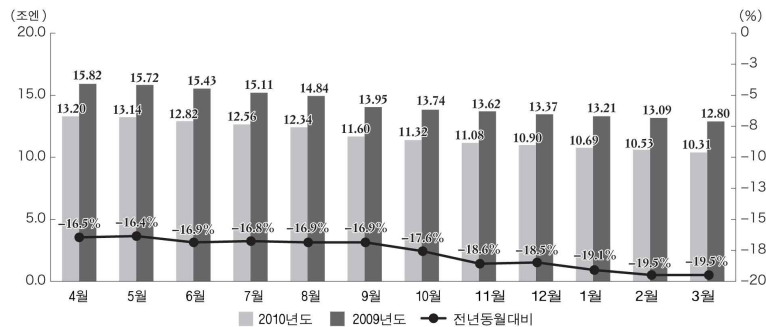
① 대출 잔액 추이(전체)

2009년도와 2010년도의 대출 잔액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17.8%(*1)가 감소했으며, 2010년도 말과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을 비교하면 -19.5%로 하락하여 감소폭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도표1-16 월말 대출 잔액 추이

(단위: 백만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2009년도	15,822,075	15,729,805	15,439,167	15,111,626	14,845,883	13,959,072	13,746,708	13,624,715	13,376,239	13,219,880	13,090,935	12,808,975
2010년도	13,208,746	13,149,546	12,826,378	12,565,326	12,342,745	11,601,865	11,324,742	11,085,796	10,906,340	10,696,273	10,538,582	10,317,131
전년동월대비	-16.5%	-16.4%	-16.9%	-16.8%	-16.9%	-16.9%	-17.6%	-18.6%	-18.5%	-19.1%	-19.5%	-19.5%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 대비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1) 전년동월 대비를 가산하여 12로 나눈 값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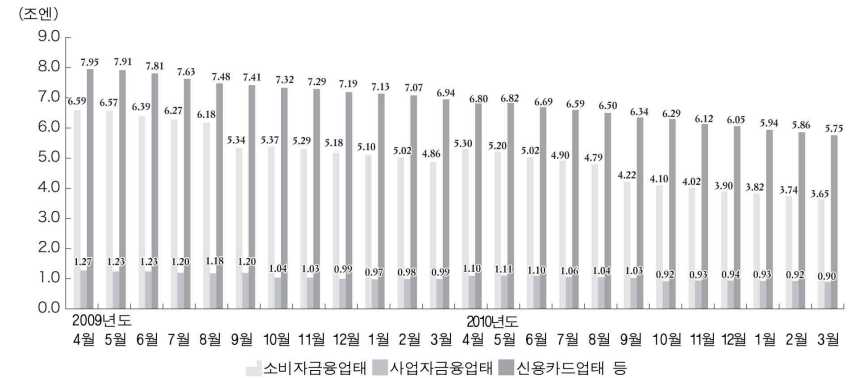
② 업태별 대출 잔액 추이

업태별 대출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과 전년도 말 대출 잔액을 비교하면 소비자금융업태와 신용카드업태 모두 약 1조 2000억 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도표1-17 업태별 월말 대출 잔액 추이

(단위: 백만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소비자금융업태	6,591,571	6,571,612	6,391,144	6,277,079	6,180,441	5,340,866	5,376,501	5,295,222	5,183,222	5,105,004	5,023,491	4,866,621
사업자금융업태	1,278,237	1,239,780	1,236,966	1,203,068	1,180,567	1,200,654	1,042,447	1,036,430	998,174	977,980	989,702	993,913
신용카드업태	7,952,267	7,918,413	7,811,057	7,631,479	7,484,875	7,417,552	7,327,760	7,293,062	7,194,843	7,136,893	7,077,738	6,948,441
전체	15,822,075	15,729,805	15,439,167	15,111,626	14,845,883	13,959,072	13,746,708	13,624,715	13,376,239	13,219,880	13,090,935	12,808,975
소비자금융업태	5,301,758	5,208,950	5,029,228	4,905,828	4,791,532	4,224,517	4,103,090	4,020,928	3,903,393	3,823,570	3,744,598	3,653,824
사업자금융업태	1,100,556	1,112,118	1,102,743	1,061,069	1,047,551	1,031,174	924,418	937,679	944,336	932,047	929,634	904,442
신용카드업태	6,806,432	6,828,478	6,694,406	6,594,429	6,503,662	6,346,174	6,297,235	6,127,189	6,058,611	5,940,656	5,864,351	5,758,864
전체	13,208,746	13,149,546	12,826,378	12,565,326	12,342,745	11,601,865	11,324,742	11,085,796	10,906,340	10,696,273	10,538,582	10,317,131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 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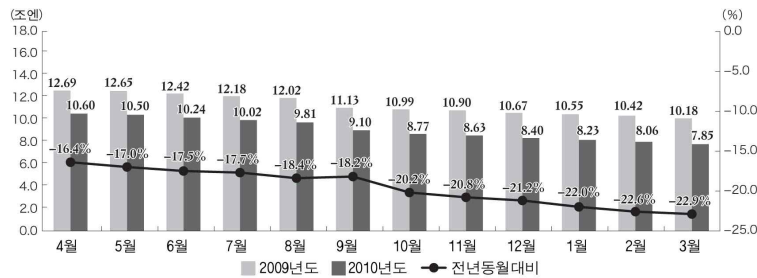
③ 대출 종류별 대출 잔액의 최근 2년간 추이

2009년도 대출 잔액과 2010년도 대출 잔액을 비교해 보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은 월 평균 19.6%(*1),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은 월 평균 10.5%(*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의 경우 2010년 4월 기준으로 소비자 대상 대출이 16.4%, 사업자 대상 대출이 16.8% 감소했는데, 2011년 3월 기준의 경우 소비자 대상 대출이 -22.9%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하여 사업자 대상 대출은 6.2% 감소하는데 그쳤다.

도표1-18 소비자 대상 대출의 월말 대출 잔액의 추이

(단위: 백만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2009년도	12,696,710	12,653,089	12,426,587	12,182,955	12,020,621	11,137,484	10,996,313	10,907,282	10,674,013	10,550,304	10,427,617	10,182,148
2010년도	10,609,275	10,504,770	10,248,124	10,020,894	9,810,917	9,109,491	8,772,991	8,635,943	8,407,328	8,231,663	8,068,141	7,854,440
전년동월대비	-16.4%	-17.0%	-17.5%	-17.7%	-18.4%	-18.2%	-20.2%	-20.8%	-21.2%	-22.0%	-22.6%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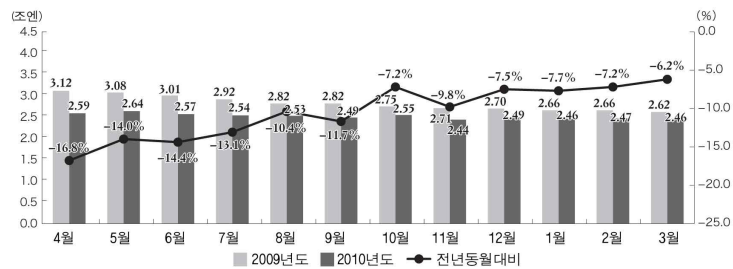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도표1-19 사업자 대상 대출의 월말 대출 잔액의 추이

(단위: 백만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2009년도	3,125,365	3,076,715	3,012,580	2,928,671	2,825,262	2,821,588	2,750,395	2,717,432	2,702,226	2,669,576	2,663,318	2,626,828
2010년도	2,599,471	2,644,775	2,578,253	2,544,432	2,531,828	2,492,374	2,551,751	2,449,853	2,499,012	2,464,610	2,470,441	2,462,991
전년동월대비	-16.8%	-14.0%	-14.4%	-13.1%	-10.4%	-11.7%	-7.2%	-9.8%	-7.5%	-7.7%	-7.2%	-6.2%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1)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12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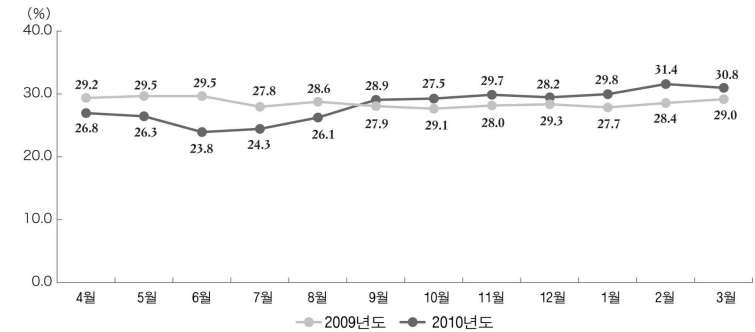
(출처: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4) 승인률 추이

2009년 4월 이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승인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0년 6월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도표1-20 승인율(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2009년도	29.2%	29.5%	29.5%	27.8%	28.6%	27.9%	27.5%	28.0%	28.2%	27.7%	28.4%	29.0%
2010년도	26.8%	26.3%	23.8%	24.3%	26.1%	28.9%	29.1%	29.7%	29.3%	28.2%	31.4%	30.8%



(주1) 소비자금융업태 중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승인율(당월 계약 수/당월 신청건수)

(주2)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출처: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5) 대출종류별 월간 계약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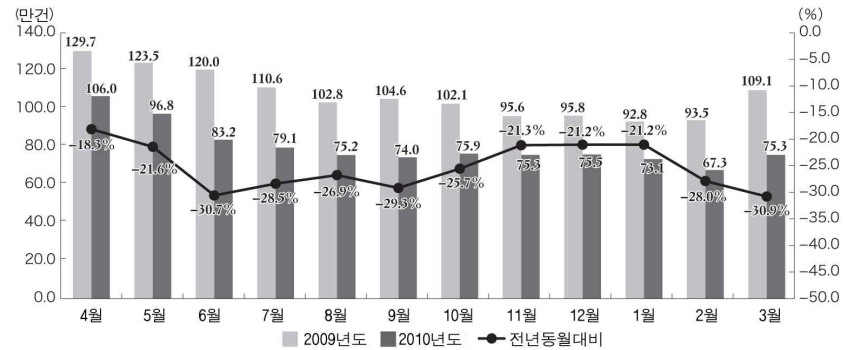
① 소비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건수 추이

최근 2년간 소비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과 전년도 말을 비교해 보면 약 33만건, 30.9%가 감소했다.

도표1-21 소비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건수 추이

(단위: 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2009년도	1,297,566	1,235,101	1,200,570	1,106,796	1,028,889	1,046,996	1,021,720	956,863	958,555	928,452	935,155	1,090,876
2010년도	1,060,174	968,605	832,446	791,877	752,126	740,129	759,464	752,939	755,214	731,515	673,236	753,728
전년동월대비	-18.3%	-21.6%	-30.7%	-28.5%	-26.9%	-29.3%	-25.7%	-21.3%	-21.2%	-21.2%	-28.0%	-30.9%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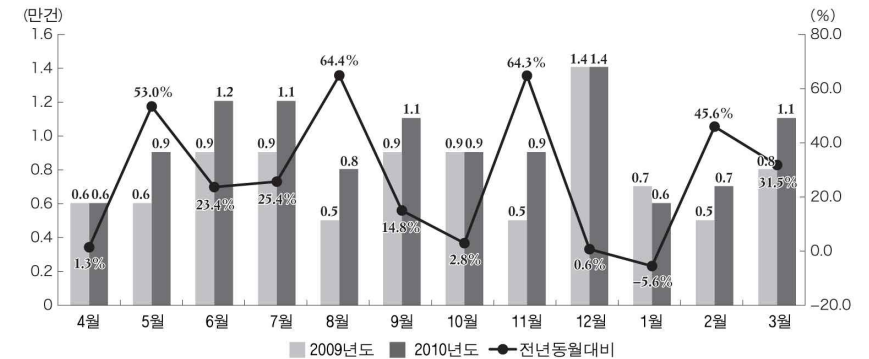
② 사업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건수 추이

사업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건수의 증감치는 일정하지 않지만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했을 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표1-22 사업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건수 추이

(단위: 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 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2009년도	6,865	6,206	9,873	9,559	5,320	9,938	9,189	5,941	14,460	7,245	5,412	8,587
2010년도	6,951	9,497	12,181	11,986	8,745	11,413	9,443	9,762	14,553	6,838	7,882	11,290
전년동월대비	1.3%	53.0%	23.4%	25.4%	64.4%	14.8%	2.8%	64.3%	0.6%	-5.6%	45.6%	31.5%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6) 점포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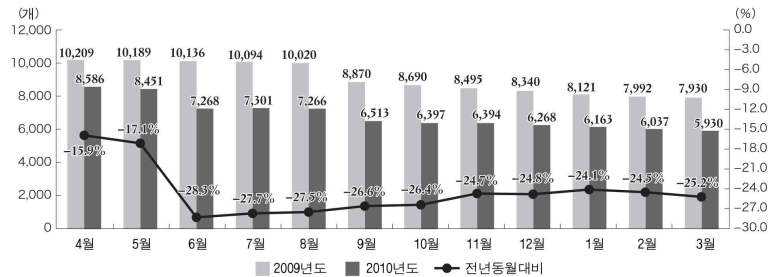
① 유인·무인점포 수 추이

2009년 4월과 2011년 3월의 점포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4,279개가 감소하였으며, 유인점포는 677개, 무인점포는 3,602개 감소했다. 특히 무인점포의 감소가 현저하다.

도표1-23 점포수 추이(유인·무인점포 합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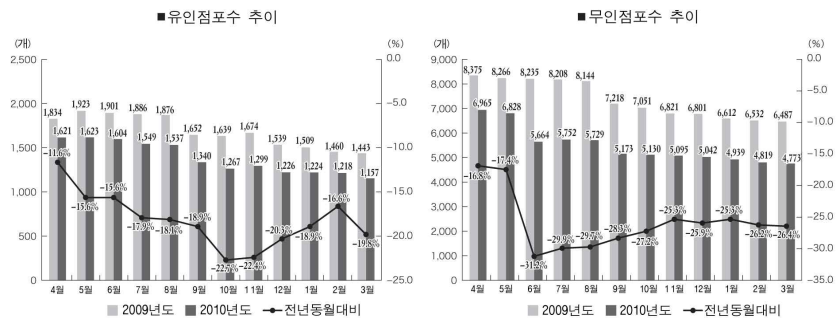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유인점포수	1,834	1,923	1,901	1,886	1,876	1,652	1,639	1,674	1,539	1,509	1,460	1,443
무인점포수	8,375	8,266	8,235	8,208	8,144	7,218	7,051	6,821	6,801	6,612	6,532	6,487
합계	10,209	10,189	10,136	10,094	10,020	8,870	8,690	8,495	8,340	8,121	7,992	7,930
유인점포수	1,621	1,623	1,604	1,549	1,537	1,340	1,267	1,299	1,226	1,224	1,218	1,157
무인점포수	6,965	6,828	5,664	5,752	5,729	5,173	5,130	5,095	5,042	4,939	4,819	4,773
합계	8,586	8,451	7,268	7,301	7,266	6,513	6,397	6,394	6,268	6,163	6,037	5,930
전년동월대비	-15.9%	-17.1%	-28.3%	-27.7%	-27.5%	-26.6%	-26.4%	-24.7%	-24.8%	-24.1%	-24.5%	-25.2%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도표1-24 유인·무인점포 수 추이



(출처: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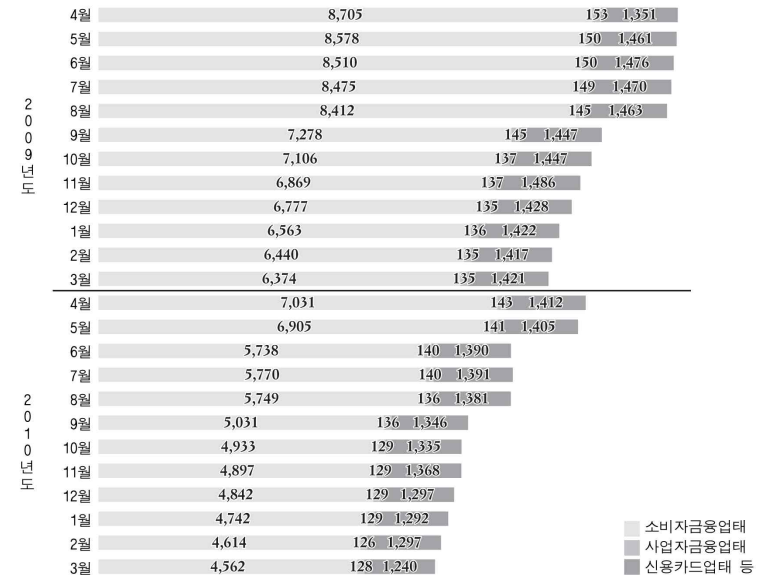
② 업태별 점포 수

최근 2년간 점포수를 업태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업태에 걸쳐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 가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금융업태의 감소율이 연 평균 28.2%^(*) 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도표1-25 업태별 점포 수 추이(유인·무인점포 합계)

(단위: 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소비자금융업태	8,705	8,578	8,510	8,475	8,412	7,278	7,106	6,869	6,777	6,563	6,440	6,374
사업자금융업태	153	150	150	149	145	145	137	137	135	136	135	135
신용카드업태 등	1,351	1,461	1,476	1,470	1,463	1,447	1,447	1,486	1,428	1,422	1,417	1,421
소비자금융업태	7,031	6,905	5,738	5,770	5,749	5,031	4,933	4,897	4,842	4,742	4,614	4,562
사업자금융업태	143	141	140	140	136	136	129	129	129	129	126	128
신용카드업태 등	1,412	1,405	1,390	1,391	1,381	1,346	1,335	1,368	1,297	1,297	1,297	1,240
전년동월대비	-19.2%	-19.5%	-32.6%	-31.9%	-31.7%	-30.9%	-30.6%	-28.7%	-28.6%	-27.8%	-28.4%	-28.4%
소비자금융업태	-6.5%	-6.0%	-6.7%	-6.0%	-6.2%	-6.2%	-5.8%	-5.8%	-4.4%	-5.1%	-6.7%	-5.2%
신용카드업태 등	4.5%	-3.8%	-5.8%	-5.4%	-5.6%	-7.0%	-7.7%	-7.9%	-9.2%	-9.1%	-8.4%	-12.7%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12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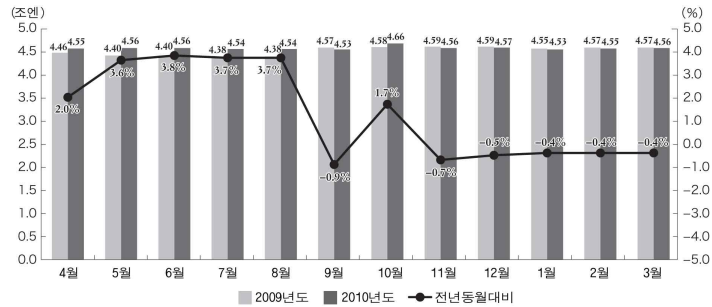
7) 보증잔액의 추이

2009년도 월말 보증 잔액과 2010년도 월말 보증 잔액의 추이는 거의 변동이 없다.

도표1-26 월말 보증 잔액의 추이

(단위: 백만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 수	65	65	64	64	63	62	59	59	59	59	59	59
2009년도	4,469,882	4,406,537	4,402,479	4,384,829	4,382,010	4,574,954	4,586,761	4,590,692	4,596,163	4,553,878	4,574,392	4,577,022
2010년도	4,557,437	4,566,733	4,568,142	4,545,366	4,545,482	4,533,277	4,664,537	4,560,552	4,573,762	4,533,937	4,557,891	4,560,845
전년동월대비	2.0%	3.6%	3.8%	3.7%	3.7%	-0.9%	1.7%	-0.7%	-0.5%	-0.4%	-0.4%	-0.4%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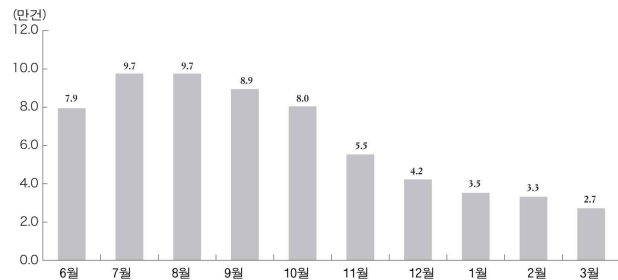
8) 개정 대금업법에 관한 이용자의 문의·상담·민원건수 추이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문의·상담·민원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표1-27 문의·상담·민원 건수 추이

(단위: 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 수	62	61	61	61	58	58	59	58	58	59
2010년도	79,601	97,691	97,498	89,500	80,205	55,496	42,042	35,729	33,845	27,028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9) 이자 반환 관련 대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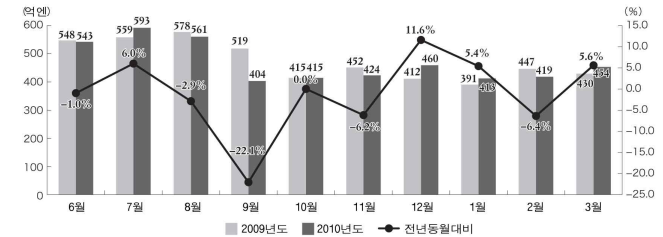
① 이자반환금

이자반환금의 경우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월 약 390억엔에서 590억엔 정도 발생하고 있다.

도표1-28 이자반환금 추이

(단위: 백만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 수	62	61	61	61	58	58	59	58	58	59
2009년도	54,893	55,950	57,814	51,975	41,500	45,218	41,268	39,199	44,756	43,023
2010년도	54,347	59,302	56,154	40,486	41,520	42,434	46,050	41,334	41,907	45,447
전년동월대비	-1.0%	6.0%	-2.9%	-22.1%	0.0%	-6.2%	11.6%	5.4%	-6.4%	5.6%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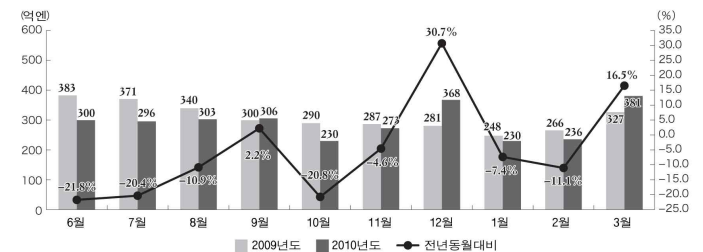
②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월 약 230억엔에서 380억엔 정도 발생하고 있다.

도표1-29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추이

(단위: 백만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조사대상 회원사 수	62	61	61	61	58	58	59	58	58	59
2009년도	38,370	37,192	34,028	30,005	29,096	28,716	28,173	24,883	26,608	32,725
2010년도	30,013	29,603	30,335	30,650	23,051	27,386	36,813	23,045	23,659	38,129
전년동월대비	-21.8%	-20.4%	-10.9%	2.2%	-20.8%	-4.6%	30.7%	-7.4%	-11.1%	16.5%



(주1) 조사대상 회원사 수는 조사를 실시한 달의 조사 대상 전체 회원사 수를 말하며 전년동월대비는 조사 실시한 달의 대상 회원사(여기에서는 2010년도 매달 대상 회원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 실태조사)

1. 대금업계를 둘러싼 환경

1) 대금업법

① 대금업규제법의 공포·시행

‘대금업규제 등에 관한 법률(대금업규제법)’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대금업체가 조직하는 단체의 적절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13일에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1983년 법률 제32호).

② 2003년 개정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단속할 목적으로 2003년 8월 1일에 규제를 강화한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대금업규제법)’ 및 출자의 수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3년 법률 제136호, 통칭 ‘불법사금융 대책법’)이 통과되었으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③ 2006년 개정

2006년 개정의 경우

- (1) 상기 ②의 2003년 개정 부칙에서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 (2)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간주상환제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 (3) 특히 다중채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인 것으로 여겨져,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상의 금리 차이 구간을 지칭하는 그레이존 금리의 폐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05년 3월 이후, 금융청에서 ‘대금업제도 등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여러 안이 제출되었는데 특례금리의 도입과 같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6년 4월에 중간정리가 제시되었고 금리에 관해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 수준에 맞춰 인하할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전해졌다. ‘중간정리’를 감안하여 논의를 한 후 내각회의가 결정되었고, 그레이존 금리의 폐지 등을 포함한 내각제안법안(‘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이

2006년 10월 31일에 제165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었다.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이른바 개정 대금업법이 가결·통과되었으며, 12월 20일에 공포되었다(2006년 법률 제115호).

그리고 상기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출자의 수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이 2007년 11월 7일에 공포되었다.

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법률안 요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다중채무 문제 해결의 중요성 및 대금업이 일본 경제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감안하여 대금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금업협회 및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와 관련된 제도의 확충을 비롯한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신설과 함께 대금업체의 과잉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간주상환제도의 폐지, 업으로 금전대출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실시할 경우의 상한금리 인하, 업으로 실시하는 과도한 고금리에 대한 처벌의 신설, 이자로 간주되는 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을 실시하기로 한다.’

2)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크게 4단계로 시행되었다.

① 1조 개정 (2007년 1월 20일 시행)

‘무등록업자’와 ‘초고금리 대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② 2조 개정 (2007년 12월 19일 시행)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금업법’으로 개정하고, ‘대금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행위 규제의 강화’,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의 강화’ 등을 실시하였다.

③ 3조 개정 (2009년 6월 18일 시행)

‘재산적 기초요건 인상’,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신설’,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제도의 신설’ 등이 실시되었다.

④ 완전시행 (2010년 6월 18일 시행)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반드시 배치해야 할 의무)’,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5,000만엔)’, ‘행위 규제의 강화’, ‘간주상환제도의 폐지’, ‘과잉대출 금지(총량규제의 도입)’ 등이 실시되었다.

이로써 200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대금업법 개정이 완전 시행되었다.

3) 이자 반환 청구의 계속되는 증가와 대금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2006년 1월 13일, 대법원이 대금업규제법 제43조(간주 상환 규정)와 관련하여 ‘임의 금리 존(이른바 “그레이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지불의 임의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판결 후 이자반환청구의 급증을 초래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9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자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거래종료시라고 판단함으로써 이자 반환 청구의 수습이 불투명해졌고 대금업체측에서는 이자반환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 확보가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도 악화되어 자금 융통 면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도산과 폐업을 피할 수 없게 된 대금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재무국과 도도부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금업자의 수는 2,589개사(2011년 3월말 기준)인데 2007년 3월말의 경우 11,832개사였던 점을 볼 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자 반환 청구 건수와 이자 반환 금액 모두 2010년 상반기에는 감소 기조를 보였는데 대형 대금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증가 추세는 멈출 줄 몰라 대금업계의 흑독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 대금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4)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설치와 개정대금업법 폴로업팀 설치

①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설치

(1) 설치 경위

개정 대금업법 부칙 제67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시행으로부터 2년 반 이내에 ‘개정 후의 실시상황, 대금업체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후의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거한 금리규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은 개정 대금업법 부칙 제67조에 규정된 검토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2009년 11월 13일 발표)

(2) 주된 검토 내용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이 검토하게 될 주요 내용은 다음의 5개 항목이다.

- ㉠ 대금업 이용자의 실태(이용자의 전체상, 다중채무자의 현황 등)
- ㉡ 대금업체의 실태(경영상태, 과불금 반환청구 현황 등)
- ㉢ 각국의 대금업 실태
- ㉣ 개정 대금업법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필요성 유무
- ㉤ 기타

(3) 검토 결과

프로젝트팀 산하에 설치된 3명의 정무관으로 구성된 ‘사무국회의’를 통하여 폭 넓은 층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다음 2가지가 도출되었다.

- ㉠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개정된 대금업법은 법에 규정된 기한인 2010년 6월 18일까지 완전 시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절하다.
- ㉡ 개정 대금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10개의 항목(도표 2-1참조)으로 구성된 방안을 중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follow-up)팀 설치

(1) 설치 경위

2010년 6월 18일 개정 대금업법 완전 시행을 계기로 개정 대금업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을 대신하여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이 설치되었다.

(2) 주된 검토 내용

- ㉠ 개정 대금업법과 관련된 제도의 주지 철저
- ㉡ 개정 대금업법의 시행 상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 파악
- ㉢ 개정 대금업법과 관련된 제도의 폴로업 · 점검

(3)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이 실시한 관계자 공청회 실시 현황

2011년 3월말 현재,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 관계자 공청회는 제1회(2010년 9월 9일)부터 제4회(2010년 12월 21일)까지 실시되었다.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 관계자 공청회의 의제와 공청회 참가자는 도표 2-2와 같다.

도표 2-1 10가지 항목

No.	테마	방안
1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전환대출의 추진	총량규제에 저촉이 되는 경우 단계적인 상황을 위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치(부령 개정)
2	개인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 등의 기재사항을 간소화	○ 사업계획 등에 기재할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 간단한 포맷(차입계획서)을 명시 (일본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규칙) ○ 총량규제의 예외로 규정된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대출금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상환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부령 개정)
3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소득’을 총량규제의 ‘연 소득’으로 산입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자금의 용도가 교육비 등과 같은 소비자로서의 용도일 경우에는 대출을 가능하도록 한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중 ‘안정적인 연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총량규제의 기준이 되는 ‘연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부령 개정)

No.	테마	방안
4	총량규제의 '예외'와 '적용제외' 분류의 재검토	부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 【예외에 신설】 · 사회통념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10만원 이하) · 예금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 필요한 긴급 자금 대출 【예외에서 적용 제외로 분류】 · 유가증권담보대출 · 부동산담보대출(주택(현거주지) 등을 담보로 하는 경우 제외) · 매각 예정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되는 대출 등
5	대금업체의 사무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① 완전시행 시 경과조치로 '당분간'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연소득 증명서의 '제출기한' 이 연장 (제출 의뢰일로부터 1개월→2개월) ② 지정신용정보기관을 이용한 상환능력의 정기적인 조사의무가 해제되는 경우로 '연체 및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대출정지기간' 을 추가 ③ 지정신용정보기관을 이용한 정기적인 상환능력조사가 필요한 대출 잔액기준을 변경 ④ 지방세액이 표기되어 있는 급여명세서의 경우 연소득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개월분이라도 '연소득증명서' 로 인정
6	건전한 소비자금융시장의 형성	건전한 소비자금융시장의 형성을 위해 다중채무 발생을 방지한다고 하는 개정 대금업법의 취지와 이용자 보호 등의 관점을 감안하여 은행과 신용금고 등이 소비자 대상 대출을 실시할 때에 적절한 심사와 과도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체제 정비를 요청한다. (감사지침의 개정)
7	다중채무자 등의 생활 재건·사업회생을 위한 다양한 세이프티넷의 충실·강화	①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 의 강화 ②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신용생활협동조합' 의 지역별 규제를 재검토하여 '다른 현에서의 활동' 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정을 실시
8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운슬링·상담의 개선·강화	○ 단기적 시책 ① 소비자청, 금융청,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일본대금업협회, 소비자단체, 피해자단체 등이 연계하여 5월-8월까지 다중채무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개정대금업법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 ② 다중채무 상담과 관련 재무국, 지방공공단체, 일본사법지원센터,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연계 강화' 를 요청 ③ 경험이 없는 상담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의 '상담매뉴얼' 제작 등 ○ 중기적 시책 ① 다중채무자가 될 위험성을 본인 스스로 체크하여 조기에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기진단시스템' 을 개발하여 금융청 등의 웹사이트에 공개 ② 상담원의 레벨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 을 작성 정기적으로 실시 ○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 다중채무자의 경제적인 회생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항목을 강화하도록 의뢰 ① 변호사·사법서사의 보수와 관련 고객에게 '사건 설명'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② '광고내용' 의 적정화 ③ 변호사·사법서사 등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자발적 대응' 촉진 등

No.	테마	방안
9	불법사금융 대책 강화	① 각 도도부현 차원에서 재무국, 지방공공단체,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등과 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최근 불법사금융의 동향 등 정보 공유화를 도모하여 신속한 경고와 단속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② 경찰·금융청 등과 같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광고 삭제' 를 검토 ③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 항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 · 경찰·금융청이 금융기관에 '계좌 동결' 을 요청 · 경찰·금융청이 불법대출 등에 대해 직접 '전화 경고' · 부정이용방지법에 의거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계약자 확인요구' ·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사범 상담매뉴얼' 의 주지를 더욱 철저 ④ 개정대금업법의 완전시행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기간' 을 설정 ⑤ 악질 등록업자에 대한 당국의 처분 철저, 경찰에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⑥ 경찰·소비자청·금융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최근 불법사금융의 수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주의 환기' 를 실시 ⑦ 금융청이 새로 제작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매뉴얼' 에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 대처방법을 기재
10	개정대금업법 등의 홍보활동	① 개정대금업법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소비자청과 협력하여 실시 ·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포스터' , '리플렛' 을 제작·배포 · '신문' 에 광고 게재 · '정부홍보' 활용 · '금융청 홈페이지' 의 개선, '인터넷' 홍보의 실시 등 ② 소비자청, 금융청, 법테라스,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일본대금업협회, 소비자단체, 피해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5월-8월까지 다중채무자 상담 실시 및 개정대금업법 홍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출처 : 금융청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 Ver.2)

도표 2-2 개정대금업법 폴로업팀 관계자 공청회 의제와 공청회 참가자

	의 제	공청회 참가자
제1회 (2010년 9월 9일)	· 멤버 소개 · 업계 단체 등 공청회 · 자유토의	·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 · NPO법인 여성자립회 · 일본변호사연합회 · 전국중소기업단체 중앙회 · 중소기업가동우회전국협의회 · 일본대금업협회 · 전국은행협회
제2회 (2010년 10월 15일)	· 멤버 소개 · 업계 단체 등 공청회 · 자유토의	· 일본대금업협회 · 일본변호사연합회 · 일본사법지원센터 · 전국신용금고협회 · 타마신용금고
제3회 (2010년 11월 26일)	· 멤버 소개 · 업계 단체 등 공청회 · 자유토의	· 전국신용조합중앙협회 · 세이와신용조합 · 전국노동금고협회 · 전국신용금고협회 · 일본사법지원센터
제4회 (2010년 12월 21일)	제1부 '개정대금업법 완전 시행 후의 현황' 1. 관계자 공청회 2. 사무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 3. 자유토의 제2부 '건전한 소비자금융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 1. 관계자 공청회 2. 자유토의	제1부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 전국상공회연합회 · 후생노동성 제2부 · 전국지방은행협회 · 서일본시티은행 · 제2지방은행협회 · 도쿠시마은행

(출처 : 금융청 개정대금업법 폴로업팀)

제3장 대금업체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결과

1. 앙케트 조사 개요

1) 대금업체의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① 조사 목적

대금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359개 대금업체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② 조사 방법

조사대상	2,359개사 2010년 5월말 기준 회원사(1,710개사) 및 2010년 8월 1일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한 등록업체 중 작년도 조사표 회수업체(=비회원사/649개사)
조사표 회수 수	1,036개사
조사방법	우편송부조사법 및 전자메일을 이용한 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30일-9월 27일
조사주체	일본대금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주식회사 히타치브레인

③ 조사분석 시 유의점

- (1) 집계표 수치 단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응답자 수'를 말하며, 각 집계표에 있는 "(n=137)" 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2) 앙케트 조사방법의 '유효 응답자수'에는 '무응답(=응답이 가능한 설문에 선택사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해당사항 없음(=분기설문이나 응답자 속성에 따라 응답이 필요 없는 응답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표본구성

(1) 유효 응답자

구 분		발송 수 ^(*)	유효 응답 수	유효 응답율 ^(*)	잔액 커버리지 ^(*)
회원사	회원사	1,710	820	48.0%	91.7%
	비회원사	649	216	33.3%	
법인·개인 구분	법인사업자	1,824	877	48.1%	
	개인사업자	535	159	29.7%	
3개 업태 구분	소비자금융업태		387		
	사업자금융업태		403		
	신용카드·신용판매 기타		218		
	알 수 없음		28		
대출 잔액 구분	5억엔 이하		512		
	5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341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57		
	5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43		
	5,000억엔 초과		14		
	알 수 없음		69		
합계		2,359	1,036	43.9%	

(*) 비회원의 3개 업태 및 대출 잔액은 응답자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3개 업태 및 대출 잔액의 발송 수·응답율은 미산출

(*) 잔액 커버리지(coverage)는 회원사만으로 했으며, 응답자의 대출 잔액을 전 회원사의 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을 산출

(2) 비회원사

구 분		발송 수	유효 응답 수	대출 잔액 (단위:억엔) ^(*)	잔액 구성비 ^(*)
법인·개인 구분	법인사업자	577	196	44,732	99.8%
	개인사업자	72	20	99	0.2%
3개 업태 구분	소비자금융업태		32	398	0.9%
	사업자금융업태		151	43,191	96.3%
	신용카드·신용판매 기타		5	1,209	2.7%
	알 수 없음		28	33	0.1%
대출 잔액 구분	5억엔 이하		77	82	0.2%
	5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41	1,383	3.1%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11	2,113	4.7%
	5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16	19,125	42.7%
	5,000억엔 초과		2	22,128	49.3%
	알 수 없음		69	-	-
합계		649	216	44,831	100.0%

(*)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각 사의 데이터 합계

(*) 유효응답자 216개사의 대출 잔액에 대한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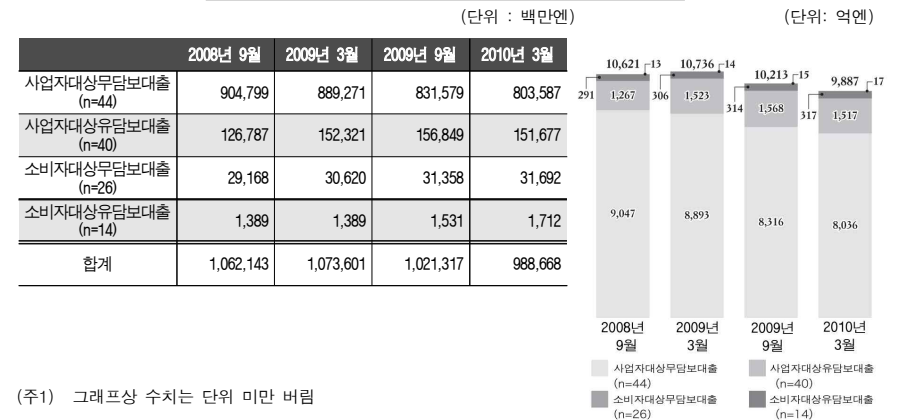
⑤ 비회원의 특성

표본 구성 중 비회원사에서 실시한 대출은 대체로 사업자대상 대출로(도표 3-1참조) 대출 금리대는 5% 미만의 금리이며(도표 3-2참조), 무담보 대출의 단가가 높은 점을 볼 때 일반사업자의 금융업을 하는 자회사 등이 실시한 그룹 내 대출 등이 잔액 구성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응답자수의 경우 대출 잔액 규모가 5억엔 이하인 소규모 대금업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함께 잔액 등에는 상당히 소규모인 업체나 영세 대금업체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전항 ④ 표본구성 비회원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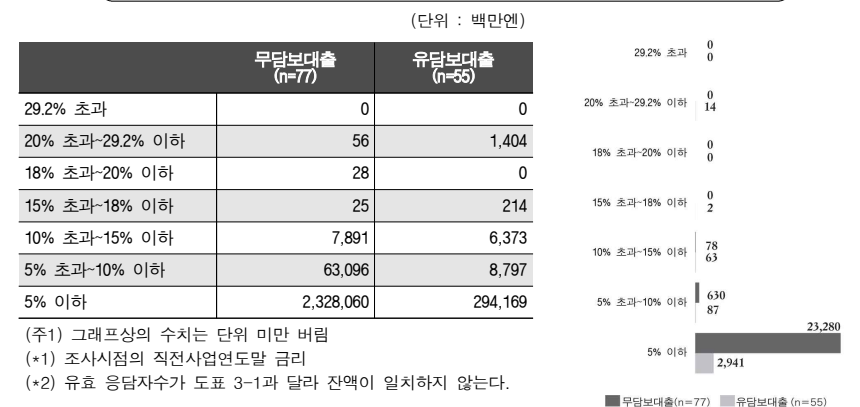
본문에 기재된 각종 분석결과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도표 3-1 (비회원사) 대출종류별 대출 잔액 추이



(주1) 그래프상 수치는 단위 미만 버림

도표 3-2 (비회원사) 사업자 대상 대출의 금리대별 대출 잔액^(*)(*)



2. 자금공급체계 현황

1) 완전 시행^(*)에 대한 대응이 대금업체의 자금 공급에 미친 영향

① 기존 채무자 중 총량규제 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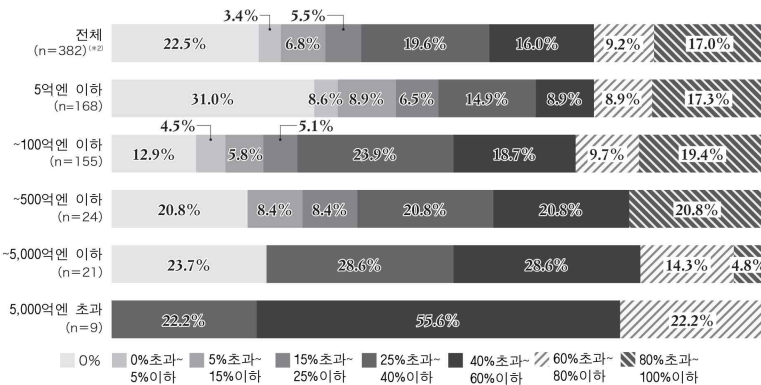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중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기존 채무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0%(총량규제 해당자 없음)라고 응답한 대금업자의 비율은 22.5%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7.5%(77.49%)의 대금업자는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이 5,000억엔이 넘는 대형사(이하 '대형 대금업자'라 한다)의 경우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60% 초과~80% 이하'가 2개사(22.2%), '40% 초과~60% 이하'가 5개사(55.6%)로 나타났다.

(*) 2006년 12월 13일,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의 도입', '대금업의 적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0일에 공포되었고 2010년 6월 18일에 출자법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 도입, 재산적 기초요건 인상(5,000만엔) 등과 같은 개정 대금업법 제4조가 시행(완전 시행)되었다.

도표 3-3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기존 채무자의 비율-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대출잔액규모별

	0%	0%초과~5%이하	5%초과~15%이하	15%초과~25%이하	25%초과~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80%이하	80%초과~100%	합계
전체 (n=382) ^{(*)2}	22.5%	3.4%	6.8%	5.5%	19.6%	16.0%	9.2%	17.0%	100.0%
5억엔 이하 (n=168)	31.0%	3.6%	8.9%	6.5%	14.9%	8.9%	8.9%	17.3%	100.0%
~100억엔 이하 (n=155)	12.9%	4.5%	5.8%	5.1%	23.9%	18.7%	9.7%	19.4%	100.0%
~500억엔 이하 (n=24)	20.8%	0.0%	8.4%	8.4%	20.8%	20.8%	0.0%	20.8%	100.0%
~5,000억엔 이하 (n=21)	23.7%	0.0%	0.0%	0.0%	28.6%	28.6%	14.3%	4.8%	100.0%
5,000억엔 초과 (n=9)	0.0%	0.0%	0.0%	0.0%	22.2%	55.6%	22.2%	0.0%	100.0%



(*)2 전체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향후 대금업체의 자금 공급 전망

① 대출 잔액의 향후 전망

대출 잔액의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경우 71.6%의 대금업체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대형 대금업체의 경우 90.9%가 대출 잔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표 3-4 각 항목의 향후 전망 -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신규신청건수(n=683)	68	222	393	683	신규신청건수(n=683)
	10.0%	32.5%	57.5%	100.0%	10.0%
신규승인건수(n=680)	19	183	478	680	신규승인건수(n=680)
	2.8%	26.9%	70.3%	100.0%	2.8%
월말대출잔액(n=691)	13	183	495	691	월말대출잔액(n=691)
	1.9%	26.5%	71.6%	100.0%	1.9%
월말대출건수(n=690)	17	182	491	690	월말대출건수(n=690)
	2.5%	26.4%	71.1%	100.0%	2.5%
평균약정금리(n=680)	5	335	340	680	평균약정금리(n=680)
	0.7%	49.3%	50.0%	100.0%	0.7%
신용보증잔액(n=688)	14	183	491	688	신용보증잔액(n=688)
	2.0%	26.6%	71.4%	100.0%	2.0%
신용보증건수(n=399)	48	237	114	399	신용보증건수(n=399)
	12.0%	59.4%	28.6%	100.0%	12.0%

증가 변화없음 감소

도표 3-5 대출 잔액의 향후 전망-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대출잔액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전체 ^{(*)1}	68	222	393	683	전체(n=691) ^{(*)1}
	10.0%	32.5%	57.5%	100.0%	1.9%
5억엔 이하	19	183	478	680	5억엔이하(n=337)
	2.8%	26.9%	70.3%	100.0%	2.1%
5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13	183	495	691	5억엔초과~100억엔이하(n=252)
	1.9%	26.5%	71.6%	100.0%	2.4%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17	182	491	69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n=40)
	2.5%	26.4%	71.1%	100.0%	20.0%
5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5	335	340	68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n=28)
	0.7%	49.3%	50.0%	100.0%	21.4%
5,000억엔 초과	14	183	491	688	5,000억엔초과(n=11)
	2.0%	26.6%	71.4%	100.0%	9.1%

증가 변화없음 감소

(*)1 전체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② 상품별 대출 잔액 비율

상품별 대출 잔액 비율을 조사한 결과 '카드론·현금서비스'가 대출 잔액의 4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품별로 대출 잔액의 향후 전망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에 해당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취급하는 대금업체의 57.4%가 향후 잔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표 3-6 상품별 대출 잔액 비율

(n=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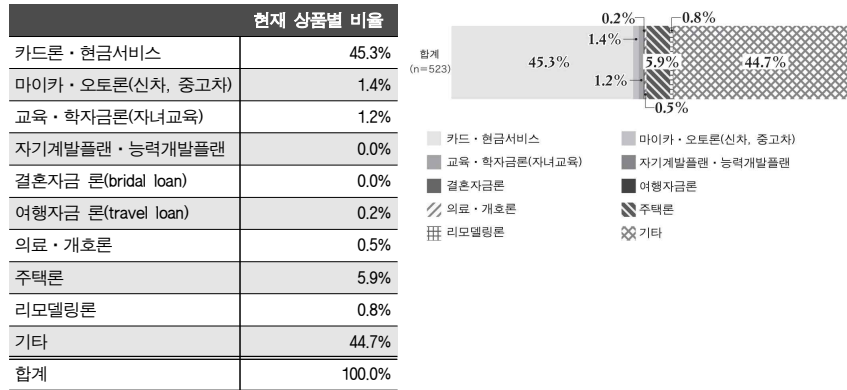


도표 3-7 상품별 향후 대출 잔액 전망

	향후 전망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카드론·현금서비스 (n=429)	4 0.9%	179 41.7%	246 57.4%	429 100.0%
마이카·오토론(신차, 중고차) (n=218)	9 4.1%	171 78.5%	38 17.4%	218 100.0%
교육·학자금론(자녀교육) (n=217)	7 3.2%	172 79.3%	38 17.5%	217 100.0%
자기계발플랜·능력개발플랜 (n=188)	1 0.5%	171 91.0%	16 8.5%	188 100.0%
결혼자금 론(bridal loan) (n=194)	0 0.0%	173 89.2%	21 10.8%	194 100.0%
여행자금 론(travel loan) (n=196)	2 1.0%	174 88.8%	20 10.2%	196 100.0%
의료·개호론 (n=200)	8 4.0%	174 87.0%	18 9.0%	200 100.0%
주택론 (n=234)	12 5.1%	183 78.2%	39 16.7%	234 100.0%
리모델링론 (n=218)	11 5.0%	174 79.9%	33 15.1%	218 100.0%
기타 (n=459)	33 7.2%	210 45.7%	216 47.1%	459 100.0%

카드론·현금서비스 (n=429)	0.9%	41.7%	57.4%
마이카·오토론(신차, 중고차) (n=218)	4.1%	78.5%	17.4%
교육·학자금론(자녀교육) (n=217)	3.2%	79.3%	17.5%
자기계발플랜·능력개발플랜 (n=188)	0.5%	91.0%	8.5%
결혼자금론 (n=194)		89.2%	10.8%
여행자금론 (n=196)	1.0%	88.8%	10.2%
의료·개호론 (n=200)	4.0%	87.0%	9.0%
주택론 (n=234)	5.1%	78.2%	16.7%
리모델링론 (n=218)	5.0%	79.9%	15.1%
기타 (n=459)	7.2%	45.7%	47.1%

■ 증가 ■ 변화없음 ■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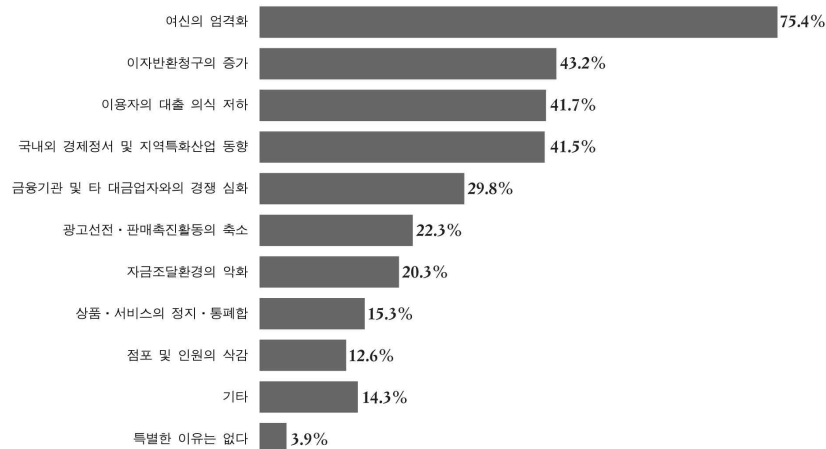
③ 대출 잔액 전망 근거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대출 잔액이 '감소할 것이다(전망)'라고 판단한 근거를 조사한 결과 '여신의 엄격화'(75.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자 반환 청구의 증가'(43.2%), '이용자의 대출 의식 저하'(41.7%), '국내외 경제정세나 지역 특화산업의 동향'(41.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도표 3-8 대출 잔액 감소 전망의 판단 근거-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복수응답)

(n=516)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응답수	응답율
여신의 엄격화	389	75.4%
이자반환 청구의 증가	223	43.2%
이용자의 대출 의식 저하	215	41.7%
국내외 경제정세 및 지역 특화산업 동향	214	41.5%
금융기관 및 타 대금업자와의 경쟁 심화	154	29.8%
광고 선전·판매촉진활동 축소	115	22.3%
자금조달환경의 악화	105	20.3%
상품·서비스의 정지·통폐합	79	15.3%
점포 및 인원의 삭감	65	12.6%
기타	74	14.3%
특별한 이유는 없다	20	3.9%
응답자수	516	-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3) 여신 태도의 변화·여신 재검토가 자금 공급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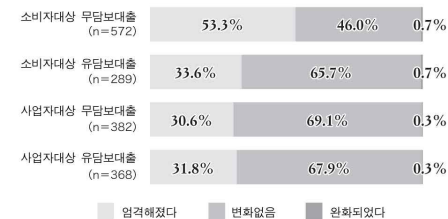
① 대금업자의 초기 심사 태도의 변화

신규 고객에 대한 여신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시점 기준 직전 1년간과 완전 시행 후의 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 직전 1년간의 경우는 대금업자의 53.3%, 완전 시행 후는 56.1%가 '엄격해 졌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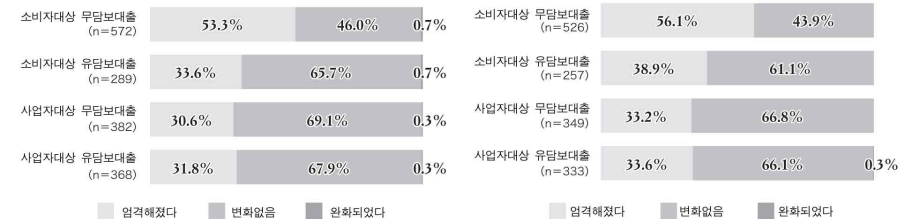
도표 3-9 조사시점 기준 직전 1년간과 완전시행 후의 초기 심사 현황

	직전 1년간 심사 현황			합계	완전 시행 후 심사 현황			합계
	엄격해졌다	변화없음	완화되었다		엄격해졌다	변화없음	완화되었다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305 53.3%	263 46.0%	4 0.7%	572 100.0%	295 56.1%	231 43.9%	0 0.0%	526 100.0%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출	97 33.6%	190 65.7%	2 0.7%	289 100.0%	100 38.9%	157 61.1%	0 0.0%	257 100.0%
사업자 대상 무담보 대출	117 30.6%	264 69.1%	1 0.3%	382 100.0%	116 33.2%	233 66.8%	0 0.0%	349 100.0%
사업자 대상 유담보 대출	117 31.8%	250 67.9%	1 0.3%	368 100.0%	112 33.6%	220 66.1%	1 0.3%	333 100.0%

■ 직전 1년간 심사 현황



■ 완전시행 후 심사 현황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부문에서 초기 심사를 엄격하게 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대금업자의 71.2%가 '상한금리의 인하 및 총량규제의 도입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43.3%가 '고객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도표 3-10 초기심사를 엄격하게 한 이유-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복수응답)

(n=358)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	
	응답수	응답율
상한금리 인하 및 총량규제 도입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었기 때문	255	71.2%
고객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였기 때문	155	43.3%
이자반환청구에 대한 부담이 커서	123	34.4%
대금업무취급주임자의 필치화, 지정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등에 대한 부담이 커서	62	17.3%
고객의 자금 수요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	58	16.2%
자금조달환경이 악화되어서	53	14.8%
기타	60	16.8%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초기 심사가 엄격하여 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금융업태의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의 '신규 대출 승인건수'를 살펴본 결과 11만 8천건(2008년 9월)에서 4만 2천건(2010년 6월)으로 64.4%가 감소했다.

도표 3-11 신규 대출 승인건수 추이-소비자금융업태-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n=174)

(단위 : 건)

	소비자금융업태
2008년 9월	118,384
2009년 3월	99,204
2009년 9월	92,099
2010년 3월	73,420
2010년 6월	42,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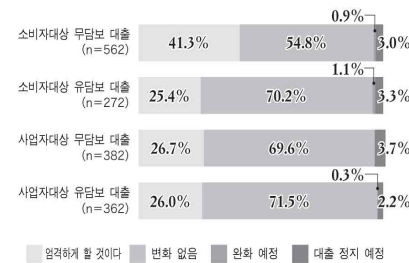
② 대금업자의 초기 심사 태도 전망

앞으로의 초기 심사 태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을 실시하는 대금업자의 41.3%가 '엄격하게 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3.0%가 '대출을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응답했다(지난번 경영실태 등 조사^(*) 결과 : '엄격하게 할 것이다' 63.0%, '대출을 정지시킬 예정'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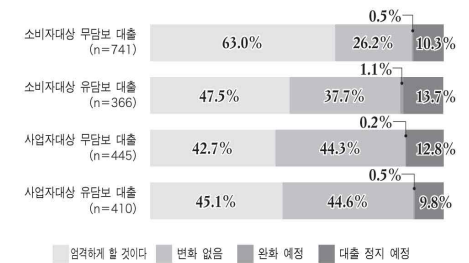
도표 3-12 초기 심사 현황의 재검토

	이번 조사 결과					지난 번 경영실태 등 조사결과 ^(*)				
	엄격하게 할 것이다	변화 없음	완화 예정	대출 정지 예정	합계	엄격하게 할 것이다	변화 없음	완화 예정	대출 정지 예정	합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232 41.3%	308 54.8%	5 0.9%	17 3.0%	562 100.0%	467 63.0%	194 26.2%	4 0.5%	76 10.3%	741 100.0%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출	69 25.4%	191 70.2%	3 1.1%	9 3.3%	272 100.0%	174 47.5%	138 37.7%	4 1.1%	50 13.7%	366 100.0%
사업자 대상 무담보 대출	102 26.7%	266 69.6%	0 0.0%	14 3.7%	382 100.0%	190 42.7%	197 44.3%	1 0.2%	57 12.8%	445 100.0%
사업자 대상 유담보 대출	94 26.0%	259 71.5%	1 0.3%	8 2.2%	362 100.0%	185 45.1%	183 44.6%	2 0.5%	40 9.8%	410 100.0%

■ 이번 조사



■ 지난 번 경영실태 등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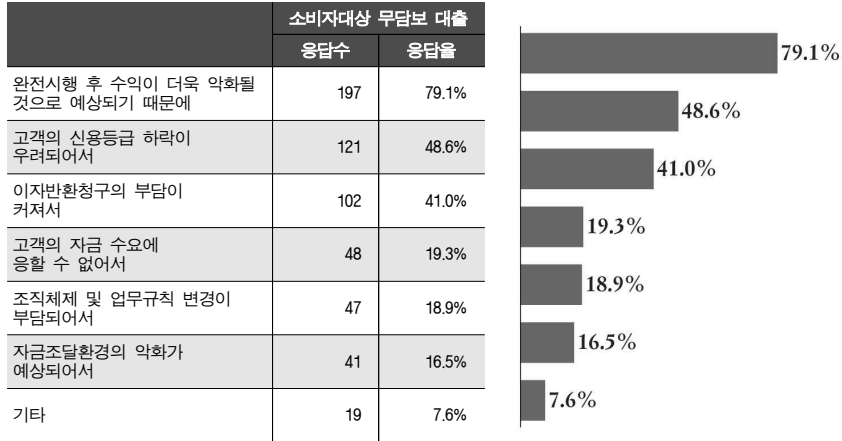


(*)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금업자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양케트 조사' 보고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 부문에서 초기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와 대출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한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대금업자의 79.1%가 '완전 시행 후 수익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라고 응답했으며, 48.6%가 '고객의 신용 등급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도표 3-13 초기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대출 정지 예정 이유-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복수응답)

(n=249)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4)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 현황

① 소비자대상 대출의 자금수요자 속성별 대출 현황

대형 대금업체의 소비자대상 대출의 자금수요자 직업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출 잔액 중 '전업주부(전업남편)'가 차지하는 대출 잔액 구성비는 4.1%이다. 한편, 월간 대출 금액(신규 대출과 추가 대출의 총액) 중 '전업주부(전업남편)'가 차지하는 대출 금액 구성비는 2.0%로 나타났다.

도표 3-14 대출 잔액과 총 대출금액의 직업별 구성비-대형 대금업체

	직업별 구성비	
	대출 잔액 (n=7)	월간 대출 금액 구성 (n=5)
공무원·비영리단체 직원	1.1%	0.3%
회사·단체의 경영자·임원	0.2%	0.8%
급여소득자(정사원)	60.0%	55.6%
자영업	12.2%	16.4%
교직원·의사·변호사 등	0.8%	0.5%
계약사원, 파견사원, 위탁사원, 파트타임·아르바이트	10.5%	9.7%
전업주부(전업남편)	4.1%	2.0%
무직·기타	11.0%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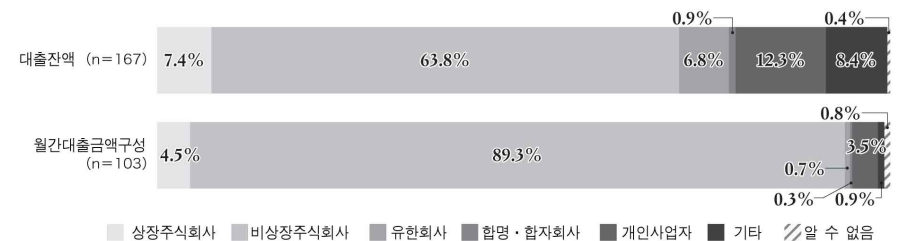


② 사업자대상 대출의 자금수요자 속성별 대출 현황

사업자금응용태의 사업자대상 대출의 회사형태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출 잔액 중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대출 잔액 구성비는 12.3%이다. 한편, 월간 총 대출금액 중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대출금액 구성비는 3.5%로 나타났다.

도표 3-15 대출 잔액과 총 대출 금액의 회사형태별 구성비-사업자금응용태

	회사형태별 구성비	
	대출 잔액 (n=167)	월간 대출 금액 구성 (n=103)
상장주식회사	7.4%	4.5%
비상장주식회사	63.8%	89.3%
유한회사	6.8%	0.7%
합명·합자회사	0.9%	0.3%
개인사업자	12.3%	3.5%
기타	8.4%	0.9%
알 수 없음	0.4%	0.8%



5) 총량규제 적용 제외 대출·예외 대출의 실시 현황

① 적용 제외 대출·예외 대출을 실시하는 대금업자 비율

총량규제의 적용 제외 대출·예외 대출의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형 대금업체(회원사)의 '배우자와 합산한 연 소득의 1/3 이하의 대출'을 취급하는 대금업자의 비율은 법령 공포 시(2006년 12월)에는 20.0%, 완전 시행 직전(2010년 6월)에는 10.0%로 감소했고, 조사 실시 시점의 경우는 9.1%까지 하락했다(회원사 전체의 경우에는 각각 11.0%, 10.6%, 12.4%로 추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금융입대 부문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대금업자의 비율은 50.6%에서 38.5%, 40.4%로 추이하고 있다.

도표 3-16 (회원사 조사) 배우자와 합산한 연 소득 1/3 이하의 대출-대형대금업자

	응답수	응답율	
조사 실시 시점 (n=11)	1	9.1%	9.1%
완전시행 직전 (2010년 6월) (n=10)	1	10.0%	10.0%
개정대금업법공포시점 (2006년 12월) (n=10)	2	20.0%	20.0%

도표 3-17 (회원사/비회원사 조사) 개인사업주에 대한 대출-사업자금융입대

	회원사		비회원사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조사 실시 시점	65	(n=161) 40.4%	9	(n=85) 10.6%
완전 시행 직전 (2010년 6월)	62	(n=161) 38.5%	9	(n=83) 10.8%
개정대금업법공포시점 (2006년 12월)	79	(n=156) 50.6%	13	(n=78) 16.7%

■ 회원사



■ 비회원사



② '배우자와 합산한 연 소득의 1/3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의 취득 현황

'배우자와 합산한 연 소득의 1/3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배우자 동의서 등의 필요 서류 취득현황을 조사한 결과 완전시행 직전의 경우 대금업자의 75.9%가 '취득율 0%~ 10% 이하'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금업자의 47.6%가 완전 시행 직전에 동의서 등의 필요 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대출을 정지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5.0%가 '향후 대출을 정지할 예정이다'라고 응답했다.

(*) 배우자 대출의 경우 다음의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 ① 배우자의 동의서 ② 주민표 등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표 3-18 완전시행 직전 (2010년 6월)의 필요 서류 취득 현황

(n=212)

	필요 서류 취득율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60%이하	60%초과~70%이하	70%초과~80%이하	80%초과~90%이하	90%초과~100%
전체	161 75.9%	5 2.4%	2 0.9%	2 0.9%	8 3.8%	1 0.5%	3 1.4%	5 2.4%	7 3.3%	18 8.5%
합계	212 100.0%									

도표 3-19 완전시행 직전 (2010년 6월)의 필요 서류 미취득 고객에 대한 대응

(n=213)

	구성비율 ^(*)
대출을 정지했다	47.6%
향후 대출을 정지할 예정이다	25.0%
서류 제출 의뢰 중	14.8%
기타 대응	12.6%
합계	100.0%

(*) 응답한 각 사의 '필요서류 미취득 고객에 대한 대응의 구성 비율'의 평균치

③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필요 서류^(*) 취득 현황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 취득율은 완전 시행 직전의 경우 대금업자의 56.5%가 '취득율 0%~10% 이하'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금업자의 27.5%가 완전 시행 직전에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대출을 정지했다'라고 응답했으며, 18.5%가 '향후 대출을 정지할 예정이다'라고 응답했다.

(*)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 실태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상환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실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① 결산서 ② 청색신고서 ③ 확정신고서 ④ 납세증명서 중 어느 하나

상환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 : ① 사업계획 ② 수지계획 ③ 자금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도표 3-20 완전시행 직전 (2010년 6월)의 필요 서류 취득 현황

(n=246)

	필요 서류 취득율										합계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60%이하	60%초과~70%이하	70%초과~80%이하	80%초과~90%이하	90%초과~100%	
전체	139	9	6	4	14	8	7	7	4	48	246
	56.5%	3.7%	2.4%	1.6%	5.7%	3.3%	2.8%	2.8%	1.6%	19.5%	100.0%

도표 3-19 완전시행 직전 (2010년 6월)의 필요 서류 미취득 고객에 대한 대응

(n=218)

	구성비율 ^(*)
대출을 정지했다	27.5%
향후 대출을 정지할 예정이다	18.5%
서류 제출 의뢰 중	34.2%
기타 대응	19.8%
합계	100.0%

(*) 응답한 각 사의 '필요서류 미취득 고객에 대한 대응의 구성 비율'의 평균치

6)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에 대한 대응 현황

① 총량규제 해당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응 현황

대금업자의 39.2%가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금수요자의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전환대출^(*)'과 관련 '취급 중' 또는 '향후 취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금업자의 46.1%가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소득을 총량규제의 '연 소득'으로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취급 중' 또는 '향후 취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1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에 따르면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지금까지의 리볼빙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을 상환기간이 길고 매월 상환 부담이 적은 한 건의 대출로 전환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대출 잔액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져 단계적인 상환을 위한 전환대출을 총량규제의 예외로 하고 있다.

(*)2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중 '안정적인 연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총량규제의 기준이 되는 '연 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었다.

도표 3-22 총량규제 해당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응 현황

	취급 중	향후 취급할 예정	취급 예정 없음	모르겠음	합계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금수요자의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환대출의 추진	207	128	318	202	855
	24.2%	15.0%	37.2%	23.6%	100.0%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소득을 총량규제의 '연소득'으로 산입	248	133	259	188	828
	30.0%	16.1%	31.2%	22.7%	100.0%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의 대출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환대출의 추진
(n=855)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소득'을 총량규제위 '연소득'으로 산입
(n=828)



■ 취급 중 ■ 향후 취급할 예정 ■ 취급 예정 없음 ■ 모르겠음

3. 대금업체의 경영 현황과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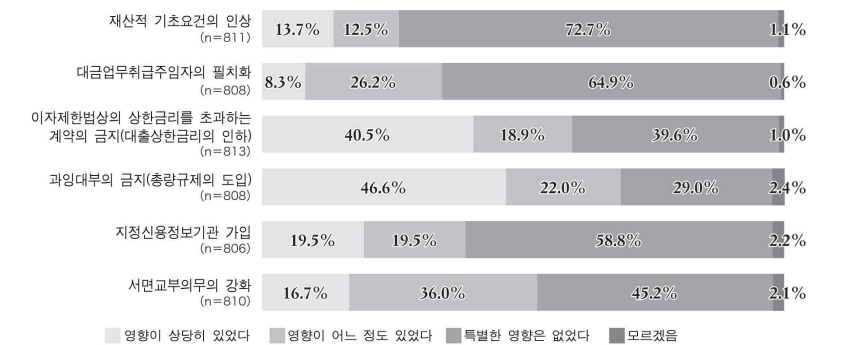
1) 완전 시행에 대한 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비용 구조

① 완전 시행에 대한 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완전 시행에 대한 대응이 최근 1년간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을 많이 받은 항목으로는 ‘과잉대부 금지(총량규제의 도입)’라고 응답한 대금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응답한 자를 합하여 68.6%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의 금지(대출 상한금리의 인하)’에 대해서는 59.4%가 ‘서면 교부 의무의 강화’에 대해서는 52.7%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3-23 (회원사 조사) 완전시행에 대한 대응이 최근 1년간 사업에 미친 영향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	모르겠음	합계
재산적 기초 요건의 인상	111	101	590	9	811
	13.7%	12.5%	72.7%	1.1%	100.0%
대금 업무 취급주임자의 필치화	67	212	524	5	808
	8.3%	26.2%	64.9%	0.6%	100.0%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의 금지(대출 상한금리의 인하)	329	154	322	8	813
	40.5%	18.9%	39.6%	1.0%	100.0%
과잉대부의 금지(총량규제의 도입)	377	178	234	19	808
	46.6%	22.0%	29.0%	2.4%	100.0%
지정신용정보기관 가입	157	157	474	18	806
	19.5%	19.5%	58.8%	2.2%	100.0%
서면교부의무의 강화	135	292	366	17	810
	16.7%	36.0%	45.2%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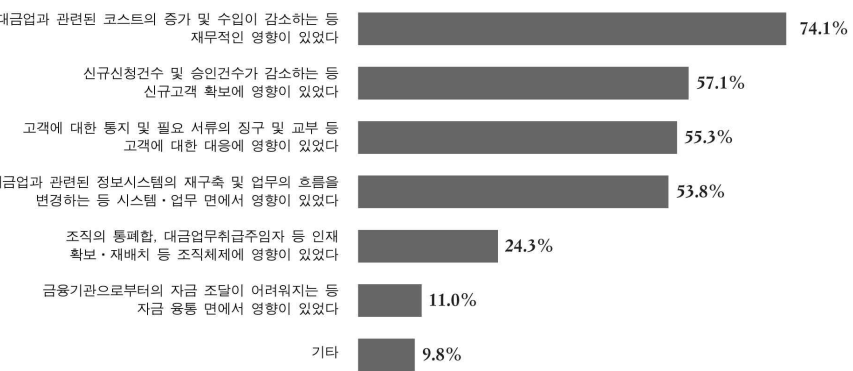


완전시행으로 인한 주된 영향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금업과 관련된 비용의 증가나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무적인 영향이 있었다”(74.1%)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신규 대출 신청 건수나 승인건수의 감소 등 신규고객 확보에 영향이 있었다”(57.1%), “고객에 대한 통지나 필요 서류의 징구 및 교부 등 고객에 대한 대응에 영향이 있었다”(55.3%), “대금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재구축 및 업무의 흐름을 변경하는 등 시스템·업무 면에서 영향이 있었다”(53.8%)란 응답이 이어졌다.

도표 3-24 (회원사 조사) 완전시행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주요 영향의 내용(복수응답)

(n=653)

	응답수	응답율
대금업과 관련된 코스트의 증가 및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무적인 영향이 있었다	484	74.1%
신규신청건수 및 승인건수가 감소하는 등 신규고객 확보에 영향이 있었다	373	57.1%
고객에 대한 통지 및 필요 서류의 징구 및 교부 등 고객에 대한 대응에 영향이 있었다	361	55.3%
대금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재구축 및 업무의 흐름을 변경하는 등 시스템·업무 면에서 영향이 있었다	351	53.8%
조직의 통폐합, 대금업무취급주임자 등의 인제 확보·재배치 등 조직체제에 영향이 있었다	159	24.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자금 유통 면에서 영향이 있었다	72	11.0%
기타	64	9.8%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②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각 수지 항목 비율

대기업체의 코스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2009년도의 영업대출금 잔액(평균잔액)과 영업대출금 이자 및 대기업에서 영업비용으로 관리되는 금융비용, 대손상각비용, 기타 판매관리비, 이자 반환비용(이자 반환금)을 조사하여 '영업대출금 이자의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비율', '영업비용 총액(이자 반환 비용 포함)의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비율'의 추이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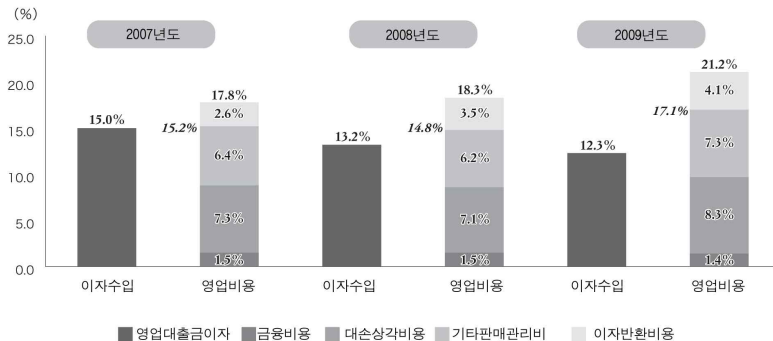
'영업대출금 이자의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비율'은 2007년도가 15.0%, 2009년도가 12.3%로 하락한 반면 영업비용 총액(이자 반환 비용 포함)의 비율은 17.8%에서 21.2%로 증가하였다.

'이자 반환 비용을 제외한 영업비용의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비율'의 경우 판매관리비의 삭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2007년도가 15.2%, 2009년도가 17.1%로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 영업대출금 이자의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비율을 웃돌고 있다.

도표 3-25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각 수지항목 비율

(n=259)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금액 (백만원)	비율	금액 (백만원)	비율	금액 (백만원)	비율
영업대출금잔액		13,228,657	-	12,228,168	-	10,706,360	-
이자수입	영업대출금이자	1,989,621	15.0%	1,616,003	13.2%	1,314,867	12.3%
영업비용	금융비용	204,626	1.5%	182,601	1.5%	154,586	1.4%
	대손상각비용	965,077	7.3%	872,877	7.1%	891,711	8.3%
	기타판매관리비	846,373	6.4%	756,496	6.2%	783,681	7.3%
	이자반환비용	341,193	2.6%	422,874	3.5%	435,322	4.1%
	합계	2,357,269	17.8%	2,234,848	18.3%	2,265,300	21.2%
	합계(이자반환비용제외)	2,016,076	15.2%	1,811,974	14.8%	1,829,978	17.1%



③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현황

대기업체의 자금 조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의 '차입 가능 금액'의 경우 13.6%가 '큰 폭으로 감소'라고 응답하였으며, 11.6%가 '약간 감소'라고 응답한데 비해 4.1%가 '큰 폭으로 증가'라고 응답하였으며, 4.1%가 '약간 증가'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30.2%가 '차입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 '약간 감소'라고 응답했으며, 33.7%가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엄격해질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3-26 최근 1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현황

(n=559)

	차입가능금액(차입한도)					
	큰 폭으로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큰 폭으로 증가	합계
전체	76 13.6%	65 11.6%	372 66.6%	23 4.1%	23 4.1%	559 100%

■ 최근 1년간 차입가능금액(차입한도)



도표 3-27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전망

(n=457)

	향후 차입가능금액(차입한도) 전망					
	큰 폭으로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큰 폭으로 증가	합계
전체	67 14.7%	71 15.5%	300 65.7%	12 2.6%	7 1.5%	457 100.0%

■ 향후 차입가능금액(차입한도) 전망



(n=457)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전망			
	엄격해질 것이다	변화 없음	완화될 것이다	합계
전체	154	290	13	457
	33.7%	63.5%	2.8%	100.0%

■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전망



2) 이자 반환 청구에 대한 대응 현황

① 이자 반환 청구의 실태와 전망

2007년도 이후 이자반환금과 이자 반환 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의 합계액은 2007년도에 약 8천억엔, 2008년도에 약 1조엔, 2009년도에 약 1조1천억엔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이자 반환 총당금 잔액은 약 2조엔에서 약 1조 6천억엔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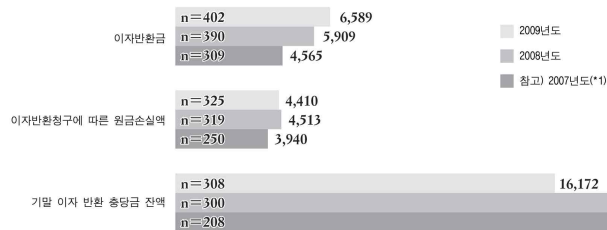
또한 이자 반환 청구로 인한 영향은 과거 3년간 이자 반환금과 원금손실액 합계액이 약 3조엔으로 나타나 2009년도 기말 이자 반환 총당금 잔액 약 1조 6천억엔을 더하면 약 4조6천억엔 규모에 이른다.

도표 3-28 이자반환금, 이자 반환 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및 총당금 잔액 추이

(단위: 백만엔)

	참고) 2007년도(*1)		2008년도		2009년도	
이자반환금	456,512	(n=309)	590,998	(n=390)	658,947	(n=402)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394,034	(n=250)	451,384	(n=319)	441,065	(n=325)
기말이자반환총당금잔액	2,064,913	(n=208)	1,927,331	(n=300)	1,617,247	(n=308)

(단위: 억엔)



(주1) 그래프상의 수치는 단위 미만 버림

(*1) 2007년도는 2009년 10월에 공표한 '대금업자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참조

또한 이자 반환 관련 코스트의 각 항목의 향후 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금업체의 40%이상은 이자반환금 및 원금손실액이 본 훼손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표 3-29 이자반환금, 이자 반환 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및 총당금 잔액 전망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이자반환금	209	182	62	453
	46.1%	40.2%	13.7%	100.0%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179	177	59	415
	43.1%	42.7%	14.2%	100.0%
기말이자반환총당금잔액	131	184	66	381
	34.4%	48.3%	17.3%	100.0%

② 이자 반환 청구의 채무자 구분

이자 반환 청구자의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채무자가 청구한 시점의 채무자 구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원채무의 상황이 연체되어 있는 '연체고객'의 청구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 대금업체와의 거래가 종료된 '완제·잔액이 없는 고객'의 청구도 28.2%로 나타나 지난 번 경영 실태 조사 시의 24.0%(*1)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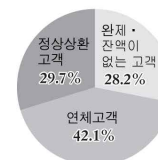
더욱이 향후 전망의 경우 '연체고객'나 '정상 상환 고객'의 청구 증가(각각 35.3%, 39.1%) 보다 '완제·잔액이 없는 고객'의 청구 증가가 50.4%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표 3-30 이자 반환 청구 시의 채무자 구분

	인원구성비(*2) (n=408)	향후 전망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완제·잔액이 없는 고객	28.2%	204	175	26	405
		50.4%	43.2%	6.4%	100.0%
연체고객	42.1%	147	221	48	416
		35.3%	53.2%	11.5%	100.0%
정상 상환 고객	29.7%	145	186	40	371
		39.1%	50.1%	10.8%	100.0%

■ 인원수 구성비

(n=408)



■ 향후 전망



도표 3-31 (지난번 경영실태 조사^(*)) 이자 반환 청구 시의 채무자 구분

	인원구성비 ^(*) (n=485)	향후 전망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완제·잔액이 없는 고객	24.0%	294	133	20	447
		65.8%	29.8%	4.5%	100.0%
연체자	45.9%	233	206	38	477
		48.8%	43.2%	8.0%	100.0%
정상 상환자	30.1%	236	162	38	436
		54.1%	37.2%	8.7%	100.0%

■ 인원수 구성비

(n=485)



■ 향후 전망

(*) 2009년 10월에 공표한 '대금업자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참조

(*) 408개사와 485개사 각각의 응답을 토대로 평균치를 산출한 수치

3) 대금업체의 점포 현황

① 점포 수 추이

2008년도 말부터 조사시점 기준 직전 월말까지의 점포수를 조사한 결과 유인 점포는 3,455 개소(2008년도 말)에서 2,550개소(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로 26.2% 감소했으며, 무인 점포는 8,102개소에서 6,872개소로 15.2% 감소했다.(점포수 전체적으로는 18.5% 감소)

도표 3-32 2008년도 말부터 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까지의 점포수 증감치

(n=907)

(단위: 개소)

	유인점포수	무인점포수	점포수 합계
조사시점 기준 직전월말	2,550	6,872	9,422
2008년도 말	3,455	8,102	11,557

② 향후 점포 증감 전망

대형 대금업체의 유인 점포와 무인 점포의 향후 전망에 대해 도도부현별로 조사한 결과 ^(*), '유인 점포'의 경우 43.7%, '무인 점포'의 경우 60.0%의 비율로 '감소/철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도도부현별 증감 전망을 단순 합계하여 '전국 기준'으로 산출

도표 3-33 향후 점포수 증감 전망-대형 대금업체

	향후 전망				
	증가	변화 없음	감소	철수	합계
유인 점포 (n=8)	0	189	66	81	336
	0.0%	56.3%	19.6%	24.1%	100.0%
무인 점포 (n=5)	6	88	94	47	235
	2.6%	37.4%	40.0%	20.0%	100.0%

③ 종업원 수 증감 현황

2008년도 말부터 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까지의 종업원 수 증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종업원 수는 70,746명(2008년도 말)에서 65,938명(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으로 6.8%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종업원 수는 28,348명에서 24,551명으로 13.4% 감소했다.

도표 3-34 2008년도 말부터 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까지의 종업원 수

(단위: 명)

	종업원 수	
	2008년도 말	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
본사·본부·영업점에 배치된 정규직 종업원 (n=905)	70,746	65,938
비정규직 (파견사원·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n=355)	28,348	24,551

도표 3-35 대출 잔액별 종업원 수 증감 전망

	본사·본부에 배치된 정규직				영업점에 배치된 정규직				비정규직(파견·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증원	변화 없음	감원	합계	증원	변화 없음	감원	합계	증원	변화 없음	감원	합계
전체(*2)	47	796	137	980	14	465	52	531	31	549	93	673
	4.8%	81.2%	14.0%	100.0%	2.6%	87.6%	9.8%	100.0%	4.6%	81.6%	13.8%	100.0%
5억엔 이하	14	425	44	483	4	228	12	244	7	261	18	286
	2.9%	88.0%	9.1%	100.0%	1.6%	93.5%	4.9%	100.0%	2.4%	91.3%	6.3%	100.0%
5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19	249	62	330	5	160	24	189	14	204	43	261
	5.8%	75.4%	18.8%	100.0%	2.6%	84.7%	12.7%	100.0%	5.4%	78.1%	16.5%	100.0%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7	35	13	55	3	26	8	37	5	30	14	49
	12.7%	63.7%	23.6%	100.0%	8.1%	70.3%	21.6%	100.0%	10.2%	61.2%	28.6%	100.0%
5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1	28	8	37	2	19	2	23	3	18	9	30
	2.7%	75.7%	21.6%	100.0%	8.7%	82.6%	8.7%	100.0%	10.0%	60.0%	30.0%	100.0%
5,000억엔 초과	1	6	6	13	0	6	5	11	0	5	6	11
	7.7%	46.2%	46.1%	100.0%	0.0%	54.5%	45.5%	100.0%	0.0%	45.5%	54.5%	100.0%

(*2) 전체란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4) 향후 사업 계속 현황

① 향후 사업 계속 전망

향후 대금업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향을 질의한 결과 대금업체의 73.9%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16.7%가 '사업을 계속할지 잘 모르겠다', 8.7%가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신규대출은 중지하겠다'라고 응답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한금리 인하로 수익이 악화되어서'(66.4%), '총량규제 도입으로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55.7%), '고객의 신용이 하락해서'(37.4%), '이자 반환 청구에 대한 부담이 커서'(36.6%),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어서'(26.0%)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 3-36 향후 사업 계속 전망 (복수응답)

(n=1,027)

	응답수	응답율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759	73.9%
사업을 계속할지 잘 모르겠다	171	16.7%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신규대출은 중지하겠다	89	8.7%
폐업하겠다(예정이다)	40	3.9%
사업 계속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17	1.7%
기타	28	2.7%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도표 3-37 사업 계속 곤란 및 신규 대출 중지 이유 (복수응답)

(n=131)

	응답수	응답율
상한금리 인하로 수익이 악화되어서	87	66.4%
총량규제 도입으로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73	55.7%
고객의 신용이 하락해서	49	37.4%
이자반환청구에 대한 부담이 커서	48	36.6%
자금조달환경이 악화되어서	34	26.0%
재산적 기초조건에 대한 대응 유지가 곤란해서	27	20.6%
후계자가 부족해서	18	13.7%
대금업무취급주임자의 필치화에 대한 대응 유지가 곤란해서	1	0.8%
기타	43	32.8%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② 폐업 신청 예정 시기

폐업 등 예정 시기를 조사한 결과 폐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대금업체의 46.7%가 1년 이내(2011년 6월까지)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 채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금업체의 49.5%가 '폐업할 때까지 가능한 기존 채권의 회수를 도모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3-38 폐업 등 신청 예정 시기

(n=47)

	응답수	응답율
2010년 중(2010년 12월 31일까지)	9	19.1%
2010년도 내(2010년 3월 31일까지)	4	8.5%
2011년 6월경까지	9	19.1%
2012년 6월경까지	7	14.9%
2013년 6월경까지	2	4.3%
2013년 6월 이후 (장래)	6	12.8%
잘 모르겠다(검토하지 않았다)	10	21.3%
합계	47	100.0%



도표 3-39 기존 채권에 대한 대응(복수응답)

(n=95)

	응답수	응답율
폐업할 때까지 가능한 기존 채권의 회수를 도모하겠다	47	49.5%
기존 채권의 양도를 검토하고 있다	12	12.6%
폐업 후 기존 채권의 회수만 계속하겠다	42	44.2%
기존 채권의 취급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22	23.2%
기타	5	5.3%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4. 자금수요자 등에 대한 상담·조언 대응 현황

1) 자금수요자에 대한 상담·조언 대응 현황

① 유인 점포에서의 상담·조언 대응 현황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상담·조언’에 대해서는 대금업체(회원사)의 68.3%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 10.5%가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3-40 (회원사조사) 유인점포에서의 상담·조언 대응 현황

	상담·조언 대응 현황				
	이미 실시하고 있다	실시할 예정이다	실시할 예정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합계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상담·조언 (n=762)	521 68.3%	80 10.5%	117 15.4%	44 5.8%	762 100.0%
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조언 (n=632)	219 34.7%	20 3.2%	336 53.1%	57 9.0%	632 100.0%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질문 접수 (n=626)	75 12.0%	13 2.1%	466 74.4%	72 11.5%	626 100.0%

② 상담·조언 대응 실시 내용

상담·조언의 실시 내용 중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는 대형 대금업체의 경우는 100%, 대금업체 전체적으로는 77.6%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3-41 (회원사조사)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상담’ 실시 현황-대출잔액 규모별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상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실시할 예정이다	실시할 예정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합계
전체 (n=725)	563 77.6%	71 9.8%	63 8.7%	28 3.9%	725 100.0%
5억엔 이하 (n=371)	258 69.6%	53 14.3%	45 12.1%	15 4.0%	371 100.0%
5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n=275)	231 84.0%	17 6.2%	14 5.1%	13 4.7%	275 100.0%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n=42)	40 95.2%	1 2.4%	1 2.4%	0 0.0%	42 100.0%
5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n=26)	23 88.5%	0 0.0%	3 11.5%	0 0.0%	26 100.0%
5,000억엔 초과 (n=11)	11 100.0%	0 0.0%	0 0.0%	0 0.0%	11 100.0%

③ 상담·조언 실시상의 과제

향후 상담·조언을 추진할 경우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 ‘상담원의 능력 향상’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원 자질의 표준화(매뉴얼 정비 등)’(51.1%), ‘일본대금업협회와의 연계 체제의 구축·강화’(46.9%) 등이 이어졌다.

도표 3-42 (회원사조사) 상담·조언을 추진할 경우의 과제(복수응답)

(n=638)

	응답수	응답율
상담원 능력 향상	417	65.4%
상담원의 자질 표준화(매뉴얼정비 등)	326	51.1%
일본대금업협회와의 연계체제의 구축·강화	299	46.9%
상담원 확보	238	37.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체제의 구축·강화	157	24.6%
변호사회 및 국민생활센터 등과의 연계체제의 구축·강화	155	24.3%
상담·조언에 관한 서비스를 고객에 PR	149	23.4%
상담·조언을 실시하는 채널의 정비(점포, 콜센터 등)	133	20.8%
기타	23	3.6%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5. 본장 요약

1) 자금공급체제 현황

① 대출 잔액의 향후 전망

- (1) 대출 잔액의 향후 전망에서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경우 대금업체의 72%가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대출 잔액 5,000억엔을 넘는 대형 대금업체의 91%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 소비자 대상 대출 상품별 대출 잔액 비율은 카드로 · 현금서비스(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카드로 · 현금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 대금업체의 57%가 향후 잔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3) 대출 잔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로는 ‘여신의 엄격화’가 가장 많았으며(75%), ‘이자 반환 청구의 계속적인 증가’(4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② 여신 태도의 변화 · 여신 재검토가 자금 공급에 미치는 영향

- (1) 신규 대출 신청에 대한 초기 심사 태도 조사(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경우 대금업체의 53%가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엄격하게 했다고 응답했으며, 56%가 완전 시행 후에도 56%가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상한금리의 인하 및 총량규제의 도입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어서’(71%)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 (2) 소비자금융입대 중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신규 승인건수’는 11만 8천건(2008년 9월)에서 4만 2천건(2010년 6월)으로 감소했다.
- (3) 향후의 초기 심사 태도의 경우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을 실시하는 대금업체의 41%가 ‘엄격하게 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3%가 ‘대출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③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 현황

- (1) 대형 대금업체의 소비자 대상 대출 가운데 자금 수요자의 직업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출 잔액에서 ‘전업주부(전업남편)’가 차지하는 대출 잔액 구성비는 4%이다. 한편 월간 총 대출 금액(신규 대출과 추가 대출의 총액)에서 ‘전업주부(전업남편)’가 차지하는 대출 금액 구성비의 경우는 2%로 나타났다.
- (2) 마찬가지로 사업자금융입대 중 회사 형태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출 잔액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대출 금액 구성비는 12%이다. 한편 월간 총 대출 금액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대출 금액 구성비의 경우는 4%로 나타났다.
- (3) ‘배우자와 합산한 연 소득의 1/3 이하의 대출’의 경우 대금업체의 48%가 완전 시행 직전에 배우자의 동의서 등과 같은 필요 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고객에게 ‘대출을 중지했다’라고 응답했다.

④ 총량규제 해당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대응 현황

- (1) 대금업체의 39%가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금 수요자의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전환대출^(*)’을 ‘이미 취급 중’, ‘향후 취급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 (2) 대금업체의 46%가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소득을 총량규제의 연 소득으로 산입하도록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취급 중’, ‘향후, 취급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2) 대금업체의 경영 현황

① 완전 시행 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1) 완전 시행에 대한 대응이 조사 시점 기준 직전 1년간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대금업체(회원사)의 69%가 ‘과잉 대부 금지(총량규제의 도입)’, 59%가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의 금지(대출 상한금리의 인하)’로 답해 ‘영향이 있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사업에 미친 영향의 주된 내용(복수회답)으로는 재무적인 영향(74%)과 신규 고객 확보에 영향(57%) 등이 있었다.
- (2) 2007년도부터 2009년도의 수지 항목의 영업대출금 잔액 대비 비율의 경우 영업대출금 이자가 15.0%에서 12.3%로 하락한 반면 영업비용 총액(이자 반환 비용 포함)의 비율은 17.8%에서 21.2%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자 반환 비용을 제외한 영업비용의 비율은 15.2%에서 17.1%로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 영업대출금 이자의 비율을 넘어서었다.
- (3) 자금 조달 현황에 관한 조사의 경우 대금업체의 25%가 조사 시점 기준 직전 1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가능 금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해서는 30%가 차입 가능 금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4%가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엄격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 이자 반환 청구에 대한 대응 현황

- (1) 2007년도 이후 이자 반환금과 이자 반환 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의 합계액은 2007년도가 약 8천억엔, 2008년도가 약 1조엔, 2009년도가 약 1조 1천억엔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최근 이자반환총당금 잔액은 약 2조엔에서 약 1조 6천억엔으로 감소했다.
- (2) 이자 반환 청구로 인한 영향의 경우 과거 3년간 이자 반환금과 원금손실액 합계가 약 3조엔이었는데, 2009년도 기말 이자 반환 총당금 잔액 약 1조 6천억엔을 더하면 약 4조 6천억엔 규모에 달한다.
- (3) 이자 반환 청구자의 청구 시점 기준 채무자 구분 조사의 경우 ‘연체 고객’이 가장 많은 42%를 차지했는데 ‘완제 · 잔액이 없는 고객’의 경우도 28%로 나타나 지난 번 경영실태조사(24%)^(*)를 넘어섰다. 향후 대금업체의 50%가 ‘완제 · 잔액이 없는 고객’의 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③ 점포 · 종업원 수 현황

- (1) 2008년도 말부터 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까지의 점포수를 조사한 결과 유인 점포는 3,455개소(2008년도 말)에서 2,550개소(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로 26% 감소

- 했으며, 무인 점포는 8,102개소에서 6,872개소로 15% 감소했다.(점포 전체적으로는 19% 감소)
- (2) 점포수의 향후 전망의 경우 대형 대금업체의 44%가 '유인 점포'를, 60%가 '무인 점포'를 '감소/철수'하겠다고 응답했다.
- (3) 2008년도 말부터 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까지의 종업원 증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종업원 수는 70,746명(2008년도 말)에서 65,938명(조사 시점 기준 직전 월말)으로 6.8% 감소했으며, 비정규직 종업원 수는 28,348명에서 24,551명으로 13% 감소했다.

④ 향후 사업 계속 전망

- (1) 사업 계속 가능성 여부에 관한 의향에 대해 조사(복수회답)한 결과 74%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17%가 '사업을 계속할지 잘 모르겠다', 9%가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신규대출은 중지하겠다'라고 응답했다.
- (2)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지하겠다고 한 이유(복수회답)의 경우 '상한금리 인하로 수익이 악화되어서'(66%), '총량규제 도입으로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56%), '고객의 신용이 하락해서'(37%), '이자 반환 청구에 대한 부담이 커서'(37%),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어서'(26%)가 상위를 차지했다.
- (3)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금업체의 47%가 1년 이내(2011년 6월까지)에 폐업을 할 예정이었으며, 기존 채권에 대한 대응의 경우는 50%가 '폐업할 때까지 가능한 기존 채권의 회수를 도모하겠다'라고 응답했다.

3) 자금수요자 등에 대한 상담·조언 대응

① 자금수요자 등에 대한 상담·조언 대응

- (1)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상담·조언'의 경우 대금업체(회원사)의 68%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11%가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응답했다.
- (2) 상담·조언의 실시 내용 중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상담'의 경우 대형 대금업체는 100%, 대금업체 전체적으로는 78%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 배우자 대출의 경우 다음의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① 배우자의 동의서 ② 주민표 등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에 따르면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지금까지의 리볼빙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을 상환기간이 길고 매월 상환 부담이 적은 한 건의 대출로 전환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대출 잔액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져 단계적인 상환을 위한 전환대출을 총량규제의 예외로 하고 있다.

(*3)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중 '안정적인 연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총량규제의 기준이 되는 '연 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었다.

(*4) 2009년 10월에 공표한 '대금업자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참조

제4장

대금업법 완전 시행 후의 영향 및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결과

1. 대금업법 완전 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1) 앙케트 조사 개요

① 조사 목적

자금수요자의 동향 및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1)으로 인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량규제^(*2) 해당자와 전업주부(전업남편),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1) 대금업자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일부 예외적인 계약을 제외하고 총 대출 잔액이 채무자의 연 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

(*2) 2006년 12월 13일,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의 도입', '대금업의 적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0일에 공포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6월 18일에 출자법의 상한금리 인하, 총량규제 도입, 재산적 기초 요건 인상(5,000만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금업법 제4조가 시행(완전 시행)되었다.

② 조사 방법

조사대상	• 총량규제 해당자 : 1,000명^(*3) • 전업주부(전업남편) : 500명^(*4) • 개인사업자 : 500명^(*4) (*3)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이 있으면서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1,000명을 추출 (*4)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 500명과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 500명을 추출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법
조사기간	2010년 8월 26일~9월 17일
조작주체	일본대금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라쿠텐리서치주식회사

③ 조사 분석 관련 유의점

- (1)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 수'를 말하며, 각 집계표의 "(n=137)" 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 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2) 전향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인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본기설문 또는 응답자 속성 상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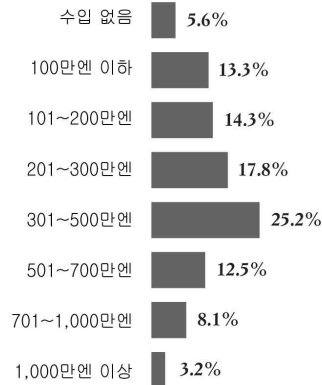
④ 표본 구성

(1) 개인 연 소득

■ 총량규제 해당자 (전업주부(전업남편), 개인사업자 제외)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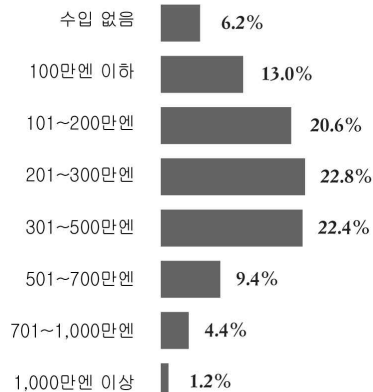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수입 없음	56	5.6%
100만엔 이하	133	13.3%
101~200만엔	143	14.3%
201~300만엔	178	17.8%
301~500만엔	252	25.2%
501~700만엔	125	12.5%
701~1,000만엔	81	8.1%
1,001만엔 이상	32	3.2%
합계	1,000	100.0%



■ 개인사업자

(n=5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수입 없음	31	6.2%
100만엔 이하	65	13.0%
101~200만엔	103	20.6%
201~300만엔	114	22.8%
301~500만엔	112	22.4%
501~700만엔	47	9.4%
701~1,000만엔	22	4.4%
1,001만엔 이상	6	1.2%
합계	500	100.0%



2) 대금업법 완전 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결과

① 총량규제 해당자 조사

(1)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일(2010년 6월 18일) 이후의 대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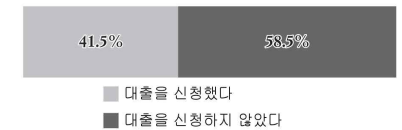
(가) 신규 대출 신청 현황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채무자(이하 '총량규제 해당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완전 시행일 이후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5%였다.

도표 4-1 총량규제 해당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신규 대출 현황

(n=1,0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대출을 신청했다	415	41.5%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585	58.5%
응답자 수	1,000	100.0%



전업주부(전업남편)을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였다.

도표 4-2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신규 대출 현황

(n=5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대출을 신청했다	172	34.4%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328	65.6%
응답자 수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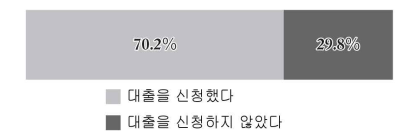
(나) 기존 대출 한도 이용 현황

총량규제 해당자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에 기존 대출 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2%,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였다.

도표 4-3 총량규제 해당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기존 대출 한도 이용 현황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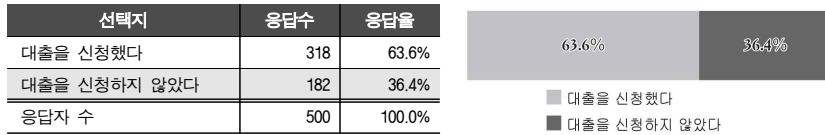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대출을 신청했다	702	70.2%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298	29.8%
응답자 수	1,000	100.0%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6월 18일 이후에 기존 대출 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6%,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4%였다.

도표 4-4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기존 대출 한도 이용 현황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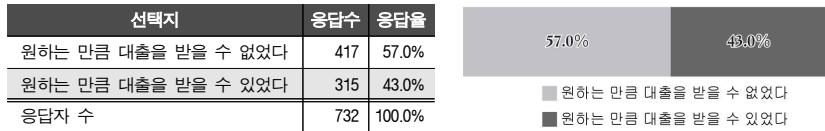


(다) 대출 결과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총량규제 해당자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결과를 확인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0%,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0%였다.

도표 4-5 총량규제 해당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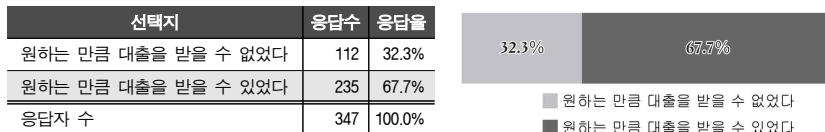
(n=732)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결과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7.7%였다.

도표 4-6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결과

(n=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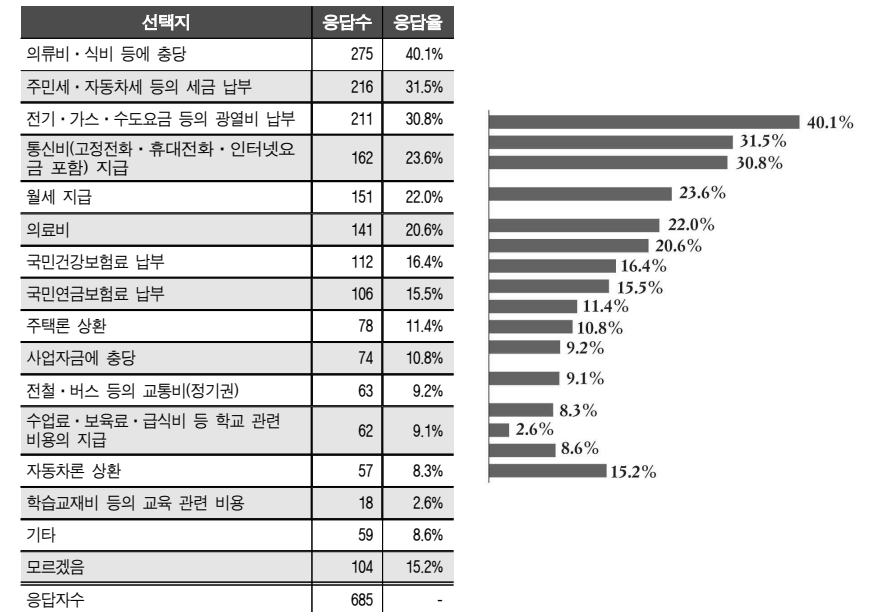
(2)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총량규제 해당자를 대상으로 곤란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류비나 식비 등에 총당’(40.1%),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과 같은 세금 납부’(31.5%)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7 총량규제 해당자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복수응답)

(n=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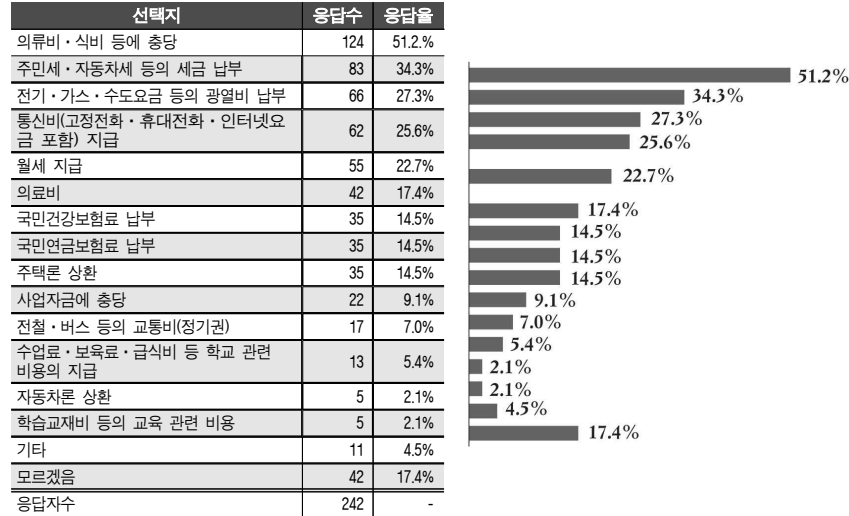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곤란했던 점을 조사한 결과 ‘의류비나 식비 등에 총당’(51.2%),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광열비 납부’(34.3%), ‘의료비’(27.3%), ‘주민세·자동차세 등과 같은 세금 납부’(25.6%), ‘통신비(고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요금 포함) 지급’(22.7%)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8 전업주부(전업남편)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복수응답)

(n=242)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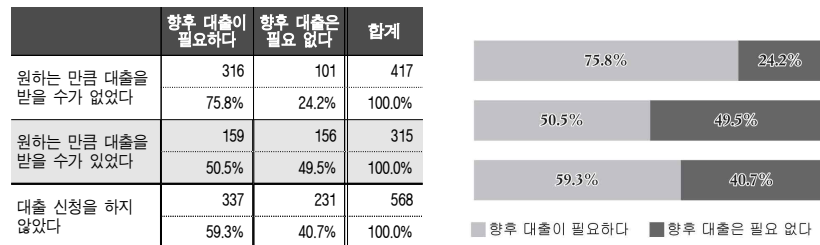
(3) 향후 대출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의 필요성

총량규제 해당자를 대상으로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자의 75.8%,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자의 50.5%,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자의 59.3%가 “향후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4-9 총량규제 해당자의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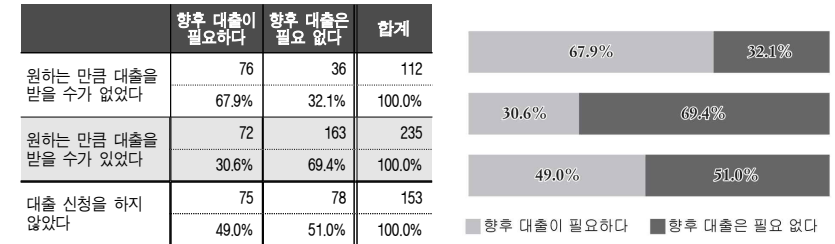
(n=1,000)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자의 67.9%,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자의 30.6%,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자의 49.0%가 “향후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4-10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 필요성

(n=500)



(4)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전환대출^(*) 이용 의향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전환대출 이용 의향

총량규제 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상환 기간은 길게 하면서 매달의 상환 부담도 적은 한 건의 대출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꼭 이용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로 나타났다.

도표 4-11 총량규제 해당자의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전환대출 이용 의향

(n=1,0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꼭 이용하고 싶다	431	43.1%
이용할 수도 있다	410	41.0%
이용하지 않겠다	87	8.7%
기타	17	1.7%
모르겠다	55	5.5%
합계	1,000	100.0%

(*)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에 따르면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지금까지의 리볼빙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을 상환기간이 길고 매월 상환 부담이 적은 한 건의 대출로 전환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대출 잔액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져 단계적인 상환을 위한 전환대출을 총량규제의 예외로 하고 있다.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상환 기간은 길게 하면서 매달의 상환 부담도 적은 한 건의 대출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꼭 이용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4.4%,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4%로 나타났다.

도표 4-12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 잔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전환대출 이용 의향

(n=5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꼭 이용하고 싶다	122	24.4%
이용할 수도 있다	201	40.2%
이용하지 않겠다	87	17.4%
기타	8	1.6%
모르겠다	82	16.4%
합계	500	100.0%

② 개인사업자 조사

(1) 개인사업자의 완전 시행일 이후 대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신규 대출 신청 현황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8%,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2%였다.

도표 4-13 개인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 현황

(n=5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대출을 신청했다	184	36.8%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316	63.2%
응답자 수	500	100.0%



(나) 기존 대출 한도 이용 현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에 기존 대출 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0%,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였다.

도표 4-14 개인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 기존 대출 한도 이용 현황

(n=5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대출을 신청했다	305	61.0%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195	39.0%
응답자 수	500	100.0%



(다) 개인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 대출 결과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결과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3%,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였다.

도표 4-15 개인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결과

(n=332)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07	62.3%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125	37.7%
응답자 수	332	100.0%



(2)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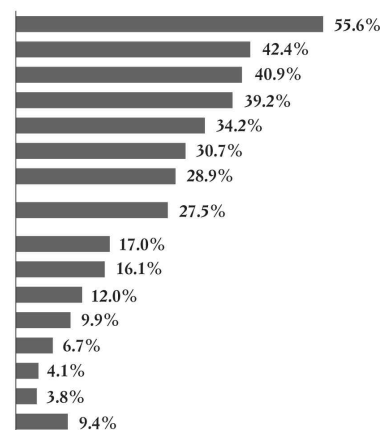
(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곤란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자금에 총당’(55.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42.4%),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세금 납부’(40.9%), ‘국민연금보험료 납부’(39.2%)가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16 개인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복수응답)

(n=375)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사업자금에 총당	190	55.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145	42.4%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세금 납부	140	40.9%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134	39.2%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광열비 납부	117	34.2%
의료비·식비에 총당	105	30.7%
월세 지급	99	28.9%
통신비(고정전화·휴대전화·인터넷요금 포함) 지급	94	27.5%
주택론 상환	58	17.0%
의료비	55	16.1%
자동차론 상환	41	12.0%
수업료·보육료·급식비 등 학교 관련 비용	34	9.9%
전철·버스 등의 교통비(정기권)	23	6.7%
학습교재비 등의 교육 관련 비용	14	4.1%
기타	13	3.8%
모르겠음	32	9.4%
응답자수 ^(주1)	342	-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 응답하지 않은 수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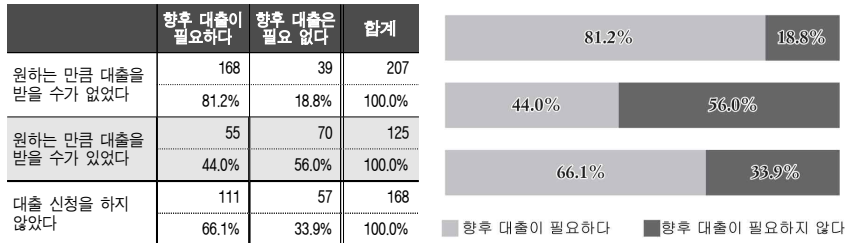
(3) 향후 대출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가)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의 필요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자의 81.2%,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자의 44.0%,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자의 66.1%가 “향후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4-17 개인사업자의 대출 현황별 향후 대출 필요성

(n=500)



2.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1) 앙케트 조사 개요

① 대출 이용자 조사

(1) 조사 목적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의 영향 및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 방법

조사대상	· 대출 이용자 : 3,000명^{(*)1} · 전업주부(전업남편) : 482명^{(*)2} · 개인사업자 : 500명^{(*)4} (*)1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이 있으면서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1,385명과 총량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1,615명을 추출 (*)2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이 있으면서 파트타임 수입을 포함한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전업남편)를 추출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법
조사기간	2010년 8월 26일~9월 17일
조해주체	일본대금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라쿠텐리서치주식회사

(3) 조사 분석 관련 유의점

- (가)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 수’를 말하며, 각 집계표의 “(n=137)” 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 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나) 전항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인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불기설문 또는 응답자 속성 상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표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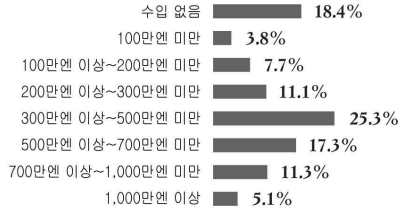
(가) 개인 연 소득

■ 대출 이용자^(*)

(n=3,482)

카테고리명	응답수	응답율
수입 없음	641	18.4%
100만원 미만	131	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67	7.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87	11.1%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81	25.3%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604	17.3%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92	11.3%
1,000만원 이상	179	5.1%
전체	3,482	100.0%

(*) 전업주부(전업남편) 482명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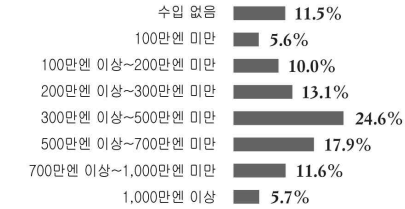


● 대출이용자 구분

■ 총량규제 해당자

(n=1,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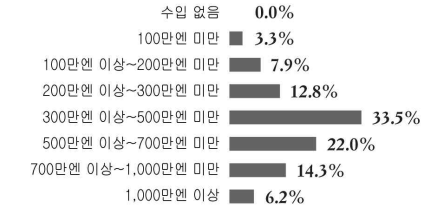
카테고리명	응답수	응답율
수입 없음	641	18.4%
100만원 미만	131	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67	7.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87	11.1%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81	25.3%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604	17.3%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92	11.3%
1,000만원 이상	179	5.1%
전체	3,482	100.0%



■ 총량규제 비해당자

(n=1,615)

카테고리명	응답수	응답율
수입 없음	641	18.4%
100만원 미만	131	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67	7.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87	11.1%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81	25.3%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604	17.3%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92	11.3%
1,000만원 이상	179	5.1%
전체	3,4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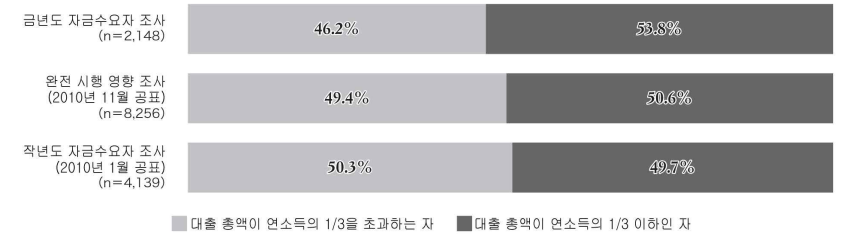
(나) 총량규제 해당자 비율

● 소비자금융회사 대출 이용자의 총량규제 해당 비율

예비조사에 응한 214,509명 중 소비자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출 총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46.2%가 연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있었으며, 이 수치는 작년도 자금수요자조사^(*) 및 완전시행 영향 조사^(*) 결과 보다 조금 하락한 수치이다.

■ 소비자금융회사 대출 이용자의 총량규제 해당 비율

선택지	금년도자금수요자조사		완전 시행 영향 조사 (2010년 11월 공표)		작년도자금수요자조사 (2010년 11월 공표)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1/3을 초과하는 자	992	46.2%	4,082	49.4%	2,080	50.3%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1/3 이하인 자	1,156	53.8%	4,174	50.6%	2,059	49.7%
합계	2,148	100.0%	8,256	100.0%	4,139	100.0%



(*) 2010년 1월에 공표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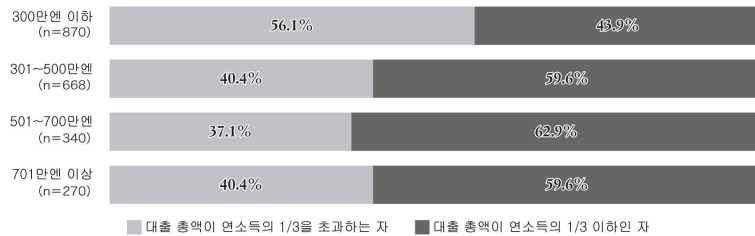
(*) 2010년 11월에 공표한 '대기업법 완전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 연소득별 총량규제 해당 비율

소비자금융회사 대출 이용자의 총량규제 해당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비율은 연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 56.1%, 연소득 301~500만원의 경우 40.4%, 연소득 501~700만원의 경우는 37.1%, 연소득 701만원 이상의 경우는 40.4%로 대체로 연소득이 적을 경우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다.

■ 소비자금융회사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별 총량규제 해당 비율

선택지	300만원 이하		301~500만원		501~700만원		701만원 이상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1/3을 초과하는 자	488	56.1%	270	40.4%	126	37.1%	109	40.4%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1/3 이하인 자	382	43.9%	398	59.6%	214	62.9%	161	59.6%
합계	870	100.0%	668	100.0%	340	100.0%	270	100.0%



② 사업자 조사

(1) 조사 목적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의 영향 및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개인사업자·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 방법

응답자수	· 개인사업자^(*) : 755명 ^(*) 현재 대금업체에서 사업성 자금(운전자금·설비자금 등)을 대출 받아 잔액이 있는 자 · 기업경영자^(*) : 351명 ^(*)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대금업자에게 사업성 자금을 대출 받은 적이 있는 자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법
조사기간	2011년 1월 21일~2월 15일
조자주체	일본대금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주식회사 NTT데이터경영연구소

(3) 조사 분석 관련 유의점

- (가)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 수’를 말하며, 각 집계표의“(n=137)” 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 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나) 전항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인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분기설문 또는 응답자 속성상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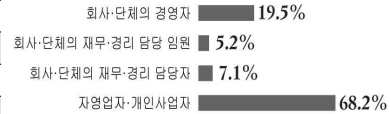
(4) 표본구성

(가) 직업

■ 개인사업자·기업경영자

(n=1,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회사·단체의 경영자	216	19.5%
회사·단체의 재무·경리 담당 임원	57	5.2%
회사·단체의 재무·경리 담당자	78	7.1%
자영업자·개인사업자	755	68.2%
전체	1,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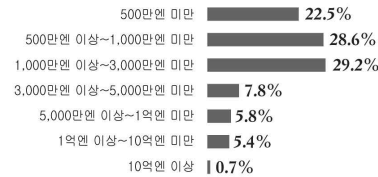


(나) 연매출액

■ 개인사업자

(n=755)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500만원 미만	170	22.5%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16	28.6%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20	2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9	7.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44	5.8%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1	5.4%
10억원 이상	5	0.7%
전체	7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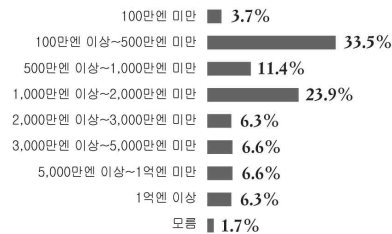


(다) 자본금

■ 회사 법인

(n=351)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100만원 미만	13	3.7%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8	33.5%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0	11.4%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84	23.9%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2	6.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3	6.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3	6.6%
1억원 이상	22	6.3%
모름	6	1.7%
전체	351	100.0%



2)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① 대출 이용자 조사

(1)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일(2010년 6월 18일) 이후의 대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대출 신청 현황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나타났다.

도표 4-18 대출 이용자의 완전시행일 이후 신청 현황

(n=3,00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대출을 신청했다	1,273	42.4%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1,727	57.6%
합계	3,000	100.0%



(나) 대출 결과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42.4%)를 대상으로 대출 결과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1)”라고 응답한 비율이 42.1%로 나타났다.

도표 4-19 대출 이용자의 완전시행일 이후 대출 결과

(n=1,273)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737	57.9%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536	42.1%
합계	1,273	100.0%



(*1) 대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대출은 받았지만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다’, ‘(원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지 않았다’, ‘대출을 거절당했다(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자

(다)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57.6%)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7.8%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에 계약한 대출 한도 이용을 포함하여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0.1%,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에서 보낸 통지나 고객센터 등에 문의한 결과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났다.

도표 4-20 대출 이용자가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n=1,464)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신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1,243	87.8%
기존에 계약한 대출 한도 이용을 포함하여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143	10.1%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에서 보낸 통지나 고객센터 등에 문의한 결과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39	2.8%
근처에 대금업체의 점포가 없어서(폐쇄)	0	0.0%
기타	39	2.8%
응답자수 ^(*)	1,416	-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1) 응답하지 않은 자 제외

(라)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이유

신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41.4%)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 대출금 상환을 포함하여 현재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81.8%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를 절약하고(생활수준 하향 조정), 지출을 억제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6.2%, '취미/오락(레저, 여행 포함)이나 도박 등의 비용을 절약하고, 지출을 억제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4.6%로 나타났다.

도표 4-21 대출 이용자가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n=1,243)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기존 대출금 상환을 포함하여 현재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17	81.8%
생활비를 절약하고(생활수준 하향 조정), 지출을 억제해서	201	16.2%
취미/오락(레저, 여행 포함)이나 도박 등의 비용을 절약하고, 지출을 억제해서	181	14.6%
은행·신용금고·신용조합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41	3.3%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빌려서	39	3.1%
보유자산(금융자산 포함)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해서	34	2.7%
대출을 받기 위한 지출을 연장해서	13	1.0%
카드깡업체를 이용해서	5	0.4%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 빌려서	0	0.0%
기타	30	2.4%
응답자수 ^(*)	1,243	-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2)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을 때 취한 행동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7.9%)를 대상으로 당시에 취한 행동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를 절약하고(현재의 생활수준을 하향 조정), 예정된 지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빌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8%, "생활비를 절약하고(현재의 생활수준을 하향조정), 대출금을 상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이어졌다.

도표 4-22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을 때 취한 행동(복수응답)

(n=53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생활비를 절약하고(현재의 생활수준을 하향조정), 예정된 지출을 하지 않았다	279	52.1%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빌렸다	149	27.8%
생활비를 절약하고(현재의 생활수준을 하향조정), 대출금을 상환했다	101	18.8%
공공요금 납부를 연기하여 자금을 마련했다	81	15.1%
새로운 일(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포함)을 시작하거나 늘렸다	69	12.9%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상담을 받았다	60	11.2%
보유자산을 매각했다	57	10.6%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48	9.0%
과불금 반환 청구를 했다	41	7.6%
은행·신용금고·신용조합 등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35	6.5%
변호사 및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법테라스 포함)에서 상담을 받았다	35	6.5%
상황이 불가능하여 자기파산·채무조정을 신청했다	28	5.2%
카드깡업체를 이용했다	28	5.2%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 빌렸다	11	2.1%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등 지방공공단체에 설치된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았다	4	0.7%
소비자청, 국민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았다	2	0.4%
기타	21	3.9%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85	15.9%
응답자수	5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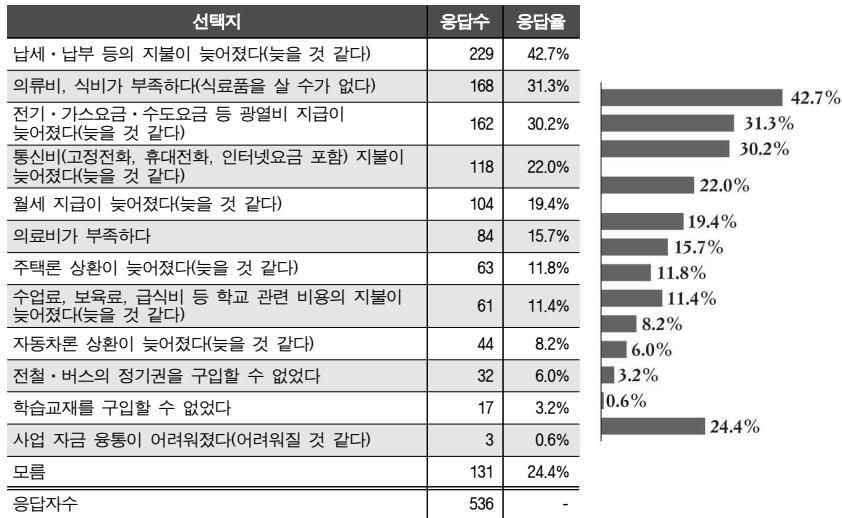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을 때 곤란했던 점

원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7.9%)를 대상으로 당시에 곤란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납세·납부 등의 지불이 지연되었다(지연될 것 같다)”(42.7%), “의류비, 식비가 부족하다(식료품을 살 수가 없다)”(31.3%)와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23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을 때 곤란했던 점(복수응답)

(n=536)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3) 대금업체에 대한 상환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상환 여력 현황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 대출금의 상환 여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소득의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70.9%)와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4.4%)란 응답을 합하여 75.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환이 곤란할 경우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13.0%)와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11.7%)를 합하여 24.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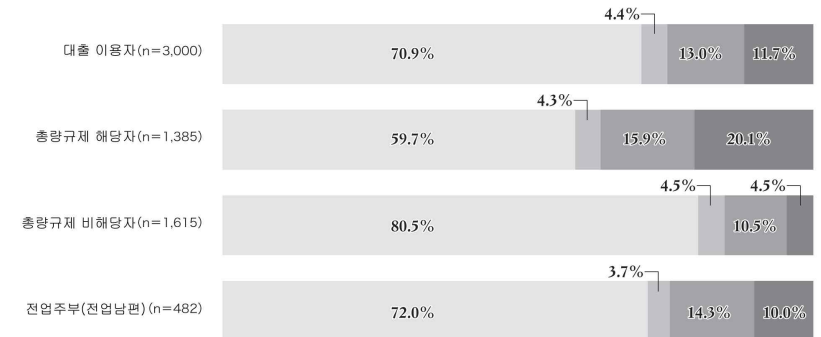
대출 이용자 중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응답자(전체의 46.2%)의 대출 상환 여력을 살펴보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소득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59.7%)와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4.3%)란 응답을 합하여 64.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환이 곤란할 경우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15.9%)와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20.1%)를 합하여 36.0%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경우에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소득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72.0%)와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3.7%)란 응답을 합하여 75.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환이 곤란할 경우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14.3%)와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10.0%)를 합하여 24.3%로 나타났다.

도표 4-24 상환 여력 현황

	현재 소득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	합계
대출 이용자 (n=3,000)	2,127	133	389	351	3,000
	70.9%	4.4%	13.0%	11.7%	100.0%
총량규제해당자 (n=1,385)	826	60	220	279	1,385
	59.7%	4.3%	15.9%	20.1%	100.0%
총량규제 비해당자 (n=1,615)	1,301	73	169	72	1,615
	80.5%	4.5%	10.5%	4.5%	100.0%
전업주부(전업남편) (n=482)	347	18	69	48	482
	72.0%	3.7%	14.3%	10.0%	100.0%



■ 현재 소득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
■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
■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
■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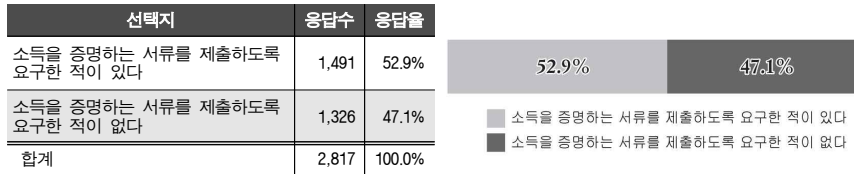
(4)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 의뢰 유무

대출 이용자(무직 제외)를 대상으로 대금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 “제출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나타났다.

도표 4-25 대출 이용자의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뢰 유무

(n=2,817)



(*)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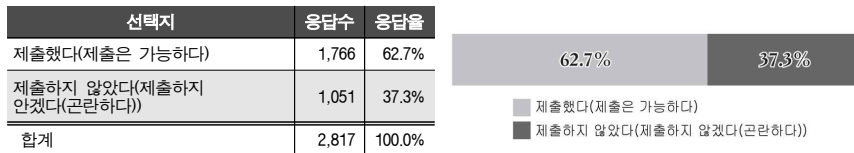
- ① 원천징수표 ② 소득증명서류 ③ 지불조서 ④ 납세통지서 ⑤ 청색신고결산서 ⑥ 확정신고서 ⑦ 수지내역서 ⑧ 연금증서 ⑨ 연금통지서 ⑩ 급여 지불명세서

(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현황

대출 이용자(무직 제외)를 대상으로 대출 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또는 제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출했다(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7%, “제출하지 않았다(제출하지 않겠다(곤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나타났다.

도표 4-26 대출 이용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현황

(n=2,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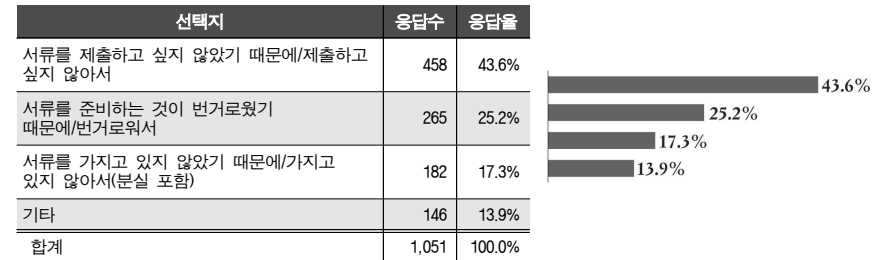


(다)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출 이용자(전체의 37.3%)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제출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높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에/번거로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5.2%로 나타났다.

도표 4-27 대출 이용자가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n=1,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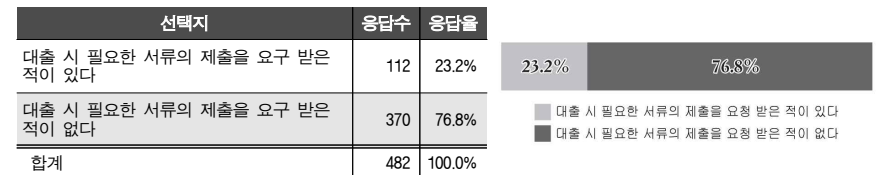


(라)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의뢰 유무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대금업체에서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2%,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6.8%로 나타났다.

도표 4-28 전업주부(전업남편)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현황

(n=482)



(*) 배우자 대출의 경우 다음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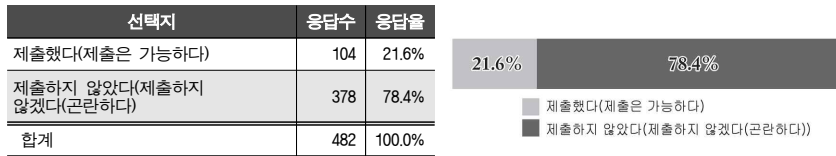
- ① 배우자 동의서 ② 주민표 등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면

(마) 전업주부(전업남편)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현황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또는 제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출했다(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6%, “제출하지 않았다(제출하지 않겠다(곤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4%로 나타났다.

도표 4-29 전업주부(전업남편)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현황

(n=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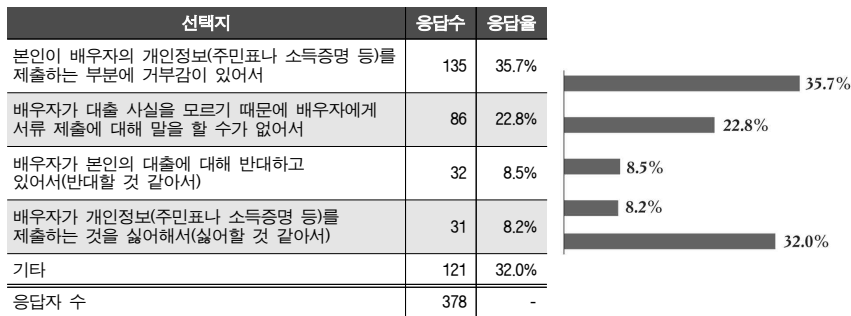


(바) 전업주부(전업남편)가 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

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전업주부(전업남편)(전업주부(전업남편) 전체의 78.4%)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이 배우자의 개인정보(주민표나 소득 증명 등)를 제출하는 부분에 거부감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많았다.

도표 4-30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n=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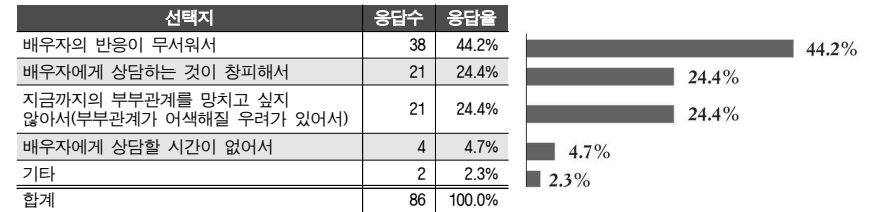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 배우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대해 상담할 수 없는 이유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 제출에 대해 상담할 수 없다고 응답한 전업주부(전업남편)(전업주부(전업남편) 전체의 17.8%)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반응이 무서워서’(44.2%), ‘배우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창피해서’(24.4%), ‘지금까지의 부부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24.4%)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31 전업주부(전업남편)가 서류 제출 관련 배우자와 상담할 수 없는 이유

(n=86)



(5)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의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의 접촉 경험 유무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의 접촉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있음)”(0.3%)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2.4%),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3.8%)를 합하여 6.5%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이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3.5%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있음)”(0%)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0.4%),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3.5%)를 합하여 3.9%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이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6.1%로 나타났다.

도표 4-32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의 접촉 경험 유무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있음)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합계
대출 이용자 (n=3,000)	8 0.3%	71 2.4%	115 3.8%	2,806 93.5%	3,000 100.0%
총량규제해당자 (n=1,385)	3 0.2%	38 2.7%	59 4.3%	1,285 92.8%	1,385 100.0%
총량규제 비해당자 (n=1,615)	5 0.3%	33 2.0%	56 3.5%	1,521 94.2%	1,615 100.0%
전업주부(전업남편) (n=482)	0 0.0%	2 0.4%	17 3.5%	463 96.1%	482 100.0%

그리고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7.9%) 중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있음)”(0.4%)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5.4%),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음)”(8.4%)를 합하여 14.2%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이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8%로 나타났다.

도표 4-33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대출 이용자의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의 접촉경험유무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있음)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합계
대출 이용자 (n=536)	2 0.4%	29 5.4%	45 8.4%	460 85.8%	536 100.0%
총량규제해당자 (n=366)	2 0.5%	20 5.5%	34 9.3%	310 84.7%	366 100.0%
총량규제 비해당자 (n=170)	0 0.0%	9 5.3%	11 6.5%	150 88.2%	170 100.0%

(나)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 이용 이유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2.7%)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53.2%)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50.6%)란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34 대출 이용자의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 이용 이유(복수응답)

(n=79)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42	53.2%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40	50.6%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인 점을 몰라서	9	11.4%
이전부터 알고 있는 업체여서	9	11.4%
기타	4	5.1%
응답자수	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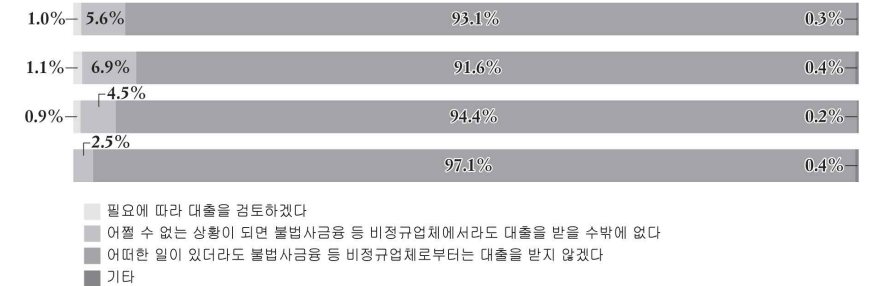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 이용 의향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3.1%,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6%, “필요에 따라 대출을 검토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로 나타났다.

도표 4-35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 이용 의향

	필요에 따라 대출을 검토하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	기타	합계
대출 이용자 (n=3,000)	29 1.0%	168 5.6%	2,794 93.1%	9 0.3%	3,000 100.0%
총량규제해당자 (n=1,385)	15 1.1%	95 6.9%	1,269 91.6%	6 0.4%	1,385 100.0%
총량규제 비해당자 (n=1,615)	14 0.9%	73 4.5%	1,525 94.4%	3 0.2%	1,615 100.0%
전업주부(전업남편) (n=482)	0 0.0%	12 2.5%	468 97.1%	2 0.4%	482 100.0%



(6)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의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카드광업체)와의 접촉 경험 유무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의 접촉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있음)”(2.3%)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2.3%),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3.2%)를 합하여 7.8%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이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2.2%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있음)”(1.7%)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1.0%),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1.7%)를 합하여 4.4%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5.6%로 나타났다.

도표 4-36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의 접촉 경험 유무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합계
대출 이용자 (n=3,000)	69	70	95	2,766	3,000
	2.3%	2.3%	3.2%	92.2%	100.0%
총량규제해당자 (n=1,385)	35	45	50	1,255	1,385
	2.5%	3.2%	3.6%	90.7%	100.0%
총량규제 비해당자 (n=1,615)	24	35	45	1,511	1,615
	1.5%	2.2%	2.8%	93.5%	100.0%
전업주부(전업남편) (n=482)	8	5	8	461	482
	1.7%	1.0%	1.7%	95.6%	100.0%

(*)1)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다시 매입을 하는 업자나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한 후 대금의 몇 %를 캐쉬백하는 하는 업자 등을 말한다. 이 밖에 현금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사의 회원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용카드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범칙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7.9%) 중에서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있음)”(6.0%)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3.7%),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5.2%)를 합하여 14.9%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1%로 나타났다.

도표 4-37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대출 이용자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 유무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합계
대출 이용자 (n=536)	32	20	28	456	536
	6.0%	3.7%	5.2%	85.1%	100.0%
총량규제해당자 (n=366)	28	13	24	301	366
	7.7%	3.6%	6.6%	82.1%	100.0%
총량규제 비해당자 (n=170)	4	7	4	155	170
	2.4%	4.1%	2.4%	91.1%	100.0%

(나)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이용 이유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4.6%)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57.6%)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30.9%)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도표 4-38 대출 이용자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한 이유(복수응답)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80	57.6%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43	30.9%
특별히 불법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29	20.9%
이전부터 알고 있는 업체라서	10	7.2%
기타	7	5.0%
응답자수	1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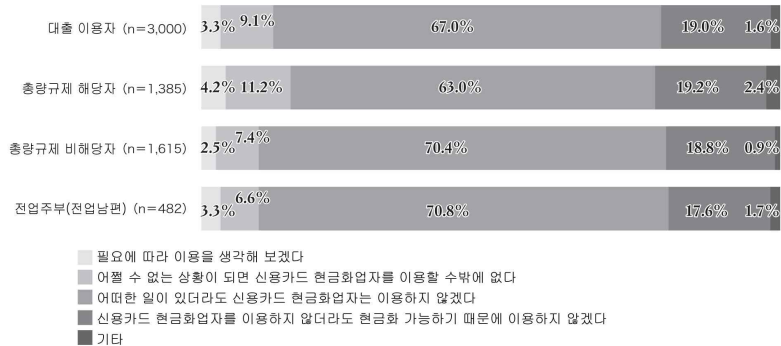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이용 의향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이용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는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7.0%,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란 응답이 9.1%, “필요에 따라 이용을 생각해 보겠다”란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도표 4-39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이용 의향

	필요에 따라 이용을 생각해 보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는 이용하지 않겠다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금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	기타	합계
대출 이용자 (n=3,000)	99 3.3%	274 9.1%	2,010 67.0%	569 19.0%	48 1.6%	3,000 100.0%
총량규제해당자 (n=1,385)	58 4.2%	155 11.2%	873 63.0%	266 19.2%	33 2.4%	1,385 100.0%
총량규제 비해당자 (n=1,615)	41 2.5%	119 7.4%	1,137 70.4%	303 18.8%	15 0.9%	1,615 100.0%
전업주부(전업남편) (n=482)	16 3.3%	32 6.6%	341 70.8%	85 17.6%	8 1.7%	4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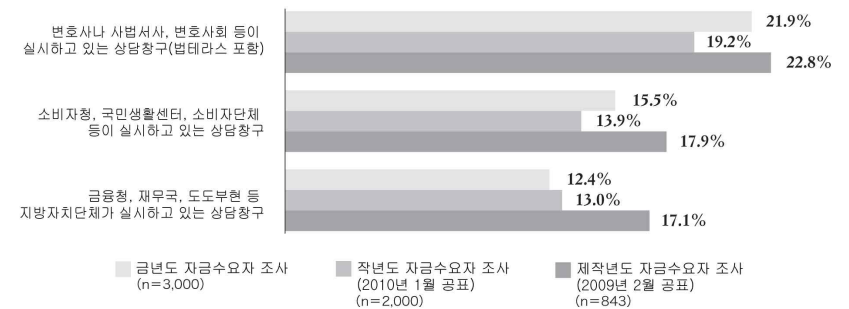
(7) 다중채무자 등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다중채무자에게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중채무자에게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각종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변호사나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 창구(법테라스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 자가 21.9%(작년도의 자금수요자 조사 대비 2.7포인트 증가)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청, 국민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가 15.5%(작년도 조사 대비 1.6포인트 증가),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가 12.4%(작년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로 그 뒤를 이었다.

도표 4-40 다중채무자에게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대출이용자)

	금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2010년 1월 공표)		제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변호사나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법테라스 포함)	658	21.9%	384	19.2%	192	22.8%
소비자청, 국민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	464	15.5%	278	13.9%	151	17.9%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	373	12.4%	260	13.0%	144	17.1%
응답자수	3,000	-	2,000	-	843	-



(*) ‘내용이나 이용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제도의 내용이나 이용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를 더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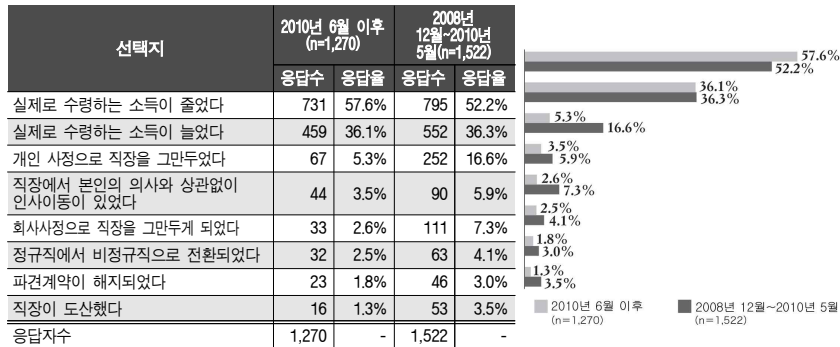
(*) 2009년 2월에 공표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8) 대출 이용자의 주변 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

(가) 2010년 6월 이후의 생활환경 변화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와 2010년 6월 이후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0년 6월의 완전 시행일 이후에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42.3%) 중 57.6%가 “실제로 수령하는 소득이 줄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로 수령하는 소득이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1%로 나타났다.

도표 4-41 대출 이용자의 2010년 6월 전후의 생활 환경 변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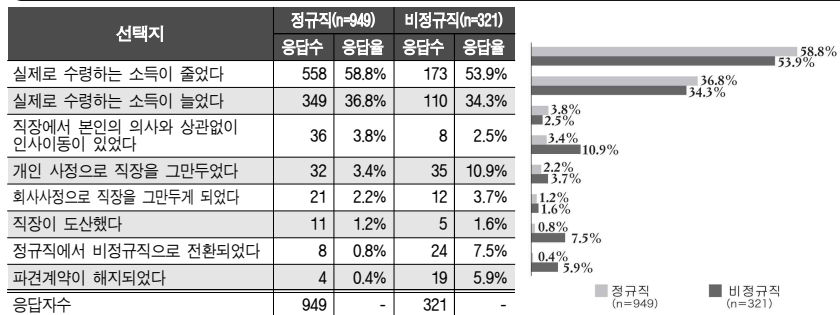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고용형태별^(*) 생활환경의 변화

완전 시행일 이후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42.3%)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생활환경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수령하는 소득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74.7%)의 경우는 58.8%, 비정규직(25.3%)의 경우는 53.9%로 나타났다.

도표 4-42 대출 이용자의 2010년 6월 이후의 고용형태별 생활 환경 변화 현황 (복수응답)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 앙케트 대상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파견사원, 계약사원, 위탁사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냄

(9)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의견의 경향과 구체책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대출 이용자의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의견 경향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41.2%) 중 ‘찬성’한다는 의견은 26.8%(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대비 4.6포인트 하락), 중립적인 의견은 19.7%(작년도 조사 대비 0.7포인트 증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은 53.5%(작년도 조사 대비 3.9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도표 4-43 대출 이용자의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의견 분류

	법개정에 '찬성' 한다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는 의견	합계
금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n=1,236)	339 26.8%	250 19.7%	678 53.5%	1,267 100.0%
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2010년 1월 공표)(n=1,150)	392 31.4%	237 19.0%	621 49.6%	1,250 100.0%

(주 1) 한 가지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의견으로 처리하여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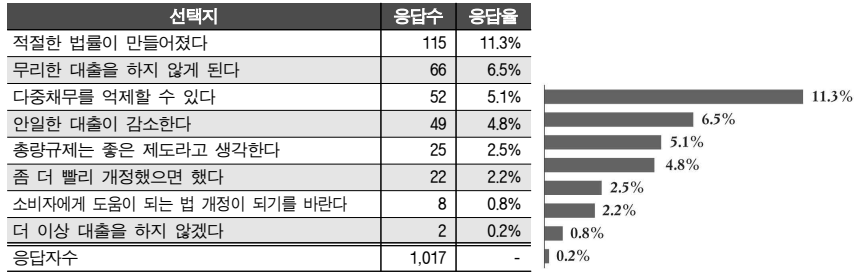


의견 분류	정의
법개정에 '찬성' 한다는 의견	“찬성한다”, “좀 더 빨리 시행했으면 했다” 등 개정 대금업법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딱히 어느 쪽이라고 볼 수 없다” 등 개정대금업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는 의견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곤란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다” 등 개정대금업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나)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대출 이용자의 상세 의견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적절한 법률이 만들어졌다”(1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게 된다”(6.5%)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도표 4-44 법개정에 ‘찬성’ 한다는 대출 이용자의 상세 의견

(n=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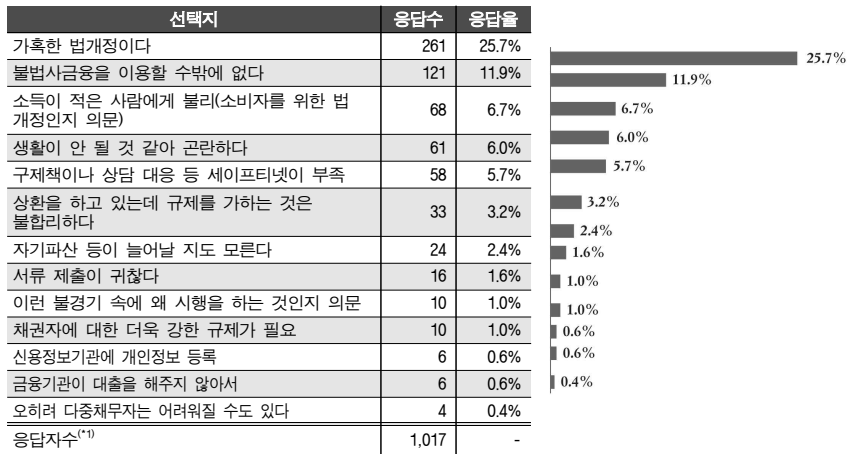


(*1)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 ‘문제가 있다’는 의견 수

(다)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의 상세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의견의 경우 “가혹한 법개정이다”(25.7%)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11.9%),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불리(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인지 의문)’(6.7%)와 같은 의견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45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의 상세 의견

(n=1,017)



(*1)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 ‘문제가 있다’는 의견 수

(라)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의견 경험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에 대한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의견의 경우 응답한 전업주부(전업남편)(전체의 48.5%) 중 ‘찬성’한다는 의견은 29.1%, 중립적인 의견은 16.4%,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은 54.5%로 나타났다.

도표 4-46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의견 분류

(n=234)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법개정에 ‘찬성’ 한다는 의견	71	29.1%
중립적인(기타) 의견	40	16.4%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는 의견	133	54.5%
합계	244	100.0%

(주1) 한 가지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의견으로 처리하여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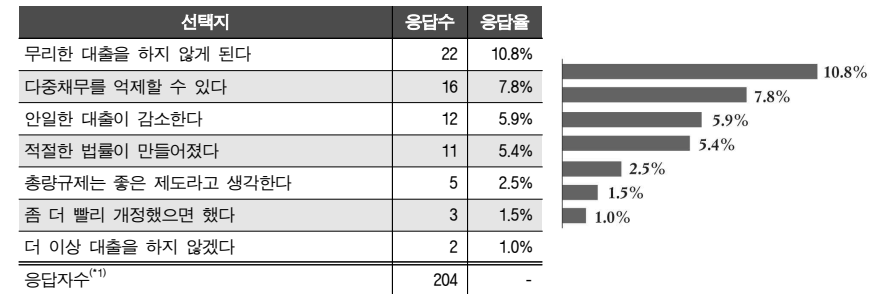
의견 분류	정의
법개정에 ‘찬성’ 한다는 의견	“찬성한다”, “좀 더 빨리 시행했으면 했다” 등 개정 대금업법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딱히 어느 쪽이라고 볼 수 없다” 등 개정대금업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는 의견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곤란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다” 등 개정대금업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마)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상세 의견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상세 의견으로는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게 된다”(10.8%)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중채무를 억제할 수 있다”(7.8%), “안일한 대출이 감소한다”(5.9%)와 같은 응답이 이어졌다.

도표 4-47 법 개정에 ‘찬성’ 한다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상세 의견

(n=204)



(*1)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 “문제가 있다”는 의견 수

(바)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상세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의견으로는“가혹한 법 개정이다”(13.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9.8%),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곤란하다”(9.3%)와 같은 의견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48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상세 의견

(n=204)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가혹한 법개정이다	28	13.7%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20	9.8%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곤란하다	19	9.3%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불리(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인지 의문)	18	8.8%
전업주부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14	6.9%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1	5.4%
자기파산 등이 늘어날 지도 모른다	9	4.4%
서류 제출이 귀찮다	6	2.9%
구제책이나 상담 대응 등 세이프티넷이 부족	5	2.5%
배우자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다	3	1.5%
응답자수 ^(*)	204	-

(*)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 ‘문제가 있다’는 의견 수

② 사업자 조사

(1) 완전 시행일 이후의 대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신청 현황

개인사업자 · 기업경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

도표 4-49 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 현황

(n=1,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대출을 신청했다	442	41.9%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614	58.1%
합계 ^(*)	1,056	100.0%

(*)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자(n=50) 제외

(나) 대출 신청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41.9%)를 대상으로 대출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나타났다.

도표 4-50 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 결과

(n=442)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14	48.4%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28	51.6%
합계	442	100.0%

■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취한 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취한 행동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20.6%)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취한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소비를 줄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란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나 친척, 친구 · 지인에게 빌렸다(빌린다)”란 응답이 37.7%,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란 응답이 26.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취한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소비를 줄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란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나 친척, 친구 · 지인에게 빌렸다(빌린다)”란 응답이 24.1%,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란 응답이 19.1%로 그 뒤를 이었다.

도표 4-51 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취한 행동 (복수응답)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n=228)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취한 행동(n=1,106)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개인적인 소비를 줄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	120	52.6%	501	45.3%
가족이나 친척, 친구 · 지인에게 빌렸다(빌린다)	86	37.7%	266	24.1%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	60	26.3%	211	19.1%
거레처에 결제할 대금을 연기했다(연기한다)	58	25.4%	181	16.4%
공공요금 납부를 연기했다(연기한다)	55	24.1%	138	12.5%
종업원의 급여 삭감 및 해고 등으로 인건비를 줄였다(줄인다)	44	19.3%	199	18.0%
종업원 급여 지급을 연기했다(연기한다)	23	10.1%	94	8.5%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	20	8.8%	177	16.0%
상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이나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았다(받는다)	17	7.5%	122	11.0%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 빌렸다(빌린다)	14	6.1%	39	3.5%
사업을 포기하고 자기파산 등 청산절차를 밟았다(밟는다)	6	2.6%	115	10.4%
응답자수	228	-	1,106	-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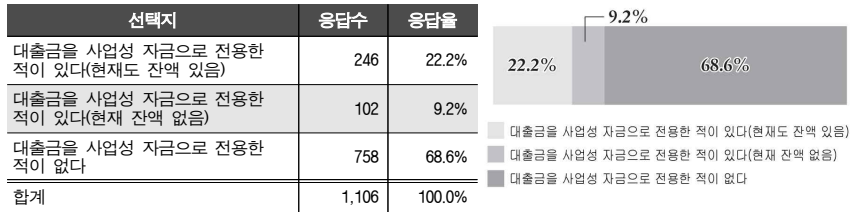
(3)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가)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경험 유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했는데, 전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22.2%)와 “전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9.2%)를 합하여 31.4%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도표 4-52 사업자가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경험 유무

(n=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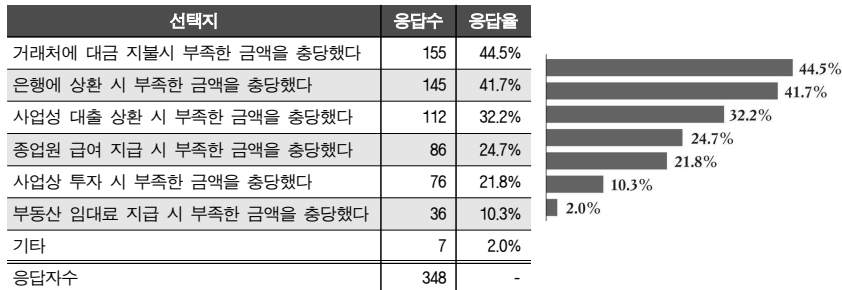


(나)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목적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전체의 31.5%)를 대상으로 전용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래처에 대금 지불시 부족한 금액을 충당했다”란 응답이 44.5%(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대비 2.8포인트 하락)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은행에 상환 시 부족한 금액을 충당했다”란 응답이 41.7%(작년 대비 5.4포인트 하락)로 이어졌다.

도표 4-53 사업자가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목적 (복수응답)

(n=348)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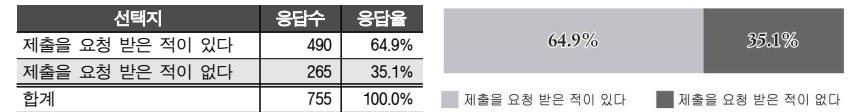
(4)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대출 시 필요한 사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환 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 제출 유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인 사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환 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요청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 “요청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나타났다.

도표 4-54 개인사업자의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

(n=755)



(*) 사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다음 4가지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확정신고서 ② 청색신고결산서 ③ 수지명세서 ④ 납세증명서
대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환 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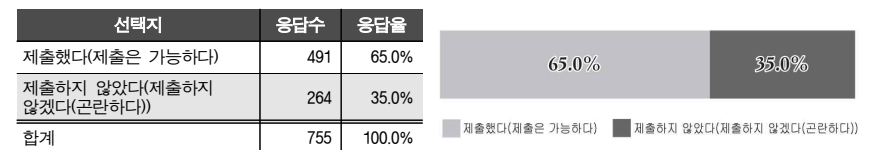
① 사업계획 ② 수지계획 ③ 자금계획
대출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사업 현황 ② 수지 현황 ③ 자금유통 현황

(나) 대출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유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인 사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환 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또는 제출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출했다(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0%, “제출하지 않았다(제출하지 않겠다(곤란하다))”란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도표 4-55 개인사업자의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유무

(n=755)



(5)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의 접촉 경험 유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의 접촉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3.6%)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4.5%),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7.1%)를 합하여 15.2%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20.6%)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6.6%)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8.3%),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11.4%)를 합하여 26.3%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7%로 나타났다.

도표 4-56 사업자의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의 접촉 경험 유무

(n=1,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	40	3.6%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50	4.5%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78	7.1%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938	84.8%
합계	1,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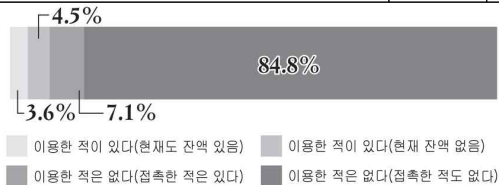


도표 4-57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업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 접촉한 경험 유무

(n=228)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	15	6.6%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19	8.3%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26	11.4%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168	73.7%
합계	2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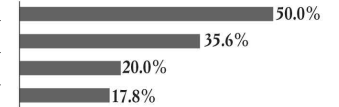
(나) 사업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한 이유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8.1%)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50.0%),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35.6%)와 같은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58 사업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한 이유 (복수응답)

(n=90)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45	50.0%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32	35.6%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인 점을 몰랐기 때문에	18	20.0%
이전부터 알고 있는 업체라서	16	17.8%
응답자수	90	-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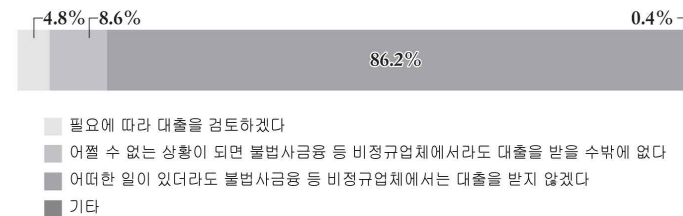
(다) 사업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할 의향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6.2%,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6%, “필요에 따라 대출을 검토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도표 4-59 사업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할 의향

(n=1,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필요에 따라 대출을 검토하겠다	53	4.8%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95	8.6%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	954	86.2%
기타	4	0.4%
합계	1,106	100.0%



(6)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접촉 경험 유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의 접촉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5.0%)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4.6%),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6.1%)를 합하여 15.7%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3%로 나타났다.

그리고 완전시행일 이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20.6%)를 대상으로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8.8%)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12.7%),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12.3%)를 합하여 33.8%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도표 4-60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 유무

(n=1,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	55	5.0%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51	4.6%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68	6.1%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932	84.3%
합계	1,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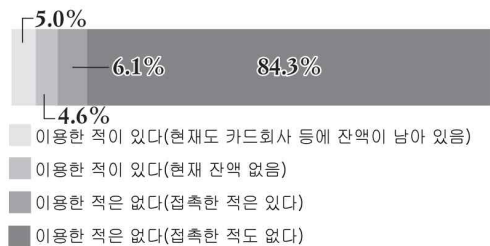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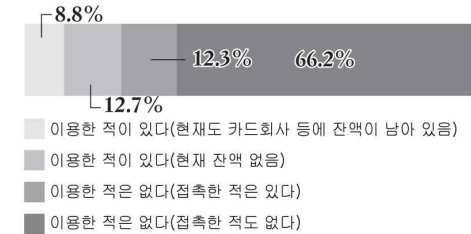


도표 4-61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 유무

(n=228)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	20	8.8%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	29	12.7%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	28	12.3%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	151	66.2%
합계	2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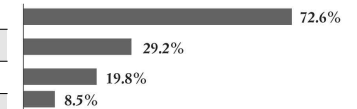
(나)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한 이유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9.6%)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2.6%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2%, ‘특별히 위법성은 없을 것으로 여겨져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9.8%로 나타났다.

도표 4-62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한 이유 (복수응답)

(n=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77	72.6%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31	29.2%
특별히 위법성은 없을 것으로 여겨져서	21	19.8%
이전부터 알고 있는 업체라서	9	8.5%
응답자수	106	-



(주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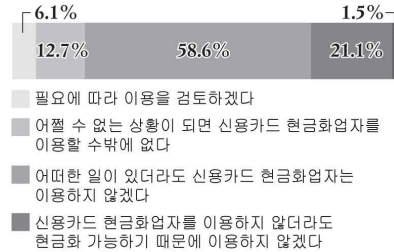
(다)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이용 의향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는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6%,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7%, “필요에 따라 이용을 검토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로 나타났다.

도표 4-63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할 의향

(n=1,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필요에 따라 이용을 검토하겠다	68	6.1%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141	12.7%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는 이용하지 않겠다	647	58.6%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금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	233	21.1%
기타	17	1.5%
합계	1,106	100.0%



(7)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

(가) 사업 환경의 변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2%, ‘어려워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6.4%, ‘변함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4%로 나타났다.

도표 4-64 사업자의 사업 환경 변화

(n=1,106)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좋아졌다	91	8.2%
어려워졌다	845	76.4%
변함없음	170	15.4%
합계	1,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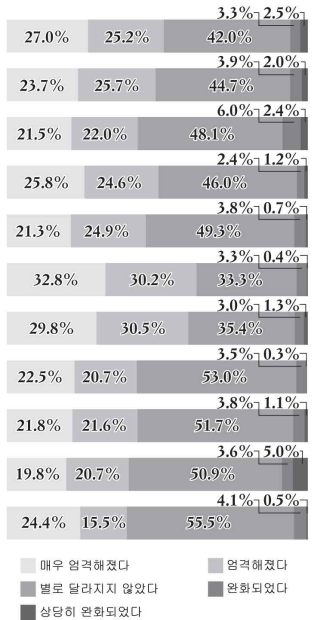


(나)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엄격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비자금융사의 경우 ‘매우 엄격해졌다’(32.8%)와 ‘엄격해졌다’(30.2%)를 합하여 63.0%,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의 경우는 ‘매우 엄격해졌다’(29.8%)와 ‘엄격해졌다’(30.5%)를 합하여 60.3%로 나타났다.

도표 4-65 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변화

	매우 엄격해졌다	엄격해졌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완화되었다	상당히 완화되었다	합계
은행(n=719)	194 27.0%	181 25.2%	302 42.0%	24 3.3%	18 2.5%	719 100.0%
신용금고·신용조합(n=641)	152 23.7%	165 25.7%	286 44.7%	25 3.9%	13 2.0%	641 100.0%
일본정채금융공고(n=549)	118 21.5%	121 22.0%	264 48.1%	33 6.0%	13 2.4%	549 100.0%
기타 금융기관(n=418)	108 25.8%	103 24.6%	192 46.0%	10 2.4%	5 1.2%	418 100.0%
상공론(n=422)	90 21.3%	105 24.9%	208 49.3%	16 3.8%	3 0.7%	422 100.0%
소비자금융사(n=451)	148 32.8%	136 30.2%	150 33.3%	15 3.3%	2 0.4%	451 100.0%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n=607)	181 29.8%	185 30.5%	215 35.4%	18 3.0%	8 1.3%	607 100.0%
지방자치단체(n=347)	78 22.5%	72 20.7%	184 53.0%	12 3.5%	1 0.3%	347 100.0%
가족 및 친척, 친구·지인(n=468)	102 21.8%	101 21.6%	242 51.7%	18 3.8%	5 1.1%	468 100.0%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n=222)	44 19.8%	46 20.7%	113 50.9%	8 3.6%	11 5.0%	222 100.0%
기타(n=193)	47 24.4%	30 15.5%	107 55.5%	8 4.1%	1 0.5%	193 100.0%



(8)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의견 경향과 구체적인 예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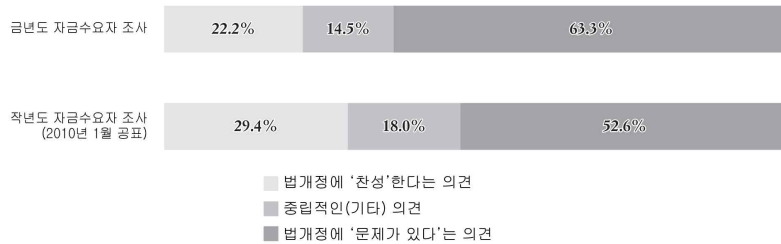
(가)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경향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36.2%) 중 '찬성'한다는 의견은 22.2%(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대비 7.2포인트 하락), 중립적 의견은 14.5%(작년도 대비 3.5포인트 하락),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의견은 63.3%(작년도 대비 1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도표 4-66 개정 대금업법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분류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합계
금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n=401)	92 22.2%	60 14.5%	263 63.3%	415 100.0%
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2010년 1월 공표)(n=952)	298 29.4%	183 18.0%	534 52.6%	1,015 100.0%

(주1) 한 가지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의견으로 처리하여 n이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 분류	정의
법개정에 '찬성' 한다는 의견	'찬성한다', '좀 더 빨리 시행했으면 했다' 등 개정 대금업법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딱히 어느 쪽이라고 볼 수 없다' 등 개정대금업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곤란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다' 등 개정대금업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나) 법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업자의 상세 의견

법개정에 '찬성'한다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절한 법률이 만들어졌다'(9.0%)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게 된다'(6.2%), '다중채무를 억제할 수 있다'(3.4%)와 같은 응답이 이어졌다.

도표 4-67 법개정에 '찬성' 한다는 사업자의 상세 의견

(n=341)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적절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32	9.0%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게 된다	22	6.2%
다중채무를 억제할 수 있다	12	3.4%
좀 더 빨리 개정했으면 했다	7	2.0%
안일한 대출이 감소한다	7	2.0%
안심할 수 있다	5	1.4%
총량규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4	1.1%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3	0.8%
응답자수 ^(*)	355	-

(주1) 한 가지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의견으로 처리했다.

(*)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 '문제가 있다'는 의견 수

(다)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업자의 상세 의견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의견으로는 '사업이나 생활이 힘들어진다'(14.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혹한 법 개정이다'(13.8%), '행정당국은 기업경영이나 사업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13.8%)와 같은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 4-68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응답한 사업자의 상세 의견

(n=341)

선택지	응답수	응답율
사업이나 생활이 힘들어진다	50	14.1%
가혹한 법개정이다	49	13.8%
행정 당국은 기업경영이나 사업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49	13.8%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33	9.3%
구제책이나 상담 대응 등 세이프티넷이 부족	16	4.5%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4	3.9%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귀찮다	13	3.7%
일률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	13	3.7%
자기파산 등이 늘어날 지도 모른다	8	2.3%
이런 불경기 속에 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의문	7	2.0%
서류 제출이 귀찮다	5	1.4%
성급한 대응이며, 단계적인 규제를 바란다	3	0.8%
채권자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	2	0.6%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정보 등록하는 것이 불안	1	0.3%
응답자수 ^(*)	355	-

(주1) 한 가지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의견으로 처리했다.

(*)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 '문제가 있다'는 의견 수

3. 본광 요약

1) ‘대금업법 완전시행 후의 영향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① 대출이용자의 완전시행 후의 대출 신청 현황

(1) 총량규제^{(*)1}에 해당하는 대출 이용자(이하 ‘총량규제 해당자’라 한다)

총량규제 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2}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규 신청의 경우는 41%가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했으며, 59%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한도 내 이용에 대해서는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로 나타났다.

(2) 전업주부(전업남편)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규 신청의 경우 34%가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했으며, 66%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한도 내 이용에 대해서는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나타났다.

②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곤란했던 점

(1) 총량규제 해당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비나 식비 등에 총당’(40%), ‘주민세·자동차세 등과 같은 세금 납부’(32%)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상위를 차지했다.

(2) 전업주부(전업남편)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비나 식비 등에 총당’(51%),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광열비 납부’(34%), ‘의료비’(27%)와 같은 내용이 상위를 차지했다.

(3) 개인사업자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나 대출을 포기했을 때 곤란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자금에 총당’(5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42%), ‘주민세·자동차세 등과 같은 세금 납부’(4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39%)와 같은 내용이 상위를 차지했다.

③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총량규제 해당자의 자금 수요

(1) 총량규제 해당자

향후 대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향후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총량규제 해당자의 경우 76%를 차지했다.

(2) 개인사업자

향후 대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향후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81%를 차지했다.

2)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① 대출 이용자의 완전시행 후 대출 신청 현황

(1) 대출 이용자

(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로 나타났다.

(나)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3}라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나타났다.

(다)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한도 내 이용을 포함하여,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에서 보낸 통지나 고객센터 등에 문의한 결과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로 나타났다.(복수응답)

(2) 개인사업자·기업경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신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로 나타났다.

(나)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나타났다.

②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때 취한 행동

(1) 대출 이용자

완전시행일 이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8%)를 대상으로 당시 취했던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비를 절약하고(현재의 생활수준을 하향 조정), 예정된 지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빌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8%, ‘생활비를 절약하고(현재의 생활수준을 하향 조정), 대출금을 상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나타났다.(복수응답)

(2) 사업자

완전시행일 이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21%)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취한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소비를 줄여 자금을 융통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빌렸다(빌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자금을 융통했다(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나타났다.(복수응답)

③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곤란했던 점

(1) 대출 이용자

완전시행일 이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8%)를 대상으로 당시 곤란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납세·납부 등의 지불이 지연되었다(지연될 것 같다)’(43%), ‘의류비·식비가 부족하다(식료품을 살 수가 없다)’(31%)와 같은 항목이 상위를 차지했다.(복수응답)

④ 대출 상환 여력

(1) 대출 이용자

(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여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소득의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71%)와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4%)를 합하여 75%로 나타났다. 반면 상환이 곤란할 경우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13%)와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12%)를 합하여 25%로 나타났다.

(나) 대출 이용자 중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응답자(전체의 46%)의 대출 상환 여력을 살펴보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소득의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60%)와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4%)란 응답을 합하여 64%로 나타났다. 반면 상환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16%)와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20%)를 합하여 36%로 나타났다.

(다)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소득의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이 가능하다’(72%)와 ‘향후 새로운 소득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하다’(4%)를 합하여 76%로 나타났다. 반면 상환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끔 상환이 곤란하다’(14%)와 ‘매달 상환이 곤란하다’(10%)를 합하여 24%로 나타났다.

⑤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현황

(1) 대출 이용자

(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4)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가 ‘제출하

도록 요구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전업주부(전업남편)^(※5)의 경우에는 23%가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나)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또는 제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가 ‘제출했다(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경우에는 ‘제출했다(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로 나타났다.

(2)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인 사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환 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요구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 ‘요구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⑥ 개인적인 대출금의 사업성 자금 전용 현황

(1) 사업자

(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 ‘전용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나)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전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31%)를 대상으로 전용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래처에 대금 결제 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로 가장 많았으며(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6) 대비 3포인트 하락), 그 다음으로 ‘은행 대출금 상환 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나타났다.(작년도 대비 5포인트 증가)(복수응답)

⑦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 이용 동향

(1) 대출 이용자

(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에 접촉한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0.3%)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2%),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4%)를 합하여 6%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나)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8%)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0.4%)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5%),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9%)를 합하여 14%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다)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0%)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0.4%),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4%)를 합하여 4%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2) 사업자

(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와 접촉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4%)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4%),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7%)를 합하여 15%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나)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21%)를 대상으로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7%)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8%),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11%)를 합하여 26%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다)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8%)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50%)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36%)와 같은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복수응답)

⑧ 신용카드 현금화업자⁽⁷⁾ 이용 동향

(1) 대출 이용자

(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 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2%)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2%),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4%)를 합하여 8%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2%로 나타났다.

(나)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18%)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6%),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4%),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5%)를 합하여 15%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다) 전업주부(전업남편)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잔액 있음)’(1.7%)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1%),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1.7%)를 합하여 4%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2) 사업자

(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도 카드 회사 등에 잔액이 남아 있음)’(5%)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없음)’(5%),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6%)를 합하여 16%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나) 완전시행일 이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21%)의 경우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액 있음)’(9%)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는 잔고 없음)’(13%),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다)’(12%)를 합하여 34%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다)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의 10%)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36%)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규 대금업체 어디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29%)라고 응답한 비율이 29%, ‘특별히 위법성은 없는 것 같아서’(20%)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로 나타났다.(복수응답)

⑨ 다중채무자에게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

(1) 대출 이용자

(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중채무자에게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⁸⁾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나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이 실시하는 상담창구(법테라스 포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대비 3포인트 증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비자청, 국민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16%(작년도 대비 2포인트 증가),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12%(작년도 대비 1 포인트 하락)로 나타났다.

⑩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일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

(1) 대출 이용자

(가) 완전시행일 이후에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42%)를 대상으로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가 ‘실제로 수령한 소득이 줄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로 수령한 소득이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나) 고용형태별⁽⁹⁾로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제로 수령하는 소득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75%)의 경우는 59%, 비정규직(25%)의 경우는 54%로 나타났다.(복수응답)

(2) 사업자

- (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려워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 ‘줄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로 나타났다.
- (나)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엄격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비자금융사가 ‘매우 엄격해졌다’(33%)와 ‘엄격해졌다’(30%)를 합하여 63%, 신용카드 회사·신용판매회사의 경우 ‘매우 엄격해졌다’(30%)와 ‘엄격해졌다’(30%)를 합하여 60%로 나타났다.

㉠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대한 의견

(1) 대출 이용자

- (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을 한 대출 이용자(전체의 41%) 중 찬성한다는 의견은 27%(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 중립적인 의견은 20%(작년도 대비 1포인트 증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53%(작년도 대비 3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 (나)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상세 의견을 살펴보면 ‘적정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로 가장 많았으며,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로 나타났다. 반면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의 경우 ‘가혹한 법개정이다’(26%),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12%)와 같은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 (다)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에 대한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의견의 경우에는 응답을 한 전업주부(전업남편)(전체의 49%) 중 찬성한다는 의견은 29%, 중립적인 의견은 16%,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55%로 나타났다.

(2) 사업자

- (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을 한 사업자(전체의 36%) 중 찬성한다는 의견은 22%(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 중립적인 의견은 15%(작년도 대비 3포인트 하락),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63%(작년도 대비 10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 (나)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상세 의견으로는 ‘적정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로 가장 많았으며,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로 나타났다. 반면 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워진다’(14%), ‘가혹한 법개정이다’(14%), ‘행정 당국은 기업경영이나 사업주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14%)와 같은 의견이 상위를 차지했다.

- (*3) 대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대출은 받을 수 있었지만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다’, ‘(원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지 않았다’, ‘대출을 거절당했다(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자
- (*4)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① 원천징수표 ② 소득증명서류 ③ 지불조서 ④ 납세통지서 ⑤ 청색신고결산서 ⑥ 확정신고서 ⑦ 수지내역서 ⑧ 연금증서 ⑨ 연금통지서 ⑩ 급여 지불명세서
- (*5) 배우자 대출의 경우 다음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① 배우자 동의서 ② 주민표 등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면
- (*6) 2010년 1월에 공표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 (*7)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다시 매입을 하는 업자나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한 후 대금의 몇 %를 캐쉬백하는 하는 업자 등을 말한다. 이 밖에 환급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사의 회원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용카드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범죄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음.
- (*8) ‘내용이나 이용방법으로 대해 잘 알고 있다’와 ‘제도의 내용이나 이용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를 더한 비율
- (*9) 앙케트 대상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파견사원, 계약사원, 촉탁사원,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를 말한다.

- (*1) 대금업자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일부 예외적인 계약을 제외하고 총 대출 잔액이 채무자의 연 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
- (*2) 2006년 12월 13일,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의 도입’, ‘대금업의 적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0일에 공포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6월 18일에 출자법의 상한금리 인하, 총량규제 도입, 재산적 기초 요건 인상(5,00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금업법 제4조가 시행(완전 시행)되었다.

JFSA백서

연대표 2006년 12월 ~ 2011년 4월

2006년 12월	•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시에 공포
2007년 1월	• 20일, 개정법 제1조 시행. 불법자금용 대책으로 벌칙이 강화
3월	• 개정법에 규정된 대금업협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 발족
4월	• 정부의 다중채무대책본부가 '다중채무 문제 개선 프로그램'을 결정
5월	• 기존 대금업협회(각 도도부현에 설치)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해산 의결
7월	• 금융청이 신대금업법의 정·성령안을 공표하고 public comment를 모집
8월	• 금융청이 '대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감독지침(안)'을 마련하고 public comment를 모집
	•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자율규제기본규칙(안) 등을 정리하여 public comment를 모집
9월	•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실험회 개요를 책정하고 전국 9개소에서 실험회 설명회 실시
10월	• 자민당이 신대금업의 정·성령안에 대해 금융청의 당초안을 일부 수정 후 승인
11월	• 신대금업법에 준한 개정 정령 및 내각부령 공포
12월	• 18일, 신대금업법 제2조 시행. 대금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및 행위 규제의 강화, 감독의 강화
	•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일본대금업협회(JFSA) 설립
	• 주식회사 일본정보센터, 주식회사 아이넷, 주식회사 테라넷 3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테라넷'이 발족
2008년 3월	• 아에루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7월	• 주식회사 오크스가 나하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9월	• 선라이즈 파이낸스 주식회사와 리먼브라더즈 코머셜 모기지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 가자카파이낸스 주식회사가 산와파이낸스 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화
10월	• 주식회사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TOB(주식공개 매수)를 통해 아코무 주식회사를 지분법 적용회사에서 연결 자회사화
12월	• 주식회사 레타스카드가 오사카지방법원에 파산 절차 개시 신청
2009년 1월	• 대법원이 과불금 반환청구 시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 관련 첫 판결을 내림
	• 주식회사 SFCG가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민사재생 절차 폐지, 파산 절차로 이행)

2월	• 주식회사 OMC카드, 주식회사 센트럴파이낸스, 주식회사 구오코 3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세디나' 발족
4월	• 주식회사 테라넷이 전국신용정보센터 연합회 가맹 33개 정보센터로부터 신용정보사업을 계승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로 변경
	• 개정 할부판매법에 명기된 크레딧 업계의 자율규제단체인 '사단법인 일본크레딧협회' 발족
6월	• 18일, 개정 대금업법 제3조 시행.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 및 지정신용정보기관 제도, 대금업무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제도 시행
7월	•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오릭스·크레딧 주식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해 자회사화
8월	•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가 주식회사 CCB를 합병하여 회사 약칭을 'JIC'에서 'JICC'로 변경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1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9월	• 아이후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의 하나인 사업회생ADR(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을 신청
	• 대금업 등록업체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5,000사 이하로 감소
11월	• 주식회사 로프로그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일본사업자금융협회가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정
	• 금융청은 개정 대금업법 부칙 제67조에 규정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설치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2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 일본대금업협회가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1회 사무국 회의에 소집되어 '대금업계의 현황'에 대해 설명
12월	• 사단법인 일본크레딧협회가 경제산업청 장관으로부터 '인가 할부판매협회' 인가를 받음
	• 방문판매 등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에 관한 제도 및 신용카드번호 등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할부판매법이 시행
	•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2회~제7회 사무국회의 개최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3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 일본대금업협회가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의 좌장(금융담당 차관) 앞으로 의견서(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대비하여)를 제출
2010년 1월	•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8회~제11회 사무국회의 개최
	• 금융청이 지정신용정보기관으로 지정 시 대금업체가 채무자로부터의 과불금 반환 청구에 응했을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등록되는 정보(서비스 정보 71 '계약 재검토 정보')의 등록 및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2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4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12회~제13회 사무국회의 개최
3월	●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 및 주식회사 CIC가 대금업법에 의거한 지정신용정보기관으로 지정
4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금융청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단체' 로 인정을 받음 ●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이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 을 정리하여 공표 ● 대금업 등록업체 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4,000사 이하로 감소
6월	● 18일, 상한금리의 인하와 총량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 대금업법이 완전 시행 ● 금융청은 개정 대금업법의 주지 철저와 완전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 및 지원하기 위해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설치
7월	● 금융청이 지정한 제3자 기관이 중재역할을 담당하여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 ADR'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일본대금업협회는 '금융 ADR' 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 오사카부가 개정 대금업법의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는 '대금특구' 구상을 내각부에 제안
8월	● 대금업 등록업체 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3,000사 이하로 감소
9월	● 금융청은 일본대금업협회 등 7개 단체를 '금융 ADR' 분쟁해결 기관으로 지정 ● 주식회사 다케후지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 금융청은 일본대금업협회를 대금업법에 의거한 등록 강습기관으로 등록
10월	● '금융 ADR' 제도 실시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11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2010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12월	● 개정 할부판매법 완전 시행. 신용카드회사에 '지불 가능 금액' 조사를 의무화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2011년 1월	● 중소기업신용기구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민사 재생 절차 적용을 신청
4월	● 일본대금업협회는 금융청에 "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요청서" 제출 ● 금융청은 3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의 예외 대출에 대한 절차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을 개정 공포 · 시행 ● 마루와상사 주식회사(니코니코 크레디트)가 도쿄지방법원에 민사 재생 절차 적용을 신청